관리번호	사회재난-16

「감염병 재난」 위기대응 행동매뉴얼

2022. 4.

Blue 관심
Yellow 주의
Orange 경계
Red 심각

여수광양항만공사

□ 이 매뉴얼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4조의5,「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388호)」 및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의「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및 「감염병 재난 위기대응실무매뉴얼」에 근거, 감염병 위기상황 발생 시 해양수산부가 적용할 세부 대응절차 및 제반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매뉴얼 적용 기본원칙

○ 이 매뉴얼과 관련된 모든 업무담당자는 이 매뉴얼에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재난상황에 대응해야 한다.

○ 다만, 감염병 재난상황이라는 것은 감염병 종류, 때와 장소, 재난유형 등 수많은 변수가 있어 이 매뉴얼에서 규정한 것을 참고하여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여 탄력적으로 재난에 대응하되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 가급적 재난이 발생하면 심각단계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후 상황에 따라 경계, 주의 등으로 적절히 경보수준을 탄력적으로 조절한다.

【매뉴얼 제·개정 현황】

제·개정일 (승인일자)	주요내용	사 유	담당부서	협의기관
2020.6.	「감염병 재난」 위기대응 행동매뉴얼 제정	감염병 실무매뉴얼 개정('20.4.17)에 따른 행동매뉴얼 제정	안전보안실	해양수산부, 여수청, 국립여수검역소
2020.7.	「감염병 재난」 위기대응 행동매뉴얼 제정	매뉴얼에 대한 해수부 수정 요청에 따른 목차 순서 변경	안전보안실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
2020.12.	격리장소 및 대체사무실 내용 추가	매뉴얼 정기점검 지적사항 반영	안전보안실	
2021.5.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현행화	매뉴얼 정기점검	안전보안실	
2021.7.	질병관리본부 명칭 변경, 위기평가회의 구성·운영 변경 등	표준매뉴얼 및 실무매뉴얼 개정사항 반영 등	안전보안실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
2021.8.	「감염병 재난」 위기대응 행동매뉴얼 개정	질병관리청 검토결과에 따른 행동매뉴얼 수정	안전보안실	질병관리청 위기대응총괄과
2022.4.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현행화	매뉴얼 정기점검	안전보안실	

- 목 차 -

Ⅰ. 일반 사항

1. 목적 ····· 2
2. 적용 범위 ····· 2
3. 관련 법규 ····· 3
4. 용어 정의 ····· 4

Ⅱ. 위기 형태와 관리 체계

1. 위기 형태 ····· 7
2. 전개 양상 ····· 7
3. 위기관리 체계 ····· 8
   가. 종합체계도 ····· 8
   나. 위기관리 기구의 임무와 역할 ····· 9
   다. 중앙사고수습본부 ····· 11
   라. 중앙방역대책본부 ····· 12
   마. YGPA 위기관리 체계 ····· 13
   바. 해양수산부(본부) 위기관리 기구 및 임무와 역할 ····· 14
   사. 소속기관 위기관리 기구 및 산하기관 임무와 역할 ····· 17
   아. 협업기능별 활동내용 ····· 19
   자. 재난현장 대응·수습 표준체계 ····· 21
4. 위기대응 지침 및 판단·고려 요소 ····· 23
   가. 대응개념 ····· 23
   나. 대응지침 ····· 23
   다. 판단·고려 요소 ····· 24
5. 위기경보 수준 ····· 25
6. 위기징후 감시 ····· 26
7. 위기평가 ····· 27
8. 위기경보와 경보발령 ····· 29
9. 비상근무체계 ····· 32

Ⅲ.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1. 관심 ····· 34
2. 주의 ····· 36
3. 경계 ····· 38
4. 심각 ····· 40

Ⅳ. 재난상황별 조치내용 및 절차

1. 발생상황 Ⅰ ····· 43
2. 발생상황 Ⅱ ····· 51

Ⅴ. 기관대응수칙 ····· 61

Ⅵ. 부록 ····· 74

I. 일반 사항

Ⅰ. 일반 사항

1. 목 적

이 매뉴얼은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공중보건위기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에 대해 해양수산부 및 소속·산하기관의 대응 절차와 조치사항을 규정한 것임

2. 적용 범위

가. (기관범위) 우리공사 관한 항만시설, 선박종사자 및 임직원 등에 대한 감염병 분야 위기발생 시 대응수습 등의 역할 수행

나. (상황범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다음의 상황에 적용

(1) 해외 신종감염병이 공항·항만 등을 통해 국내 유입, 확산되는 경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성 출혈열, 신종감염병증후군 등

- 자체 위기평가회의에서 국가 위기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감염병

(2) 국내에서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이 발생 및 확산되어 자체 위기평가회의에서 국가 위기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감염병

(3) 기타 위기 유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자체 위기평가회의에서 국가 위기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국내 상시발생 감염병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대규모로 유행하여 전사회적 혼란 우려가 있다고 자체 위기평가회의에서 판단한 경우 등

3. 관련 법규

가.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 및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388호)

나. 관련법령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 보건의료기본법

(4) 검역법

(5) 의료법

(6) 결핵예방법

(7)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다. 관련 규정 및 지침

(1)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2) 감염병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대응지침

(4)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대응지침

(5)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대응지침

(6)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대응지침

(7) 인플루엔자 대유행(PI) 대비·대응 계획

(8) 바이러스성출혈열* 대응지침

*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9) 군중모임행사 시 감염병 관리 가이드라인

(10) 자체위기평가회의에서 국가 위기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해당 감염병에 대한 지침

(11)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 대응 매뉴얼(교육부)

(1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13)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선지급 비율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행정안전부)

(14)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보건복지부)

(15) 기타 각종 감염병 대응 지침 및 매뉴얼(※부록 지침 목록 참조)

4. 용어 정의

용 어	정 의
국가위기	국가 주권, 영토와 국민의 생명·재산 등 국가의 핵심요소와 가치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가해지고 있는 상태
위기관리	국가위기를 효과적으로 예방·대비하고 대응·복구하기 위하여 국가가 자원을 기획·조직·집행·조정·통제하는 제반 활동과정
비상상황	대규모 피해 발생 우려로 일상적 대응보다 훨씬 강화된 조치나 특별한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상황 비상상황은 진행양상과 대처내용에 따라 결과수습형, 완만진행형, 순간증폭형으로 구분
결과수습형	상황 발생 자체가 이미 대규모 피해로 나타난 유형
완만진행형	상황이 서서히 진행되면서 심각성도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유형
순간증폭형	발생 초기에는 저강도 비상상황으로 보여지나, 진행과정에서 심각한 상황으로 급변하면서 대응력의 한계가 노정되고 실패 시 중대재난으로 귀결되는 유형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유관기관	해당 재난에 대한 정부의 재난관리 활동에 있어 주관기관의 활동을 지원하고 협조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실무기관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기능·시설을 직접 관리하거나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단체
위기경보 수준	① **관심(Blue):** 위기징후와 관련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 활동 수준이 낮아서 국가위기로 발전될 가능성이 낮은 상태 ② **주의(Yellow)**: 위기징후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고 국가위기로 발전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경향성이 나타나는 상태 ③ **경계(Orange):** 위기징후 활동이 활발하고 국가위기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 ④ **심각(Red)**: 위기징후 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전개속도, 경향성 등이 심각한 수준으로서 국가위기 발생이 확실한 상태
재난관리 단계	① **예방**: 위기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위기 발생 자체를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 ② **대비**: 위기 상황 하에서 수행해야 할 제반 사항을 사전에 계획·준비·교육·훈련함으로써 위기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고 위기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태세를 강화시켜 나가는 일련의 활동 ③ **대응**: 위기 발생 시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추가적인 위기 발생 또는 위기의 확대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일련의 활동 ④ **복구**: 위기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위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고, 평가 등에 의한 제도 개선과 운영체계 보완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일련의 활동
감염	감염병의 병원체가 사람의 몸에 침입하여 질병을 유발하는 모든 경우를 통칭함

용 어	정 의
신종·재출현 감염병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감염병 및 과거에 사라졌다가 다시 발생한 감염병
해외 유입 감염병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해외에서 국내 유입이 가능하거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에서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각종 감염병
인수공통 감염병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
감염병 환자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
감염병 의사환자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
병원체 보유자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의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감염병 의심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나. 「검역법」제2조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다.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환자격리	타인의 감염을 막기 위해 감염병환자 등을 일정기간 감염병관리기관에 입원시켜 외부인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조치
역학조사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
검역	해외유입 감염병에 대한 예방 및 조기 발견의 수단으로 공항,항만, 육로 등에서 사람, 항공기, 선박, 자동차, 화물 등을 검사·격리·방역하는 등의 위생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활동
방역물자	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보호장구, 소독약품, 진단시약, 검사장비 등 모든 물품을 통칭함
제한적 전파	전파 양상이 특정 공간(의료기관, 학교, 직장, 집단 시설 등) 위주로 역학적 연관성을 유지하는 경우
지역사회 전파	전파 양상이 특정 공간을 넘어 역학적 연관성이 불분명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
전국적 확산	전파 양상이 전국적이며 역학적 연관성을 추적하는 것이 방역 대책에 있어 우선순위가 아닌 경우

II. 위기 형태와 관리 체계

Ⅱ. 위기 형태와 관리 체계

1. 위기 형태

가.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

나.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 등의 발생 및 확산

다. 기타 위기 유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자체 위기평가회의에서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2. 전개 양상

위기징후

◈ 해외에서의 신종감염병 발생
◈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 발생
◈ 그외 위기평가회의에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감염병의 발생

↓

위기상황전개

◈ 해외 신종감염병 국내 유입 및 확산
◈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 확산
◈ 그외 위기평가회의에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감염병의 확산

↓

국가위기로 발전

◈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 감염병 환자 및 사망자 증가
◈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손실 초래
◈ 국가 이미지 실추에 따른 국가경쟁력 저하

→

해소

◈ 환자 및 사망자 감소
◈ 추가 전파 차단
◈ 유행 종식

3. 위기관리 체계

가. 종합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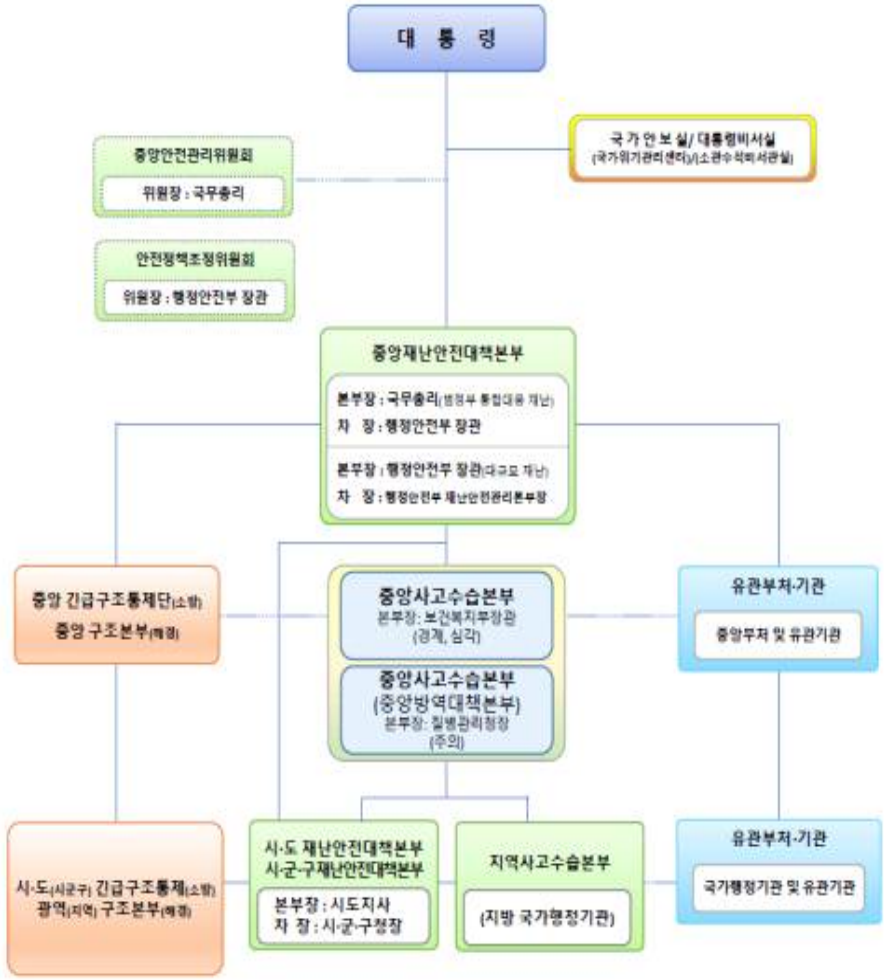

※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공동으로 차장이 된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5항)

나. 위기관리 기구의 임무와 역할

구 분	역 할
국 가 안 보 실 (국가위기관리센터)	○ 재난분야 위기 초기 상황 파악, 보고 및 전파 ○ 재난상황 총괄 조정 및 초기·후속 대응반 운영 ○ 재난안전관리 정책 총괄
대 통 령 비 서 실 (소관비서관실)	○ 재난 분야별 정책대응 및 홍보방향 제시 ○ 재난 분야별 후속대응 및 복구
중 앙 안 전 관 리 위 원 회 (국 무 총 리)	○ 재난관리에 있어 국가차원의 중요정책 조정·심의 ○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심의 ○ 중앙행정기관 간 재난·안전관리업무 협의·조정
중 앙 재 난 안 전 대 책 본 부 (국무총리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	○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 재난분야 재난징후 목록 및 상황 정보 종합·관리 ○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건의 ○ 재난현장 대응활동 종합 및 조정 ○ 주관기관 요청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및 중앙수습지원단 파견 조치 등 ○ 재난예방 및 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협의 * 감염병 안전취약계층(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노인·어린이, 외국인 등)에 대한 계획 포함 ○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그 밖에 필요한 지원 요청
지 역 재 난 안 전 대 책 본 부 (지방자치단체장)	○ 지역재난 상황 총괄 및 사고수습체계 구축 ○ 재난현장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시·군·구 단체장) ○ 지역 내 재난관리책임기관과의 장에게 행·재정상의 조치 및 업무협조 요청 ○ 생활안정지원, 응급복구, 질서유지, 의료·교통, 구급 및 언론대응 등 * 감염병 안전취약계층(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노인·어린이, 외국인 등) 지원대책 포함 ○ 지역사고수습본부와의 원활한 협조체제 유지 등

구 분	역 할
중앙사고수습본부 (보건복지부 장관) 경계, 심각	○ 감염병 위기 상황 총괄 ○ 위기경보 발령 및 전파 ○ 사고수습 종합상황 총괄·조정 및 언론 대응 ○ 재난 대응·복구를 위한 법률 및 제도 개선 ○ 유관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및 상황 전파 ○ 피해보상 및 지원대책 마련 ○ 관련 예산 확보 및 관리 ○ 감염병 대응 계획 수립 및 범정부 대응체계 정비 * 감염병 안전취약계층(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노인·어린이, 외국인 등)에 대한 계획 포함 ○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 협력 ○ 수습지원단 파견 요청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질병관리청장) 주의	○ 감염병 방역조치 총괄 ○ 위기경보 발령 및 전파 ○ 종합상황실 운영 ○ 유관기관 협조 및 정보 공유체계 구축 ○ 감염병 피해상황 종합관리 및 상황 보고 ○ 자체위기평가회의 및 전문위원회 등 운영 ○ 대응지침 개발·관리 총괄 ○ 감염병 발생 현장 즉각대응팀 운영 ○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 입국자 관리 및 진단검사체계 총괄 ○ 지역방역대책반 운영 총괄, 조정 및 지시 ○ 역학조사 수행 및 환자 및 접촉자 관리 총괄 ○ 방역물자 지원 및 관리 및 지원 ○ 감염병 위기 정보 수집·전파·공개 ○ 대국민 위기 소통 및 언론 대응 ○ 중앙-지역 정보공유체계 유지
지역방역대책반 (시·도, 시·군·구)	○ 지역별 방역 대응책 마련·시행 ○ 환자 발생 및 사망 감시 ○ 역학조사, 진단·검사, 환자 및 접촉자 이송 및 관리 ○ 진료병원, 격리병상 및 방역물자 관리 ○ 안전취약계층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노인· 어린이, 외국인 등)의 격리 시 지원책 마련 ○ 감염병 정보 의료기관 공유 및 주민 홍보
중앙수습지원단	○ 사태수습에 필요한 기술자문, 권고 또는 조언 ○ 중앙대책본부장에 대하여 재난수습을 위한 재난현장 상황, 재난발생의 원인, 행정적·재정적으로 조치할 사항 및 진행 상황 등에 관한 보고

다. 중앙사고수습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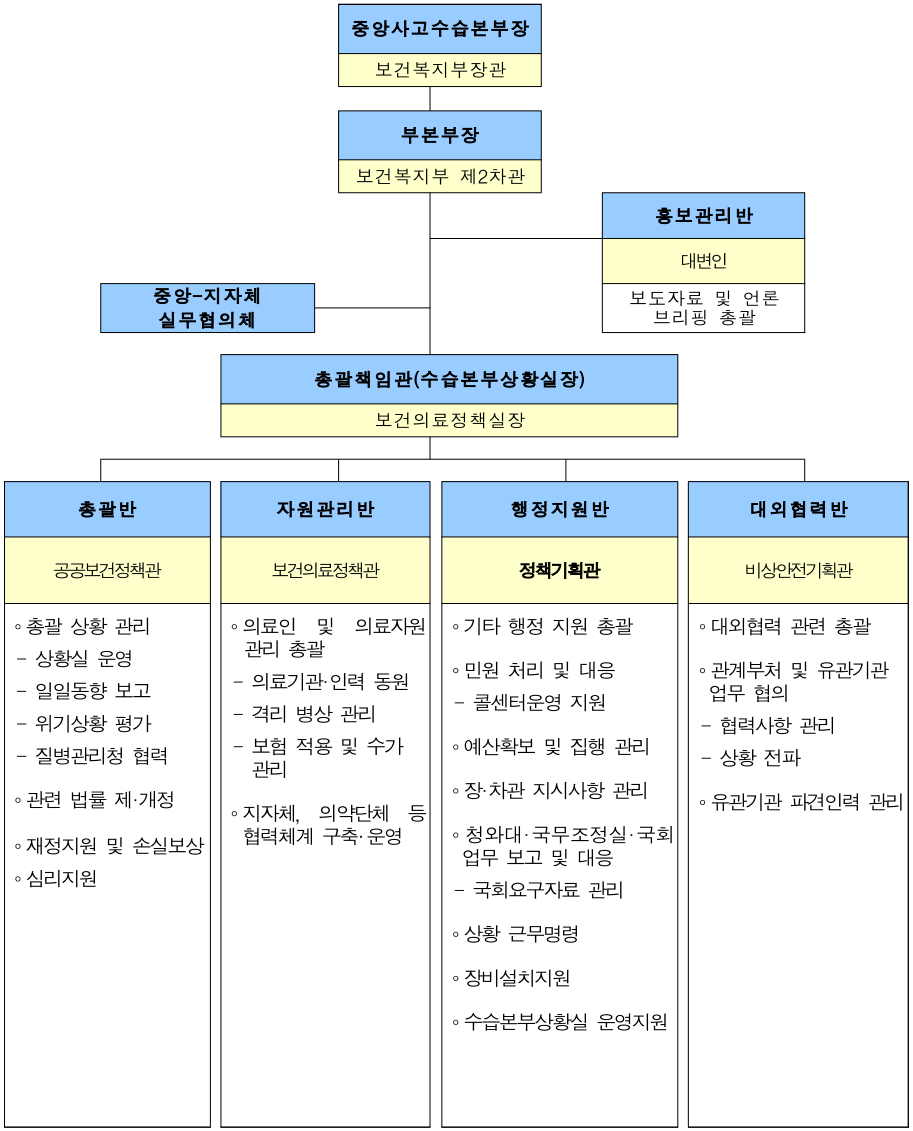

* 단, 상황에 따라 확대·축소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명칭은 추후확정

* 필요시,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등 구성·운영 가능

라. 중앙방역대책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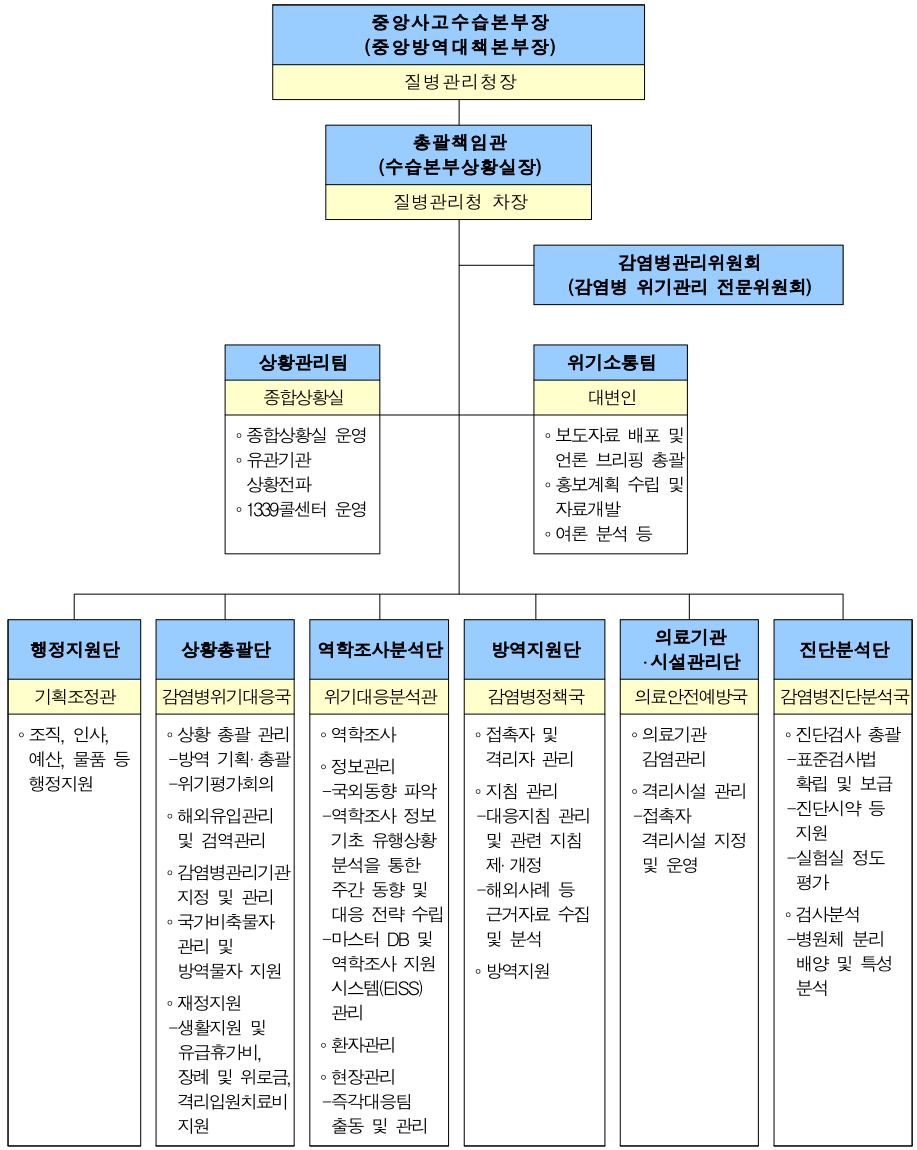

* 단, 상황에 따라 확대·축소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명칭은 추후확정)

* 필요시,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등 구성·운영 가능

마. YGPA 위기관리체계

1)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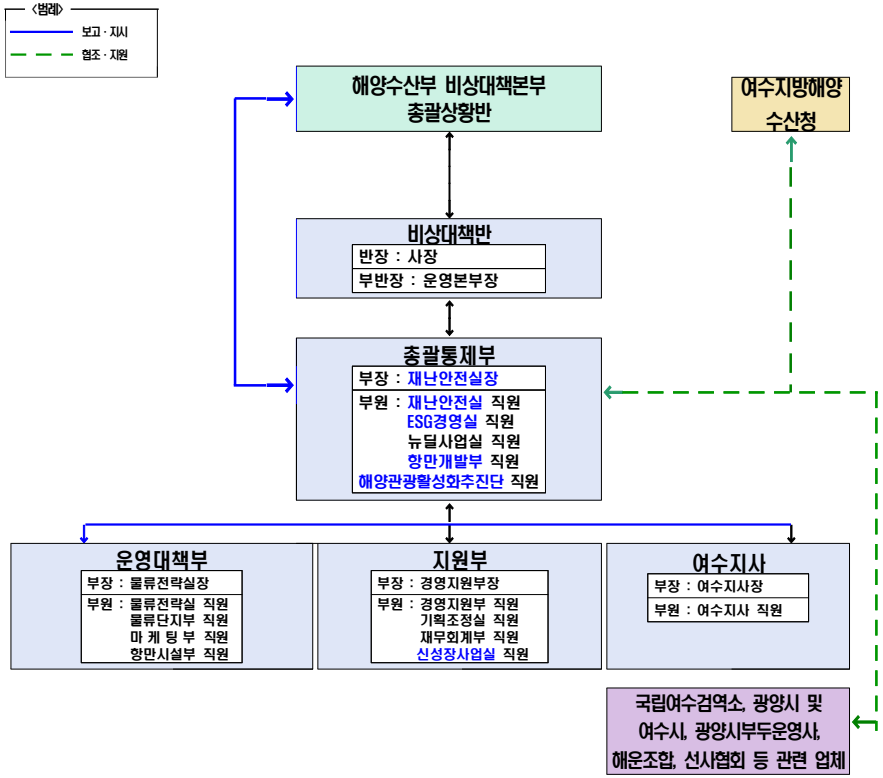

2) 구성 및 임무

가) **구성** : 경계단계(부별 1인), 심각단계(부별 2인+α)

* 여수지사 1명으로 운영

나) **운영기간** : 경계(Orange)단계 ~ 상황 종료시

다) **장 소 : 월드마린센터 1층 재난안전센터**

라) **근무 요령**

- 근무시간 : 09:00 ~ 20:00(본부 상황에 따라 변경·조정 가능)
- 상황보고(통보) : 1일 1회 보고(필요 시 조정)
- 보고기관 : 해양수산부 본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등
- 전파기관 : 광양시, 전라남도, 광양세관 등

바. 해양수산부(본부) 위기관리 기구 및 임무와 역할

가) 비상대책본부 구성

(1)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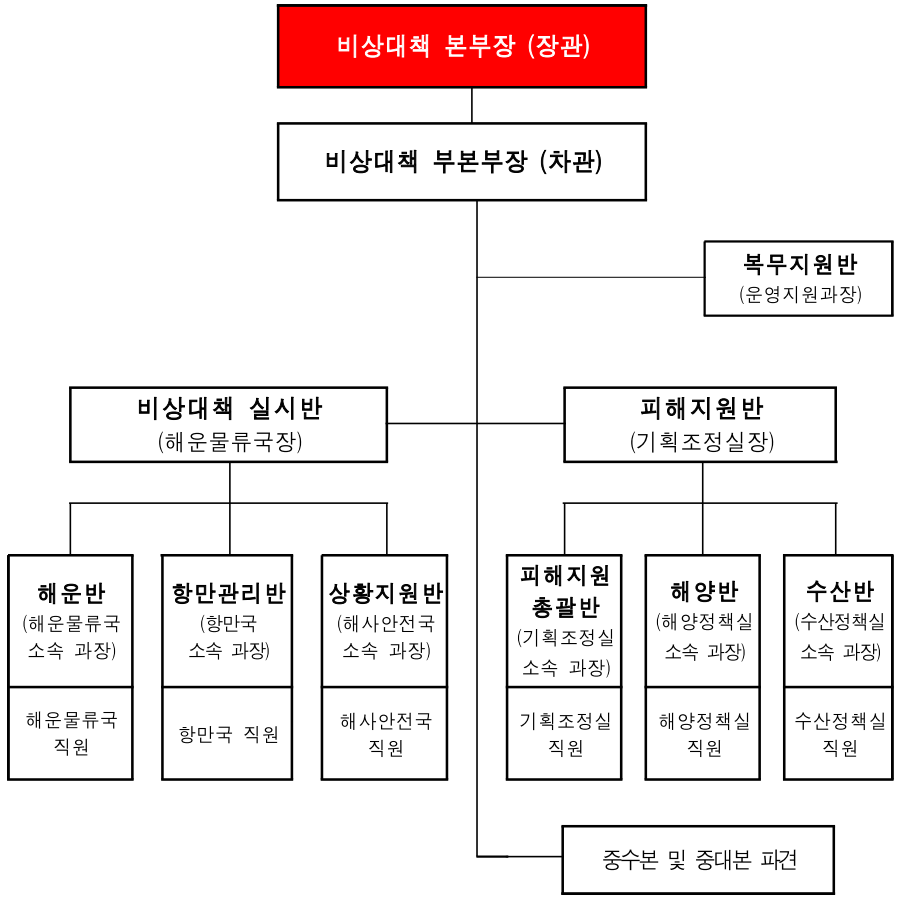

※ 크루즈선 입출항 조정 및 방역지원, 여객·선원에 대한 검역지원(해양정책관)

※ 상황에 따라 언론지원반을 별도 편성하여 공보업무 총괄(대변인)

* 상황에 따라 확대·축소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편성된 조직으로 실시반 임무수행 가능

** 필요시, 본부 현장지원관 파견을 통한 지방청·항만공사 등 지원

(2) 임무와 역할

실시반		주요 내용
비상대책 실시반	해운반	○ 비상대책 실시반 총괄, 중수본(중대본) 회의대응·협조 등 ○ 국내유입(국외유출) 차단을 위한 선박에 대한 조치 ○ 감염병 발생국과 관련한 선박 입항현황 및 여객·선원 출입국 현황 파악 등 - 관계기관 협조체계 강화 ○ 여객선 등 운항일정 조정 지원 ○ 여객터미널 출입통제 및 방역지원, 근로자·이용자 등에 대한 검역지원 등
	항만 관리반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통제·검역에 따른 협조·지원 등 ○ 항만 출입통제 및 방역지원, 항만근로자 등 항만출입자에 대한 검역지원 등 ○ 소속기관 등의 방역용품(마스크 등) 수요파악 및 지원 등 ○ 항만운영 업무지속계획에 따른 대응조치
	상황 지원반	○ 위기경보 접수 및 전파 ○ 대·내외 상황전파, 비상근무자 현황 관리 등 ○ 종합상황실 비상운영계획 수립 등
피해지원반	피해지원 총괄반	○ 피해지원반 총괄, 경제관련 장·차관급 협의체 대응 총괄 등 ○ 해양수산분야 재정·제도적 지원대책 총괄 ○ 보도자료 수집·배포 등 공보업무 총괄 ○ 언론 동향 보고 및 대응 등
	해양반	○ 분야별 시장 모니터링 및 피해지원 업무 등
	수산반	○ 분야별 시장 모니터링 및 피해지원 업무 등 ○ 수산물을 통한 감염경로 등 모니터링, 감염지역 입어·조업선 모니터링, 방역지원 등
복무지원반		○ 비상대책본부 운영(장소, 장비 등) 지원 ○ 우리부 감염병 확진자 발생 대비 근무체계 유지방안(소속 관공선 포함) 마련 등 - 우리부 감염병 확진자 또는 인근 부처 감염병 확진자 다수 발생시 청사인근 선별진료소 조기설치 요청 ○ 청사(소속기관 포함), 박물관·전시관 등 방역조치 지원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요청(생활치료센터 운용, 드라이브 스루 진단 등)에 따른 협조·지원

2) 위기경보 '주의·경계'단계 시 대응 체계

가) 비상대책반 구성

(1)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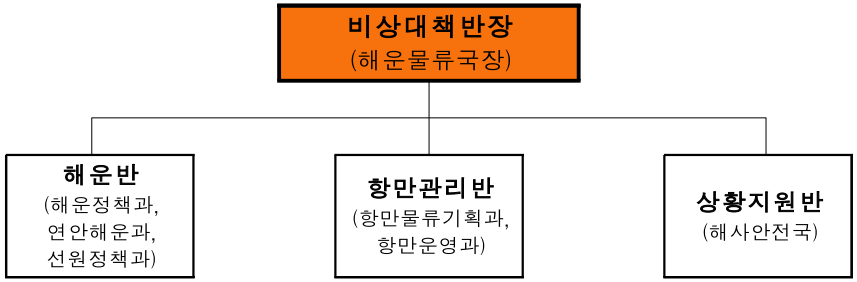

※ 크루즈선 입출항 조정 및 방역지원, 여객·선원에 대한 검역지원(해양정책관)
※ 상황에 따라 언론지원반을 별도 편성하여 공보업무 총괄(대변인)

* 상황에 따라 확대·축소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편성된 조직으로 임무수행 가능 (필요시, 경계단계에서는 비상대책본부로 격상하여 운영 가능)

** 필요시, 본부 현장지원관 파견을 통한 지방청·항만공사 등 지원

(2) 임무와 역할

실시반	주요 내용
해운반	○ 비상대책반 총괄, 중수본 회의대응·협조 등 ○ 국내유입(국외유출) 차단을 위한 선박에 대한 조치 ○ 감염병 발생국과 관련한 선박 입항현황 및 여객·선원 출입국 현황 파악 등 - 관계기관 협조체계 강화 ○ 여객선 등 운항일정 조정 지원 ○ 여객터미널 출입통제 및 방역지원, 근로자·이용자 등에 대한 검역지원 등
항만관리반	○ 항만운영 업무지속계획 수립·시행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통제·검역에 따른 협조·지원 등 ○ 항만 출입통제 및 방역지원, 항만근로자 등 항만출입자에 대한 검역지원 등 ○ 소속기관 등의 방역용품(마스크 등) 수요파악 및 지원 등
상황지원반	○ 위기경보 접수 및 전파 ○ 대·내외 상황전파, 비상근무자 현황 관리 등

사. 소속기관 위기관리 기구 및 산하기관 임무와 역할

1) 기본 구성·운영 방향 : 위기경보 단계('주의·경계', '심각')에 따른 본부 비상대응기구를 바탕으로 해당기관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구성·운영 가능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어업관리단 등은 반장(소속기관장) 이하 비상대책반 구성 등에 대해 본부 소관부서와 협의

2) 지방해양수산청 비상대책반 구성

가)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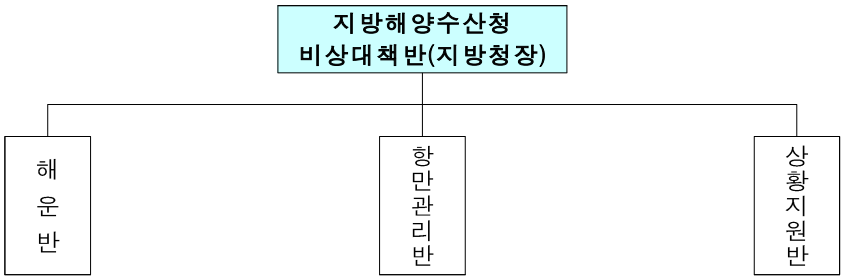

* 필요시 항만공사 및 산하단체 직원 파견

나) 임무와 역할

구 분	주요 내용
지방 해양수산청	○ 비상대책본부(반) 지원 및 소속기관 비상대책반 협조 ○ 국내유입(국외유출) 차단을 위한 선박에 대한 조치 ○ 감염병 발생국과 관련한 선박 입항현황 및 여객·선원 출입국 현황 파악 등 - 관계기관(출입국사무소, 관세청, 검역소 등) 협조체계 강화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통제·검역에 따른 협조·지원 등 ○ 여객선 등 운항일정 조정 지원 ○ 여객터미널 출입통제 및 방역지원, 근로자·이용자 등에 대한 검역지원 등 ○ 항만 출입통제 및 방역지원, 항만근로자 등 항만출입자에 대한 검역지원 등 ○ 청사, 소속관공선, 소관시설 등 방역지원 ○ 위기경보 등 관련사항 접수 및 대·내외 상황전파, 비상근무자 현황 관리 등

3) 지방해양수산청 外 소속기관 비상대책반 임무와 역할

구 분	주요 내용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 비상대책본부(반) 지원 및 소속기관 비상대책반 협조 ○ 수산물을 통한 감염경로 등 모니터링, 방역지원 등 ○ 관계기관(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에 따른 협조·지원 등 ○ 위기경보 등 관련사항 접수 및 대·내외 상황전파, 비상근무자 현황 관리 등 ○ 청사 방역지원
어업관리단	○ 비상대책본부(반) 지원 및 소속기관 비상대책반 협조 ○ 수산물을 통한 감염경로 등 모니터링, 방역지원 등 ○ 감염지역 입어·조업선 동향 모니터링 및 전파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통제·검역에 따른 협조·지원 등 ○ 위기경보 등 관련사항 접수 및 대·내외 상황전파, 비상근무자 현황 관리 등 ○ 불법조업 단속 공무원에 대한 감염예방 조치 등 ○ 청사 및 소속관공선 방역지원
해사고등학교	○ 비상대책본부(반) 지원 및 소속기관 비상대책반 협조 ○ 학생 및 교직원 감염예방 조치, 학교시설 방역지원 등 ○ 위기경보 단계에 따른 학사운영 대책 수립·시행 등 ○ 관계기관(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에 따른 협조·지원 등
해양수산 인재개발원	○ 비상대책본부(반) 지원 및 소속기관 비상대책반 협조 ○ 교육생 및 직원 감염예방 조치, 시설 방역지원 등 ○ 위기경보 단계에 따른 교육방법 및 일정 조정 등

4) 산하기관 임무와 역할

구 분	주요 내용
소속 박물관, 등대시설 등	○ 비상대책본부(반) 및 소속기관 비상대책반 지원 ○ 시설 출입통제 및 방역지원, 이용자 검역지원 등 ○ 시설 출입통제기준 마련
항만공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운조합	○ 비상대책본부(반) 및 소속기관 비상대책반 지원 ○ 감염병 발생국과 관련한 선박(여객) 입항 동향 파악 - 입국 선원·여객의 현황 및 특이동향 파악 - 항만별, 선종별 입항 실적 및 전망 - 관계기관(출입국사무소, 관세청, 검역소 등) 협조체계 강화 ○ 여객선 등 운항일정 조정 지원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통제·검역에 따른 협조·지원 등 ○ 항만 및 여객터미널 출입통제 및 방역지원, 이용자 등에 대한 검역지원 등

아. 협업기능별 활동내용

구 분	활 동 내 용	책임기관 (연계부처)
① 재난상황 관리	<재난관리활동 총괄 및 조정>	
	<평시> · 감염병 대응 계획 수립 및 범정부 대응체계 정비 ·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수립 · 감염병 발생 동향 모니터링 및 위기징후 감시 · 국가방역인프라 구축 및 점검 <재난 발생시> · 감염병 위기 상황 대응 총괄 · 위기경보 발령 및 전파 · 대책회의 및 자문회의 운영 · 유관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및 협력체계 운영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행정안전부)
⑥ 재난 자원 지원	<방역물자 신속 지원>	
	· 격리 병상, 지정 의료기관 등의 시설 확보 · 역학조사관, 민간전문가 등 필요 인력 확보 · 진단키트, 치료제 및 백신 등 확보 · 필요 예산 확보 및 지원 · 필요시 감염환자 및 자가격리자 소재 파악 및 관리 등 행정 지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방부 등)
⑧ 의료 및 방역 서비스	<감염환자 및 격리대상자 관리>	
	· 국가 감염병대응 인프라 가동 · 역학조사 실시 및 현장 조치 강화 · 감염환자 및 격리대상자 조치 · 자가격리대상자 관리 · 감염병 환자 이송체계 가동 · 외래 및 입원진료체계 강화 · 감염환자 발견을 위한 감시체계 운영 · 국가예방접종사업 운영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행정안전부, 식약처, 소방청, 해양경찰청, 지자체)

구 분	활 동 내 용	책임기관 (연계부처)
⑨ 재난현장 환경정비	<발생 현장에 대한 방역 및 위생환경 관리>	
	· 감염병 발생 환경 소독·방역 · 감염병 환자 및 접촉자 관련 폐기물 처리 ·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종식을 위한 가축방역활동 · 야생동물 서식지 및 주변지역 출입 통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⑪ 사회질서유지	<전국 방역 및 재난 대응요원 지원>	
	· 환자격리 및 출입통제 등 지원으로 사회 질서유지 · 해상질서 유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토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⑬ 재난수습 홍보	<대상별 예방수칙 홍보 및 위기소통>	
	· 감염병 대응 현황에 대한 대국민 소통 및 정보전달 · 학교·학원, 직장·사업장, 수용·보호시설, 해외여행객, 재외국민, 다중이용 교통시설 종사자, 군 인력·병역 의무자 등에 대한 감염병 예방·관리 홍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교육부, 국방부, 외교부,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병무청)

자. 재난현장 대응·수습 표준체계

(1) 재난현장 대응·수습 표준편제

- 재난현장 대응·수습 편제는 공보, 연락, 상황 총괄(대응계획), 현장 대응, 자원 지원, 대민 지원(긴급 복구)으로 표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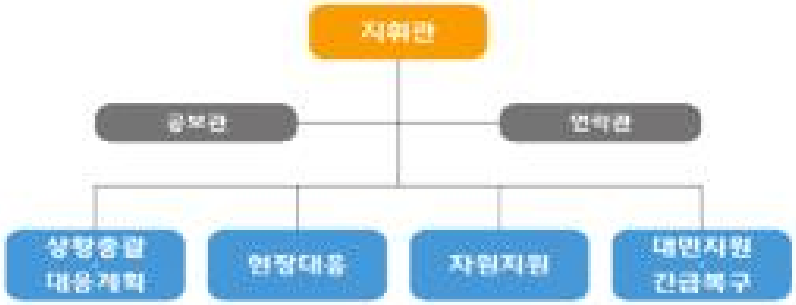

(2) 재난현장 지휘 및 협력체계

○ 현장대응

- (긴급구조 상황) 육상재난은 소방, 해상재난은 해경이 중심으로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본부를 통해 관내 행정기관(군부대, 특행기관 등)을 총괄하여 재난대응을 통합지원한다.

- (비긴급구조 상황) 각 유형별 소관기관에서 담당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본부를 통해 관내 행정기관(군부대, 특행기관 등)을 총괄하여 재난대응을 통합지원한다.

○ 수습복구

-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지휘권을 위임받아 수습·복구 현장을 지휘한다. 소방·해경은 기관의 기본 편제를 가지고 지원에 참여하고, 군·경·유관기관·협회·단체는 통합지원본부장의 지휘를 받아 수습·복구를 지원한다.

(3) 시군구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4. 위기대응 지침 및 판단고려 · 요소

가. 대응개념

1) 목표

가) 해외 신종 감염병 국내 유입 최소화 및 국내확산 조기 종식

나)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추가 전파 및 확산 방지

2) 대응 방향

가) 위기경보 발령 및 상황 전파

나) 감염병 재난 대응체계 가동

다) 유관기관 등과 공조·협력체계 가동

라) 환자·접촉자 관리 등 방역활동 적극 지원

마) 대국민 위기소통

바) 해양수산분야 피해지원(재정·제도)

나. 대응 지침

1)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정부 및 범정부적 총력 대응

가)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소속·유관기관 및 단체에 즉시 전파

나) 비상대책기구 운영으로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구축, 각 부처 소관 사항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 협의

2) 현장방역 및 환자·접촉자 관리 적극 지원

3) 감염병 발생 감시체계 운영 강화

가) 선박, 항만을 통한 감염병 유입 방지를 위한 감시체계 강화

나) 감염병 발생동향에 대한 정보교류 및 협조체계 강화

4)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및 소통을 통한 국민 불안감 해소

가) 위기수준 단계별 대국민 홍보활동 및 정부시책에 대한 홍보 강화

5) 위기경보 발령·해제에 따른 신속한 전파

6) 해양수산분야에 대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대책 마련 및 시행

다. 판단·고려 요소

1) 신종·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 발생·유행시,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의 정보 및 모니터링 현황을 통해 위험성을 고려, 자체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비상대책기구 운영 등 판단

2) 감염병 발생지역을 기항하는 선박의 선원·여객의 감염위험 정도에 따라 유입·유출 및 확산방지를 위한 항만·선박 방역지원 등 고려

3) 해외 유사 대응사례 및 유관기관의 협조범위 등을 고려, 적절한 방역지원 방안 마련

5. 위기경보 수준

가. 위기 경보 수준

구분	위기 유형		주요 대응 활동
	해외 신종 감염병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	
관심 (Blue)	**해외에서의** 신종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발생**	· **감염병별 대책반 운영(질병관리청)** · 위기징후 모니터링 및 감시 · 대응 역량 정비 · 필요시 현장 방역 조치 및 방역 인프라 가동
주의 (Yellow)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 질병관리청) 설치·운영** · 유관기관 협조체계 가동 · 재난상황 접수 및 보고/전파 · 현장 방역 조치 및 방역 인프라 가동 · 모니터링 및 감시 강화 ※ (YGPA) 비상대책반 가동
경계 (Orange)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 질병관리청) 운영 지속** · **중앙사고수습본부(복지부) 설치·운영** · (행안부) 범정부 지원본부 운영검토 ·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 방역 및 감시 강화 등 · 재난상황 파악 및 보고, 전파 ※ (YGPA) 비상대책반 가동, 필요시 비상대책본부 격상 운영
심각 (Red)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 **범정부적 총력 대응에 협조** ※ (YGPA) 비상대책반 가동

6. 위기징후 감시

가. 위기징후 목록

위기형태 (2)	위기징후 (6개)	감시수단 (4개)	감시방법	위기경보	조치 (대비・대응)
1. 해외신종 감염병의 국내유입 및 확산 *주로 해외에서 발생하며 우리나라에서 보고된 적이 없는 감염병 *원인미상의 감염병	1.1. 주변국 발생 또는 유행 확산 *인접국가 또는 교류가 활발한 국가 등 1.2. 겨울 철새 이동 유입 *예: 동물인플루엔자 1.3. 새로운 감염병 매개체 발생 또는 유행 확산 *모기, 진드기, 동물 등	◦사건기반 감시 *국외 감염병 관련 뉴스 등 ◦지표기반 감시 *전수,표본, 실험실 감시	◦평시 사건 및 지표 기반 감시 지속하며 필요시 감시 강화 *중동호흡기 증후군 (MERS) 등 해외 신종감염병 국내 유입에 대하여 24시간 모니터링 및 대응 ◦신고 접수 *종합상황실, 콜센터(1339)	위기평가 회의 결과에 따라 관심~심각 발령 *감염병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위기경보 발령 및 관련부처·지자체 등에 상황 전파 ◦ 국제기구 (OIE, FAO, WHO 등) 및 해외 공관 등을 통해 해외 발생 동향 수집 전파, 발생 시 현황 등 정보 공유 ◦ 긴급 상황 발생시 즉각대응팀을 현지 파견하고, 종합상황실 중심으로 24시간 대응
2. 자연재해 또는 대규모 유통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오염된 물이나 음식에 의하여 유행이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이외에도 위생 악화에 따라 유행이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2.1. 빈발시기 도래 *태풍, 호우, 가뭄 등 2.2. 재난지에서 의심환자 발생 또는 유행 확산 *오염된 물이나 음식 또는 위생 악화에 따라 유행이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2.3. 기상이변 (폭염, 한파 등)으로 인하여 의심환자 발생 또는 유행 확산 *오염된 물이나 음식 또는 위생 악화에 따라 유행이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사건기반 감시 *경보/특보 발령, 기상 정보, 국내·국외 뉴스 등 ◦지표기반 감시 *전수, 표본, 실험실 감시	◦평시 사건 및 지표 기반 감시 지속하며 빈발 시기 도래시 감시강화, 필요시 대책반 운영	위기평가 회의 결과에 따라 관심~심각 발령 *감염병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나. 위기징후 감시체계와 운용

1) 주관기관 위기징후 감시체계 지원

가) 주관기관(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은 위기징후 감시 등 추진

2) 우리부는 주관기관의 위기징후 감시결과를 지속 모니터링

가) 위기징후 감시결과 중 우리부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 등에 신속하게 전파

나) 해양수산분야 관련 위기징후를 접수하는 경우 우리부 종합상황실 또는 소관부서에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 등에 위험정보 전파

7. 위기평가

가. 근거 :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제21조(위기평가)

나. 위기평가회의 시행

1) 목적 : 위기 징후를 포착하거나 위기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위험수준, 발생 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필요시 위기경보 발령

2) 시기 : 질병관리청이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으로 인한 위기징후를 포착하거나 위기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3) 참석자 : 질병관리청 차장(의장), 위기대응분석관, 감염병위기대응국장 등 질병관리청 관련 국장, 위기분석담당관, 위기대응총괄과장 등 감염병별 관련 부서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및 관련 전문가

* 필요시 민간전문가 및 관련 단체 대표자(의사협회, 병원협회, 간호협회 등) 추가 소집 등 참석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

가) 유관기관(우리부)는 주관기관의 위기평가회의 참석요청이 있는 경우, 우리부 비상대책반 구성 시 해운반 또는 상황지원반에 포함되는 부서의 과장 또는 담당사무관 참석

4) 위기평가회의 방법

가) 소집 :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질병관리청 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의참석 대상자에 유·무선 통화 또는 영상 등으로 회의 소집

나) 장소 :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또는 신속한 개최 가능 장소

다) 합동 회의 : 국가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기관 합동 위기평가 회의를 개최하며 영상회의로 개최 가능

* 단, 재난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미지정된 기관도 회의 참여 가능

<관계기관 합동 위기평가 영상회의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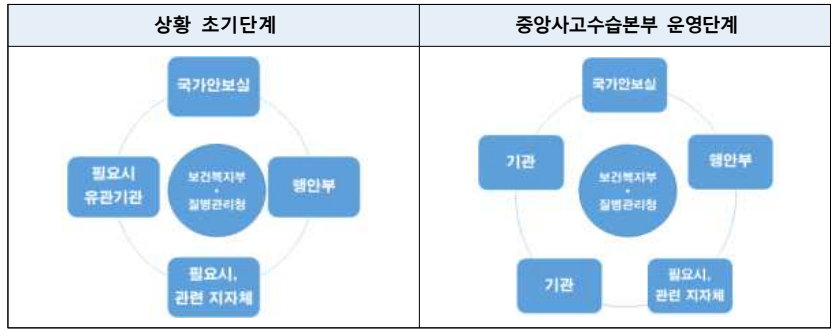

* 영상회의는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또는 신속한 개최 가능 장소에서 개최

라) 평가기준 : 위기평가는 상황의 심각성, 시급성, 확대 가능성, 전개 속도, 지속 기간, 파급 효과, 국내외 여론, 정부의 대응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기평가 실시

* 해양수산부는 질병관리청의 위기평가회의 결과를 준용하여 자체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대응조치 및 비상대응기구 운영 등 세부사항 결정

8. 위기경보와 경보발령

가. YGPA 위기경보 절차

1) 위기경보 전파

가) 재난안전실장(소관부서) 및 비상대책반은 위기경보 발령시에 해양수산부 관련 내용을 전파

나) 관심단계

(1) 재난안전실장(소관부서)은 제4절(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에 따라 각 부서, 관련단체 등에 위기경보 발령 상황을 전파

다) 주의·경계·심각단계

(1) 재난안전실장(소관부서) 및 비상대책반은 제4절(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에 따라 각 부서, 관련단체 등에 위기경보 발령 상황을 전파·대응

* 필요시, 기관별 세부적인 대응요령 등은 소관부서에서 각 부서, 관련 업·단체 등에 별도 전파

라) 위기 상황에 대한 언론 브리핑 등 대외 홍보활동은 공식적인 창구를 지정·운영하여 혼선이 없도록 함

2) 경보해제 전파

가) 대응 및 복구·수습 활동을 통해 위기가 해소되거나 감소 시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은 국가안보실·대통령비서실 및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 후 경보 해제 또는 조정

나) 해양수산부장관(비상대책반 또는 비상대책본부)은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관련단체에 위기경보 발령 상황을 전파·대응

다) 재난안전실장(소관부서)은 각 부서, 관련단체 등에 위기경보 발령 상황을 전파·대응

나. 위기경보 단계별 대응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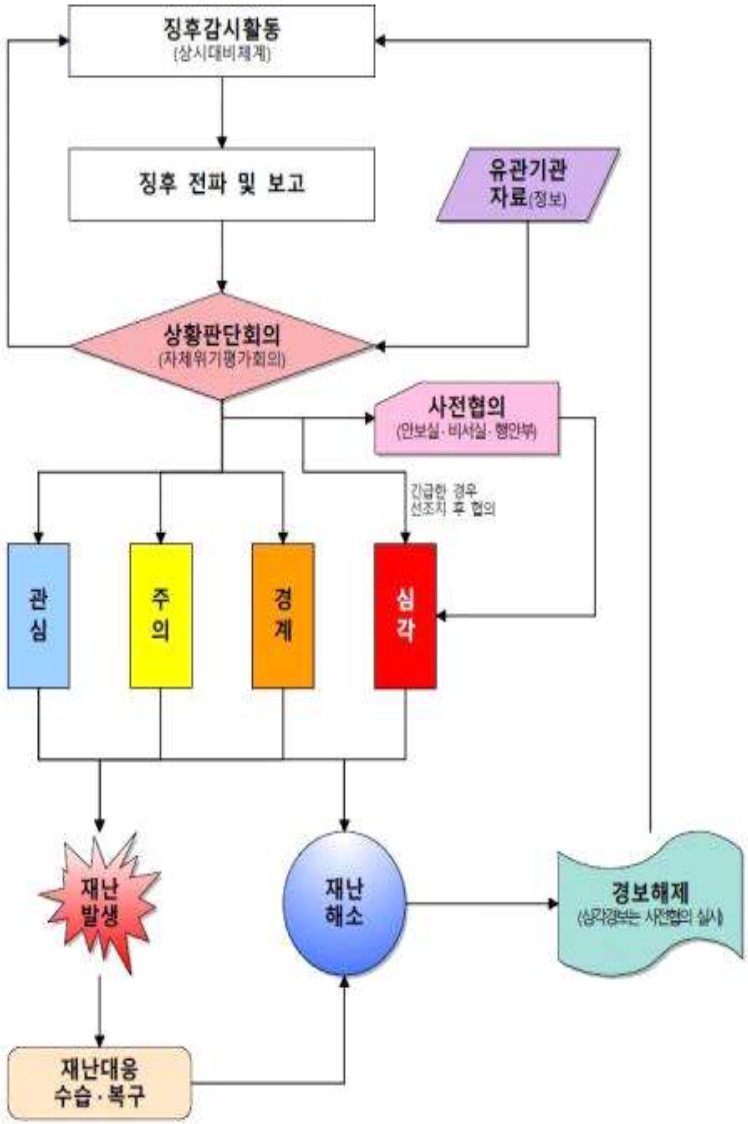

* 심각 단계에서 필요시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주관하도록 요청
*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은 위기단계 임무와 역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시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시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에게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을 권고할 수 있음

9. 비상근무체계

가. 재난관리기구의 구성·운영

1) 주관기관의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사장 및 양본부장 보고, 유관기관 전파 등 재난 대응·지원태세 유지

* 위기경보 '주의'단계에서 YGPA 비상대책반 설치·운영

2) 위기경보 '심각'단계 시 YGPA 비상대책반을 구성하여 범정부 재난대응에 총력 지원

* 필요시 위기경보 '경계'단계에서 비상대책본부로 격상 운영 가능

나. 비상대응기구 근무체계

1) 근무시기 : 경계이상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비상근무 편성 즉시 응소

2) 근무장소 : 월드마린센터 1층 재난안전센터

* 영상회의 시, 출입하는 회의참석자는 최소한으로 운영

3) 근무인원 : 각 실무부 1명으로 편성

* 심각단계의 경우 각 실무부 2명+α로 운영

4) 근무운영 : 09:00 ~ 21:00(각 근무자 정위치 근무)

* 상황에 따라 근무요령 및 시간 변경가능(해양수산부 비상대책반 운영기준에 따름)

5) 인수인계 : 근무교대 시, 전임자와 합동근무 실시

Ⅲ.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Ⅲ.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1. 관심 (Blue)

가. 상황

○ 해외 신종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발생

나. 조치사항

1) 조치목록

가) ‘관심(Blue)’ 위기경보 소속・유관기관 전파

나) YGPA 비상대책반 설치·운영 준비, 국내 입・출항 선박 및 선원(여객) 관련 동향파악, 항만 출입통제 및 선박·항만관리, 사전예방·홍보 등

2) 조치 내용

가) 위기경보 접수 및 전파

(1) 접수 : (주간)재난안전실, (야간)당직자

(2) 전파 : 각 부서, 부두운영사, 항운노조, 배후단지 입주업체, 자회사, 항만을 입·출항하는 선박 관련 단체 등

(가) 위기경보 수준(관심-Blue) 및 해양수산부 조치사항 전파

나) 대응조치

(1) 위기경보 발령 단계별 대응계획 수립

(2) 감염병 발생국과 관련한 선박(여객·선원) 동향 파악

(가) 감염병 발생국별, 선종별(크루즈선 포함) 관련 동향 모니터링

(나) 수산물을 통한 감염경로 및 감염지역 입어·조업선 동향 모니터링 및 전파

(3) 항만 출입통제 및 항만시설·선박 관리

(4)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을 통한 감염병 관련 정보 수집 및 전파

(5) 사전예방 홍보 및 연락망 점검

(가) 국내 감염병 발생 시 출항선박 대상 유의사항 홍보

(나) 사업장 및 여객터미널 등에 감염병 대응요령 홍보

(다) 유관 업·단체 대상 관련정보 홍보

다. 부서별 임무와 역할

부 서	주요 내용
소관부서 (재난안전실)	○ 감염병 관련 동향 파악 및 정부기관과 연락체계 유지 ○ 감염병 발생국과 관련한 선박(선원, 여객) 입항 동향 파악 ○ 항만시설·선박 관리

※ (전부서 공통) 선박·사업장 등 대상 사전예방 홍보 및 연락망 점검

2. 주의 (Yellow)

가. 상 황

○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나. 조치사항

1) 조치 목록

가) '주의(Yellow)' 위기경보 각 부서 · 유관기관 전파

나) 비상대책반 설치·운영, 국내유입(국외유출) 차단을 위한 대응조치, 항만출입자 등에 대한 방역지원, 감시체계 강화 등

(1)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요청시 직원 파견(지원부 및 운영대책부 인원 중 1명)

2) 조치 내용

가) 위기경보 접수 및 전파

(1) 접수 : (주간)재난안전실, (야간)당직자

(2) 전파 : 각 부서, 부두운영사, 항운노조, 배후단지 입주업체, 자회사, 항만을 입·출항하는 선박 관련 단체 등

(가) 위기경보 수준(주의-Yellow) 및 해양수산부 조치사항 전파

나) 대응조치

(1) YGPA 비상대책반 설치·운영

(가) 대상 : 전부서 및 사업소

(나) 근무요령 : 제3절(7. 비상근무체계) 참고

(2) 항만 출입통제 및 항만시설·선박 관리 강화, 방역지원

(3) 항만·여객터미널 근로자, 이용자 등에 대한 검역 지원 등

다. 부서별 임무와 역할

실시반		주요 내용
비상대책반	총괄 통제부	○ 비상대책반 운영 총괄, 행안부, 해수부등 회의대응·협조 등 ○ 비상근무자 현황 관리 ○ 국내유입(국외유출) 차단을 위한 선박에 대한 조치 ○ 열화상 카메라 운영 확인 ○ 감염병 발생국과 관련한 선박(여객) 입항 동향 파악 - 입국 선원·여객의 현황 및 특이동향 파악 - 항만별, 선종별 입항 실적 및 전망 - 관계기관(출입국사무소, 관세청, 검역소 등) 협조체계 강화 ○ 일일보고자료 작성 및 보고(컨테이너 장치율 현황, 공사직원, 발열상태 등) ○ 의심·확진환자 발생 시 사고보고서 작성 및 보고 등 ○ 공사 직원 감염병 확진자 발생 대비 근무체계 유지방안
	운영 대책부	○ 항만운영 업무지속계획 수립·시행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통제·검역에 따른 협조·지원 등 ○ 항만 출입통제 및 방역지원, 항만근로자 등 항만출입자에 대한 검역지원 등 ○ 관련 업·단체 비상연락망 확인 및 점검
	지원부	○ 시설 출입통제 및 방역지원, 이용자 검역지원 등 ○ 위기경보 접수 및 전파(09:00~18:00 시간 외) ○ 대·내외 상황전파(09:00~18:00 시간 외) ○ 소속기관 등의 방역용품(마스크 등) 수요파악 및 지원 등 ○ 사옥 출입자 발열체크 및 개인위생 점검 ○ 보도자료 수집·배포 등 공보업무 총괄 ○ 언론 동향 보고 및 대응 등 ○ 기타 지원업무 수행 및 감독
	여수 사업소	○ 크루즈선 입출항 조정 및 방역지원, 여객·선원에 대한 검역지원 ○ 여객선 등 운항일정 조정 지원 ○ 여객터미널 출입통제 및 방역지원, 근로자·이용자 등에 대한 검역지원 등 ○ 열화상 카메라 운영 확인 ○ 감염병 발생국과 관련한 선박(여객) 입항 동향 파악 - 입국 선원·여객의 현황 및 특이동향 파악 - 항만별, 선종별 입항 실적 및 전망 - 관계기관(출입국사무소, 관세청, 검역소 등) 협조체계 강화

3. 경계 (Orange)

가. 상 황

○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나. 조치사항

1) 조치 목록

가) '경계(Orange)' 위기경보 소속・유관기관 전파

나) YGPA 비상대책반 운영 강화(필요 시 비상대책본부 격상 운영), 국내 입·출항 선박 및 선원(여객)관련 동향파악 및 대응조치 강화, 항만출입자 등에 대한 방역활동 지원, 감시체계 강화 등

(1)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요청시 직원 파견(지원부 및 운영대책부 인원 중 1명)

2) 조치 내용

가) 위기경보 접수 및 전파

(1) 접수 : (주간)재난안전실, (야간)YGPA비상대책반 총괄통제부

(2) 전파 : 각 부서, 부두운영사, 항운노조, 배후단지 입주업체, 자회사, 항만을 입·출항하는 선박 관련 단체 등

(가) 위기경보 수준(경계-Orange) 및 해양수산부 조치사항 전파

나) 대응조치

(1) YGPA 비상대책반 운영 강화(필요 시 비상대책본부 격상 운영)

(가) 대상 : 전부서 및 사업소

(나) 근무요령 : 제3절(7. 비상근무체계) 참고

(2) 여객선 등 운항일정 조정 지원

(3) 항만·여객터미널 출입통제 및 방역 지원

(4) 항만·여객터미널 근로자, 이용자 등에 대한 검역 지원 등

다. 부서별 임무와 역할

실시반		주요 내용
비상대책반	총괄 통제부	○ 비상대책반 운영 총괄, 행안부, 해수부등 회의대응·협조 등 ○ 비상근무자 현황 관리 ○ 국내유입(국외유출) 차단을 위한 선박에 대한 조치 ○ 열화상 카메라 운영 확인 ○ 감염병 발생국과 관련한 선박(여객) 입항 동향 파악 - 입국 선원·여객의 현황 및 특이동향 파악 - 항만별, 선종별 입항 실적 및 전망 - 관계기관(출입국사무소, 관세청, 검역소 등) 협조체계 강화 ○ 일일보고자료 작성 및 보고(컨테이너 장치율 현황, 공사직원, 발열상태 등) ○ 의심·확진환자 발생 시 사고보고서 작성 및 보고 등 ○ 공사 직원 감염병 확진자 발생 대비 근무체계 유지방안
	운영 대책부	○ 항만운영 업무지속계획 수립·시행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통제·검역에 따른 협조·지원 등 ○ 항만 출입통제 및 방역지원, 항만근로자 등 항만출입자에 대한 검역지원 등 ○ 관련 업·단체 비상연락망 확인 및 점검
	지원부	○ 시설 출입통제 및 방역지원, 이용자 검역지원 등 ○ 위기경보 접수 및 전파(09:00~18:00 시간 외) ○ 대·내외 상황전파(09:00~18:00 시간 외) ○ 소속기관 등의 방역용품(마스크 등) 수요파악 및 지원 등 ○ 사옥 출입자 발열체크 및 개인위생 점검 ○ 보도자료 수집·배포 등 공보업무 총괄 ○ 언론 동향 보고 및 대응 등 ○ 기타 지원업무 수행 및 감독
	여수 사업소	○ 크루즈선 입출항 조정 및 방역지원, 여객·선원에 대한 검역지원 ○ 여객선 등 운항일정 조정 지원 ○ 여객터미널 출입통제 및 방역지원, 근로자·이용자 등에 대한 검역지원 등 ○ 열화상 카메라 운영 확인 ○ 감염병 발생국과 관련한 선박(여객) 입항 동향 파악 - 입국 선원·여객의 현황 및 특이동향 파악 - 항만별, 선종별 입항 실적 및 전망 - 관계기관(출입국사무소, 관세청, 검역소 등) 협조체계 강화

4. 심각 (Red)

가. 상 황

○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및 전국적 확산,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나. 조치사항

1) 조치 목록

가) '심각(Red)' 위기경보 소속・유관기관 전파

나) YGPA 비상대책반 운영 강화, 법정부적 대응체계 가동 협조

(1)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요청시 직원 파견(지원부 및 운영대책부 인원 중 1명)

2) 조치 내용

가) 위기경보 접수 및 전파

(1) 접수 : (주간)재난안전실, (야간)YGPA비상대책반 총괄통제부

(2) 전파 : 각 부서, 부두운영사, 항운노조, 배후단지 입주업체, 자회사, 항만을 입·출항하는 선박 관련 단체 등

(가) 위기경보 수준(심각-Red) 및 해양수산부 조치사항 전파

나) 대응조치

(1) YGPA 비상대책반 강화

(가) 대상 : 전부서 및 사업소

(나) 근무요령 : 제3절(7. 비상근무체계) 참고

(2) 범정부적 총력 대응 지원 등

다. 부서별 임무와 역할

1) YGPA 비상대책반 부서별 임무와 역할

실시반		주요 내용
비상대책반	총괄 통제부	○ 비상대책반 운영 총괄, 행안부, 해수부등 회의대응·협조 등 ○ 비상근무자 현황 관리 ○ 국내유입(국외유출) 차단을 위한 선박에 대한 조치 ○ 열화상 카메라 운영 확인 ○ 감염병 발생국과 관련한 선박(여객) 입항 동향 파악 - 입국 선원·여객의 현황 및 특이동향 파악 - 항만별, 선종별 입항 실적 및 전망 - 관계기관(출입국사무소, 관세청, 검역소 등) 협조체계 강화 ○ 일일보고자료 작성 및 보고(컨테이너 장치율 현황, 공사직원, 발열상태 등) ○ 의심·확진환자 발생 시 사고보고서 작성 및 보고 등 ○ 공사 직원 감염병 확진자 발생 대비 근무체계 유지방안
	운영 대책부	○ 항만운영 업무지속계획 수립·시행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통제·검역에 따른 협조·지원 등 ○ 항만 출입통제 및 방역지원, 항만근로자 등 항만출입자에 대한 검역지원 등 ○ 관련 업·단체 비상연락망 확인 및 점검
	지원부	○ 시설 출입통제 및 방역지원, 이용자 검역지원 등 ○ 위기경보 접수 및 전파(09:00~18:00 시간 외) ○ 대·내외 상황전파(09:00~18:00 시간 외) ○ 소속기관 등의 방역용품(마스크 등) 수요파악 및 지원 등 ○ 사옥 출입자 발열체크 및 개인위생 점검 ○ 보도자료 수집·배포 등 공보업무 총괄 ○ 언론 동향 보고 및 대응 등 ○ 기타 지원업무 수행 및 감독
	여수 사업소	○ 크루즈선 입출항 조정 및 방역지원, 여객·선원에 대한 검역지원 ○ 여객선 등 운항일정 조정 지원 ○ 여객터미널 출입통제 및 방역지원, 근로자·이용자 등에 대한 검역지원 등 ○ 열화상 카메라 운영 확인 ○ 감염병 발생국과 관련한 선박(여객) 입항 동향 파악 - 입국 선원·여객의 현황 및 특이동향 파악 - 항만별, 선종별 입항 실적 및 전망 - 관계기관(출입국사무소, 관세청, 검역소 등) 협조체계 강화

Ⅳ. 재난상황별 조치내용 및 절차

Ⅳ. 재난상황별 조치내용 및 절차

1. 발생상황 Ⅰ

가. 상황(신종 감염병이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된 후 확산)

□ 개 요

o 0000년 00월 00일 우리나라와 인접한 00나라 00지역에서 발생한 신종 감염병이 국내에 유입, 확산되고 있음

- 00개 국가에서 00으로 추정되는 질환이 00명에게 발생
- 국내 00지역에서 00으로 추정되는 질환이 00명에게 발생

□ 세부 내용

o 신종감염병(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및 신종인플루엔자 등) 발생 정보 입수 : 00월 00일 00시 00국가 00지역에서 00증상을 호소하는 00명의 환자 발생

- 발생 경위 등

o 발생 현황 (지역별 등)

- 해외 00지역 : 확진자 00명(사망자 0명), 의심환자 0명
- 국내 00지역 : 확진자 00명(사망자 0명), 의심환자 0명(검사중 0명), 접촉자 00명(시설격리 0명, 자가격리 0명), 기타 피해 등

o 방역조치사항

- 대응조직 가동
- 입국자에 대한 검역활동
- 역학조사 실시 및 현장 방역 조치 등

□ 기타 : 언론보도 등

- 언론보도 내용 : 00월 00일 00시 KBS, MBC, SBS, YTN 등

나. 조치사항

1) 조치목록

조치사항	조치내용	비 고
(1)상황접수	(1-1) 상황 접수 (1-2) 상황 파악 및 정보 수집 (1-3) 상황보고 및 유관기관 전파 (1-4) 담당부서 직원 비상소집	재난안전실
(2)상황판단회의	(2-1) 상황판단회의(또는 위기관리 위원회) 개최	재난안전실
(3)대응조치	(3-1) 비상대책본부(반) 설치·운영 (3-2) 감시체계 강화 (3-3) 확산방지 노력 (3-4) 유관기관 협업 (3-5) 감염병 발생 대응	재난안전실
(4)후속조치	(4-1) 사고수습상황 종합 보고	재난안전실

※ 사고유형, 발생장소, 기상상황, 발생시간(주, 야간) 등 방제작업제약조건을 감안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실시

2) 조치내용

(1) 상황접수

(1-1) 상황접수

○ 행안부, 해수부, 언론 등으로부터 감염병 확산 상황 접수

(1-2) 상황파악 및 정보 수집

○ 감염병 발생국, 유행경로, 예방정보 등 파악

(1-3) 상황보고 및 유관기관 전파

○ 임원 및 유관부서 직원 대상 전파

- 유・무선, SNS, 서면 등

○ 필요 시, 유관기관 및 민간 업・단체 대상 예방수칙 전파

- 홈페이지, 카카오톡, 유선, 단체문자 등 활용

(1-4) 담당부서 직원 비상소집

○ 유관부서 직원 연락 및 비상소집

- 별도 비상근무 계획에 따른 비상근무인원을 소집하며,
-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재난・사고에 대한 별도 계획 수립

(다-1) 해양수산분야 지원을 위한 재정적·제도적 대책 마련·추진

(2) 상황회의파단

(2-1) 상황판단회의 개최

○ 사장 주재 회의 개최(운영본부장, 재난안전실장 대체 가능)

- 참가인원 : 임원, 관련 부서장, 관련 부서원 등
- 개최장소 : 여수광양항만공사 1층 재난안전센터

  * 상황을 고려하여 SNS, 서면 등으로 대체 가능

- 회의내용 : 긴급조치사항, 유관기관 협업사항, 사고수습지원본부 가동여부 등

○ 상황판단회의는 상황을 고려하여 긴급 또는 주기적으로 추가 개최할 수 있음

(3) 대응조치

(3-1) 사고수습지원본부 설치・운영

ㅇ사고수습지원본부 구성

- 근무인원 : 별도 계획에 따른 인원 편성
- 근무장소 : 여수광양항만공사 1층 재난안전센터
- 근무방법 : 24시간 교대근무 (또는 유선대기)

  *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3-2) 감시체계 강화

ㅇ감염병 발생국과 관련한 선박(선원) 입항 동향 파악

ㅇ항만 및 사옥 출입통제 강화(출입자 체온 측정)

(3-3) 확산방지 노력

ㅇ 항만 경비보안인력 감염예방 조치 (마스크, 손소독제 지원 등)

ㅇ 필요시, 검체채취, 대기장소, 방호복 탈의시설, 임시격리시설 등 운영 지원

  * 선원휴게소, 이동초소 등 활용

ㅇ 확진환자 역학조사 지원(항만 내 CCTV 활용 이동경로 및 접촉자 파악)

ㅇ 필요시, 항만구역 출입 통제

- 감염병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열체크 및 발열환자 격리조치

ㅇ 사옥 및 항만 방역 실시

- 확진환자 동선 파악 후, 소독범위 결정 및 소독제 선정

*동선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일반인 이용·접촉이 잦은 구역 설정(예시, 엘리베이터 버튼, 손잡이, 레일, 키보드, 팔걸이 등)

- 발병 감염병 관련 승인 소독제 사용하여 방역 실시

*보행로 등 야외 공간의 무분별한 소독제 살포 자제

ㅇ 임직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개인 건강·위생관리 강화

ㅇ 국내·외 출장 자제 및 회의 개최시기 조정

(3-4) 유관기관 협업

ㅇ 해수부 및 여수청 비상대책반 지원

ㅇ 관계기관(출입국사무소, 관세청, 검역소 등) 협조체계 강화

- 입출항 선박 방역지원 및 선원 검역 지원

(3-5) 필요시, 감염병 발생 대응방안 마련

ㅇ 항만운영 업무지속계획 마련

ㅇ 우리공사 확진자 발생 대비 근무체계 유지방안 마련

- 사옥 내 확진자 발생 시, 대체 시설 확보 방안

- 종합상황실 및 초소 보안근무자 감염 시, 세관 감시종합상황실 또는 이동식 초소(현장지휘차량) 활용 방안

- 재택근무 전환 방안 등

ㅇ 대규모 확진환자 발생 시 이송방안 마련

- 병원별 음압병실, 음압이송장비, 구급차 현황 파악 등

ㅇ 선원 및 항만근로자 비대면 하역 방안 마련

<예시>
- 하역근로자 명단 E-mail 송・수신
- 선상 선원 작업 종료 후, 하역사 포맨 감독 하에 하역근로자 승선
- 크레인 조작 후, 조종실 자체 소독
- 포맨과 선원 간, 무전기 활용으로 소통 일원화 및 대면 의사소통 금지
- 선원 및 하역근로자 작업 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4) 후속조치

(4-1) 사고수습상황 종합 보고

◯ 사고개요 등 관련사항 정리

◯ 조치결과 및 향후 복구계획 등 정리

◯ 재발방지대책 마련

3) 체크리스트

조치절차	조치내용	수행여부		비고
		YES	NO	
상황접수	① 상황접수			
	② 상황파악 및 정보수집			
	③ 상황보고 및 유관기관 전파			
	④ 담당부서 직원 비상소집			
초동조치	① 상황판단회의 개최			
대응조치	① 사고수습지원본부 설치·운영			
	② 감시체계 강화			
	③ 확산방지 노력			
	④ 유관기관 협업			
	⑤ 감염병 발생 대응			
후속조치	① 사고수습상황 종합 보고			

다. 부서별 임무와 역할

1) 본부 실시반별 임무와 역할

실시반		주요 내용
비상대책반	총괄통제부	○ 비상대책반 운영 총괄, 행안부, 해수부등 회의대응·협조 등 ○ 비상근무자 현황 관리 ○ 국내유입(국외유출) 차단을 위한 선박에 대한 조치 ○ 열화상 카메라 운영 확인 ○ 감염병 발생국과 관련한 선박(여객) 입항 동향 파악 - 입국 선원·여객의 현황 및 특이동향 파악 - 항만별, 선종별 입항 실적 및 전망 - 관계기관(출입국사무소, 관세청, 검역소 등) 협조체계 강화 ○ 일일보고자료 작성 및 보고(컨테이너 장치율 현황, 공사직원, 발열상태 등) ○ 의심·확진환자 발생 시 사고보고서 작성 및 보고 등 ○ 공사 직원 감염병 확진자 발생 대비 근무체계 유지방안
	운영대책부	○ 항만운영 업무지속계획 수립·시행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통제·검역에 따른 협조·지원 등 ○ 항만 출입통제 및 방역지원, 항만근로자 등 항만출입자에 대한 검역지원 등 ○ 관련 업·단체 비상연락망 확인 및 점검
	지원부	○ 시설 출입통제 및 방역지원, 이용자 검역지원 등 ○ 위기경보 접수 및 전파(09:00~18:00 시간 외) ○ 대·내외 상황전파(09:00~18:00 시간 외) ○ 소속기관 등의 방역용품(마스크 등) 수요파악 및 지원 등 ○ 사옥 출입자 발열체크 및 개인위생 점검 ○ 보도자료 수집·배포 등 공보업무 총괄 ○ 언론 동향 보고 및 대응 등 ○ 기타 지원업무 수행 및 감독
	여수사업소	○ 크루즈선 입출항 조정 및 방역지원, 여객·선원에 대한 검역지원 ○ 여객선 등 운항일정 조정 지원 ○ 여객터미널 출입통제 및 방역지원, 근로자·이용자 등에 대한 검역지원 등 ○ 열화상 카메라 운영 확인 ○ 감염병 발생국과 관련한 선박(여객) 입항 동향 파악 - 입국 선원·여객의 현황 및 특이동향 파악 - 항만별, 선종별 입항 실적 및 전망 - 관계기관(출입국사무소, 관세청, 검역소 등) 협조체계 강화

2. 발생상황 II

가. 상황(국내 원인불명 재출현감염병으로 대규모 환자 발생)

□ 개 요

o 0000년 00월 00일 00지역에서 발생한 원인불명 또는 재출현감염병이 확산되어 대규모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음

- 00개 지역에서 00으로 추정되는 질환이 00명에게 발생

□ 세부 내용

o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 발생 정보 입수 : 00월 00일 00시 00지역에서 00증상을 호소하는 00명의 환자 발생

- 발생 경위 등

o 발생 현황 (지역별 등)

- 국내 00지역 : 확진자 00명(사망자 0명), 의심환자 0명(검사중 0명), 접촉자 00명(시설격리 0명, 자가격리 0명), 기타 피해 등

- 인수공통감염 발생

o 방역조치사항

- 병·의원 감시체계 강화

- 국가방역인프라 가동

- 환자이송 및 관리, 가검물 검사의뢰, 예방접종 등

□ 기타 : 언론보도 등

- 언론보도 내용 : 00월 00일 00시 KBS, MBC, SBS, YTN 등

나. 조치사항

1) 조치목록

조치사항	조치내용	비 고
(1)상황접수	(1-1) 상황 접수 (1-2) 상황 파악 및 정보 수집 (1-3) 상황보고 및 유관기관 전파 (1-4) 담당부서 직원 비상소집	재난안전실
(2)상황판단회의	(2-1) 상황판단회의(또는 위기관리 위원회) 개최	재난안전실
(3)대응조치	(3-1) 비상대책본부(반) 설치·운영 (3-2) 감시체계 강화 (3-3) 확산방지 노력 (3-4) 유관기관 협업 (3-5) 감염병 발생 대응	재난안전실
(4)후속조치	(4-1) 사고수습상황 종합 보고	재난안전실

※ 사고유형, 발생장소, 기상상황, 발생시간(주, 야간) 등 방제작업제약조건을 감안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실시

2) 조치내용

(1) 상황접수

(1-1) 상황접수

○ 행안부, 해수부, 언론 등으로부터 감염병 확산 상황 접수

(1-2) 상황파악 및 정보 수집

○ 감염병 발생국, 유행경로, 예방정보 등 파악

(1-3) 상황보고 및 유관기관 전파

○ 임원 및 유관부서 직원 대상 전파

- 유・무선, SNS, 서면 등

○ 필요 시, 유관기관 및 민간 업・단체 대상 예방수칙 전파

- 홈페이지, 카카오톡, 유선, 단체문자 등 활용

(1-4) 담당부서 직원 비상소집

○ 유관부서 직원 연락 및 비상소집

- 별도 비상근무 계획에 따른 비상근무인원을 소집하며,
-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재난・사고에 대한 별도 계획 수립

(다-1) 해양수산분야 지원을 위한 재정적·제도적 대책 마련·추진

(2) 상황회의파단

(2-1) 상황판단회의 개최

○ 사장 주재 회의 개최(운영본부장, 재난안전실장 대체 가능)

- 참가인원 : 임원, 관련 부서장, 관련 부서원 등
- 개최장소 : 여수광양항만공사 1층 재난안전센터

* 상황을 고려하여 SNS, 서면 등으로 대체 가능

- 회의내용 : 긴급조치사항, 유관기관 협업사항, 사고수습지원본부 가동여부 등

○ 상황판단회의는 상황을 고려하여 긴급 또는 주기적으로 추가 개최할 수 있음

(3) 대응조치

(3-1) 사고수습지원본부 설치・운영

ㅇ사고수습지원본부 구성

- 근무인원 : 별도 계획에 따른 인원 편성
- 근무장소 : 여수광양항만공사 1층 재난안전센터
- 근무방법 : 24시간 교대근무 (또는 유선대기)

*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3-2) 감시체계 강화

ㅇ감염병 발생국과 관련한 선박(선원) 입항 동향 파악

ㅇ항만 및 사옥 출입통제 강화(출입자 체온 측정)

(3-3) 확산방지 노력

ㅇ 항만 경비보안인력 감염예방 조치 (마스크, 손소독제 지원 등)

ㅇ 필요시, 검체채취, 대기장소, 방호복 탈의시설, 임시격리시설 등 운영 지원

* 선원휴게소, 이동초소 등 활용

ㅇ 확진환자 역학조사 지원(항만 내 CCTV 활용 이동경로 및 접촉자 파악)

ㅇ 필요시, 항만구역 출입 통제

- 감염병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열체크 및 발열환자 격리조치

ㅇ 사옥 및 항만 방역 실시

- 확진환자 동선 파악 후, 소독범위 결정 및 소독제 선정

*동선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일반인 이용·접촉이 잦은 구역 설정(예시, 엘리베이터 버튼, 손잡이, 레일, 키보드, 팔걸이 등)

- 발병 감염병 관련 승인 소독제 사용하여 방역 실시

*보행로 등 야외 공간의 무분별한 소독제 살포 자제

ㅇ 임직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개인 건강·위생관리 강화

ㅇ 국내·외 출장 자제 및 회의 개최시기 조정

(3-4) 유관기관 협업

ㅇ 해수부 및 여수청 비상대책반 지원

ㅇ 관계기관(출입국사무소, 관세청, 검역소 등) 협조체계 강화

- 입출항 선박 방역지원 및 선원 검역 지원

(3-5) 필요시, 감염병 발생 대응방안 마련

ㅇ 항만운영 업무지속계획 마련

ㅇ 우리공사 확진자 발생 대비 근무체계 유지방안 마련

- 사옥 내 확진자 발생 시, 대체 시설 확보 방안

- 종합상황실 및 초소 보안근무자 감염 시, 세관 감시종합상황실 또는 이동식 초소(현장지휘차량) 활용 방안

- 재택근무 전환 방안 등

ㅇ 대규모 확진환자 발생 시 이송방안 마련

- 병원별 음압병실, 음압이송장비, 구급차 현황 파악 등

ㅇ 선원 및 항만근로자 비대면 하역 방안 마련

<예시>
- 하역근로자 명단 E-mail 송・수신
- 선상 선원 작업 종료 후, 하역사 포맨 감독 하에 하역근로자 승선
- 크레인 조작 후, 조종실 자체 소독
- 포맨과 선원 간, 무전기 활용으로 소통 일원화 및 대면 의사소통 금지
- 선원 및 하역근로자 작업 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4) 후속조치

(4-1) 사고수습상황 종합 보고

◯ 사고개요 등 관련사항 정리

◯ 조치결과 및 향후 복구계획 등 정리

◯ 재발방지대책 마련

3) 체크리스트

조치절차	조치내용	수행여부		비고
		YES	NO	
상황접수	① 상황접수			
	② 상황파악 및 정보수집			
	③ 상황보고 및 유관기관 전파			
	④ 담당부서 직원 비상소집			
초동조치	① 상황판단회의 개최			
대응조치	① 사고수습지원본부 설치·운영			
	② 감시체계 강화			
	③ 확산방지 노력			
	④ 유관기관 협업			
	⑤ 감염병 발생 대응			
후속조치	① 사고수습상황 종합 보고			

다. 부서별 임무와 역할

1) 본부 실시반별 임무와 역할

실시반		주요 내용
비상대책반	총괄통제부	○ 비상대책반 운영 총괄, 행안부, 해수부등 회의대응·협조 등 ○ 비상근무자 현황 관리 ○ 국내유입(국외유출) 차단을 위한 선박에 대한 조치 ○ 열화상 카메라 운영 확인 ○ 감염병 발생국과 관련한 선박(여객) 입항 동향 파악 - 입국 선원·여객의 현황 및 특이동향 파악 - 항만별, 선종별 입항 실적 및 전망 - 관계기관(출입국사무소, 관세청, 검역소 등) 협조체계 강화 ○ 일일보고자료 작성 및 보고(컨테이너 장치율 현황, 공사직원, 발열상태 등) ○ 의심·확진환자 발생 시 사고보고서 작성 및 보고 등 ○ 공사 직원 감염병 확진자 발생 대비 근무체계 유지방안
	운영대책부	○ 항만운영 업무지속계획 수립·시행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통제·검역에 따른 협조·지원 등 ○ 항만 출입통제 및 방역지원, 항만근로자 등 항만출입자에 대한 검역지원 등 ○ 관련 업·단체 비상연락망 확인 및 점검
	지원부	○ 시설 출입통제 및 방역지원, 이용자 검역지원 등 ○ 위기경보 접수 및 전파(09:00~18:00 시간 외) ○ 대·내외 상황전파(09:00~18:00 시간 외) ○ 소속기관 등의 방역용품(마스크 등) 수요파악 및 지원 등 ○ 사옥 출입자 발열체크 및 개인위생 점검 ○ 보도자료 수집·배포 등 공보업무 총괄 ○ 언론 동향 보고 및 대응 등 ○ 기타 지원업무 수행 및 감독
	여수사업소	○ 크루즈선 입출항 조정 및 방역지원, 여객·선원에 대한 검역지원 ○ 여객선 등 운항일정 조정 지원 ○ 여객터미널 출입통제 및 방역지원, 근로자·이용자 등에 대한 검역지원 등 ○ 열화상 카메라 운영 확인 ○ 감염병 발생국과 관련한 선박(여객) 입항 동향 파악 - 입국 선원·여객의 현황 및 특이동향 파악 - 항만별, 선종별 입항 실적 및 전망 - 관계기관(출입국사무소, 관세청, 검역소 등) 협조체계 강화

Ⅴ. 기관대응수칙

기관대응수칙은 매뉴얼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재난유형별 주요 단계에서 지휘부와 핵심 대응부서가 판단하고 조치할 행동절차를 규정

유형 : 감염병 재난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관리번호 : 사회재난-16

관련 매뉴얼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감염병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 질병관리청, 행정안전부, 환경부, 외교부, 국방부, 교육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병무청

Ⅰ 국가재난대응 체계도 및 절차도

재난관리 체계도	감염병 재난 대응 표준절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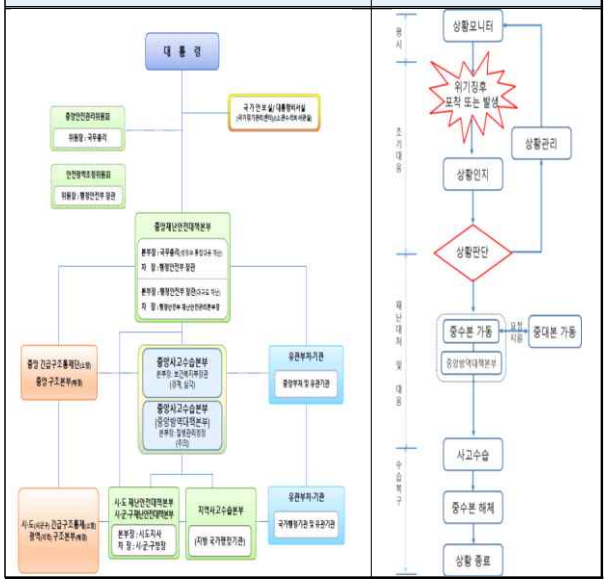

Ⅱ 감염병 대응 프로세스

구 분	관심	질환별 대책반 (질병관리청) 운영	주의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 운영 필요시, 대응지원단(보건복지부) 운영	경계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 지속 운영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 운영	심각	범정부적 총력대응 단계	수습 · 복구 단계
대응부서	상황실	**상황 모니터링** • 국내외 발생 상황 모니터링 - (신종감염병) 해외 발생 동향 모니터링 및 국내 유입 가능성 예측 - (국내감염병) 원인·규모 파악 및 확산가능성 예측	**상황 접수** • 초기상황 파악 - 감염원인 역학조사, 현장조치 등 감염병 발생 현황 파악 - 환자발생 확대가능성 여부 및 조치사항 등 파악 **상황 전파** • 장·차관, 실·국장, 청장 등 재난소관부서 전파 • 필요시 BH, 총리실 등 유관기관 전파	• 추가 발생 현황 파악 • 지자체 및 유관기관 대응 상황 파악 • 상황 보고서 작성 및 전파	• 환자 발생 확대 상황 질병관리청장 및 장·차관 보고 • 상황 보고서 작성 및 전파 • 주요인사 상황실 방문 시 브리핑	• 협조 및 피해사례 등에 대한 지원·보상 – 의료기관 손실 보상 및 환자, 격리자, 유가족 등에 대한 심리 지원 • 감염병 유행 사례에 대한 역학적 분석 • 감염병 위기대응 조치에 대한 종합 평가 – 피해 사례 및 규모 파악 – 대응 및 협조체계 평가 – 위기수준 및 단계별 조치사항 평가 등 • 평가 결과에 따른 대응체계 보완 – 대응체계, 매뉴얼 등 수정·보완 – 국가 방역 인프라 보완
	소관부서	**자체위기평가회의** • 감염병 발생 상황 판단 및 위기경보수준 판단 **감염병별 대책반 운영** • 감염병 대응 체계 정비·점검 • 감염병 대응 지침 점검 • 위기징후 모니터링 • 필요시(국내감염병등의 경우) 현장 확인, 초동조치 및 역학조사 실시	**자체위기평가회의** • 감염병 발생 상황 판단 및 위기경보수준 판단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 • 발생 상황 및 대응계획 보고(청장 및 장차관) • 국가 감염병 대응 인프라 가동 - 역학조사반 및 즉각대응팀 현장 파견 -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감시 및 실험실 진단체계 가동 - 병상, 시설, 방역물자 지원 및 수급관리 • 감염병 예방에 대한 대국민 홍보 지속 및 언론 브리핑 • 중앙사고수습본부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 질병관리청장) 지시사항 이행	• 상황실 정보 인수 및 추가 상황 파악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 중앙사고수습본부 확대 운영 •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 질병관리청) 운영 강화 - 역학조사 및 현장 방역 조치 강화 - 감시체계 및 실험실 진단체계 강화 - 국가 방역 인프라 가동 강화(24시간 비상 방역체계 등) - 국가 방역·검역 인력, 병상, 시설, 방역물자 보강 검토 - 유관기관 상호협력, 조정 체계 강화 - 대국민 위기 소통 강화 •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장관) 지시사항 이행	• 상황실 정보 인수 및 추가 상황 파악 •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 질병관리청) 운영 강화 - 필요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요청 •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 운영 강화 - 국가 감염병 대응태세 및 인프라·가용자원 총력 동원 - 환자 조기 치료체계 구축 - 유관기관 상호협력, 조정 체계 강화 지속 •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장관) 지시사항 이행 • 중앙사고수습본부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 질병관리청장) 지시사항 이행 • VIP 상황실 방문 시 브리핑 자료 작성	
장·차관 (본부장)		**조치사항 지시** • 감염병 발생 현황 및 현장 대응 상황 파악 등 • 필요시 긴급조치사항 지시(환자 발생 확산 방지 대책 강구) **감염병별 대책반 운영 점검** • 긴급조치사항 지시 (질병관리청장)	**위기경보 발령** • 발생현황 확인 및 위기경보 발령(장관) **조치사항 지시** • 감염병 발생 현황 및 현장 대응 상황 파악 등 • 필요시 긴급조치사항 지시(환자 발생 확산 방지 대책 강구)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 점검** • 운영에 따른 긴급조치사항 지시(질병관리청장)	**위기평가 확인** - 위기평가 확인 및 위기 단계 격상 결정 -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자체 등 대처상황 점검 **조치사항 지시** • 필요시 긴급조치사항 지시(범정부 협조체계 확립 등)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점검** • 운영에 따른 긴급조치사항 지시(보건복지부장관)	• 위기평가 확인 및 위기 단계 격상 결정 • 위기경보 발령 •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 지자체 등 대처상황 점검 •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및 운영에 따른 조치사항 지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공조 총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사고수습 사전 협의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 사고수습 협력 당부	• 위기경보 단계 하향 • 재발방지 대책 수립 총괄
담당실·국·센터장		• 위기평가회의 주재 (의장:질병관리청 차장) • 상황실·재난대응부서에 긴급조치 지시	• 위기평가회의 주재(의장:질병관리청 차장) • 상황실·재난대응부서에 긴급조치 지시	• 위기평가회의 주재(의장:질병관리청 차장) • 상황실·재난대응부서에 긴급조치 지시	• 위기평가회의 주재(의장:질병관리청 차장) • 상황실·재난대응부서에 긴급조치 지시	• 감염병 방역조치로 인한 손해에 대한 비용 보상 계획 수립 • 감염병 발생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대변인 (위기소통 담당관)		• 보도자료 기획·배포, 언론 대응 • 콘텐츠 및 국민소통 채널 관리	• 언론브리핑 및 취재 지원 • 보도자료 배포, 언론/온라인 여론 모니터링 • 민원소통 강화, 국민소통 채널활용 대응콘텐츠 확산	• 언론브리핑 및 취재 지원 • 보도자료 배포, 언론/온라인 여론 모니터링 • 민원소통 강화, 민관채널 협력 위기극복콘텐츠 확산	• 언론브리핑 및 취재 지원 • 보도자료 배포, 언론/온라인 여론 모니터링 • 민원소통 강화, 민관채널 협력 위기극복콘텐츠 확산	• 위기소통 평가 및 매뉴얼 보완
유관부서		**질병관리청** • 감염병위기대응국(상황총괄단) : 방역 기획·총괄 및 대응관리, 해외입국자 관리 및 검역, 방역물자 관리 등 • 위기대응분석국(역학조사분석단) : 국내외 정보수집·위기분석, 역학조사 및 환자관리, 현장관리 • 감염병별 담당부서(방역지원단, 의료기관·시설관리단) : 접촉자 및 격리자 관리, 지침관리, 방역지원, 의료기관 감염관리, 격리시설 관리 등 • 감염병진단분석국(진단분석단) : 진단검사체계 총괄, 검사분석 등 •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별 담당부서(검사팀) : 진단법 확립, 진단시약 등 • 대변인(위기소통팀) : 언론소통(보도자료,브리핑, 취재지원 등),오보 및 루머 대응, 국민소통 등 • 종합상황실(상황관리팀) : 유관기관 상황전파, 1339콜센터 운영 • 행정지원단 : 조직, 인사, 예산, 물품 등 행정지원, 국제협력 등		**보건복지부** • 공공보건정책관(총괄반) : 상황 총괄 관리, 심의.자문기구 운영, 재정지원 및 손실보상 관리 등 • 보건의료정책관(자원관리반) : 의료자원 확보 및 관리, 의료인 및 의료기관 방역조치 관리 총괄 • 대변인실(홍보관리반) : 보도자료, 언론브리핑 총괄, 오보대응 등 • 비상안전기획관(대외협력반) : 대외협력 총괄, 관계부처 유관기관 협의, 파견인력 관리 • 정책기획관(행정지원반) : 행정지원 총괄, 청와대, 국무조정실, 국회 대응, 예산확보, 장차관 지시사항 관리		

Ⅲ YGPA 감염병 대응 프로세스

구 분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수습 · 복구 단계
	질환별 대책반 (질병관리청) 운영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 운영 필요시, 대응지원단(보건복지부) 운영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 지속 운영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 운영	범정부적 총력대응 단계	
대응부서 – 비상대책반	• 미 가동 • 소관부서에서 총괄 대응	• 미 가동 • 소관부서에서 총괄 대응	**YGPA비상대책반 가동** • 사장/해수부/여수청 보고 • 추가 발생 현황 파악 • 각 부서 및 관련 업·단체 대응 상황 파악 • 상황 보고서 작성 및 전파 • 일일 보고자료 작성 및 제출	**YGPA비상대책반 가동** • 사장/해수부/여수청 보고 • 추가 발생 현황 파악 • 각 부서 및 관련 업·단체 대응 상황 파악 • 상황 보고서 작성 및 전파 • 일일 보고자료 작성 및 제출 • 구내식당 외부 출입자 건강상태 점검	• 협조 및 피해사례 등에 대한 지원·보상 • 감염병 위기대응 조치에 대한 종합 평가 – 피해 사례 및 규모 파악 – 대응 및 협조체계 평가 – 위기수준 및 단계별 조치사항 평가 등 • 평가 결과에 따른 대응체계 보완 – 대응체계, 매뉴얼 등 수정·보완
대응부서 – 소관부서	**상황 모니터링** • 국내외 발생 상황 모니터링 - 신종감염병/국내감염병 발생 시 원인·규모 파악 및 확산가능성 예측 • 감염병 대응 체계 정비·점검 • 위기징후 모니터링 **상황 전파** • YGPA 각 부서 및 관련 업·단체 전파 • YGPA 비상대책반 가동 준비	**상황 접수** • 초기상황 파악 - 질병관리청 및 해양수산부 전파사항 파악 - 감염원인 역학조사, 현장조치 등 감염병 발생 현황 파악 **상황 전파** • YGPA 각 부서 및 관련 업·단체 전파 • YGPA 비상대책반 가동 준비 **물품 관리** • 방역용품 현황 파악 및 구입	• 감염병 대응현황 사장 보고 • YGPA 비상대책반 가동 및 운영 - 총괄통제부, 운영대책부, 지원부, 여수지사(각 1명) - 비상근무인원 관리(ERP 등록) • 행정안전부, 질병관리청, 해양수산부 등 지시사항 전파 및 이행사항 확인 • 항만근로자, 안전취약계층 대상 방역용품 배포 • 각 부서별 대응 현황 파악	• 감염병 대응현황 사장 보고 • 상황실 정보 인수 및 추가 상황 파악 • YGPA 비상대책반 운영 강화 - 각 실무부별 2명+α 구성 - 유관기관 상호협력, 조정 체계 강화 지속 - 비상근무인원 관리(ERP 등록) • 행정안전부, 질병관리청, 해양수산부 등 지시사항 전파 및 이행사항 확인 • 주요 중요인사 방문에 따른 대외 보고자료 작성	
운영본부	• 각 부서 소관 업·단체 연락체계 유지 및 대응요령 홍보	• 각 부서 소관 업·단체 연락체계 유지 및 대응요령 홍보 • 다중이용시설 내 대응요령 적극 홍보	• 각 부서 소관 업·단체 연락체계 유지 및 대응요령 홍보 • 비상대책반 및 소관부서 전파사항 이행 • 재택 및 분산근무 실시에 따른 부서별 인원 구성 준비(3조)/외부망 운영 준비(마케팅부) • 여객터미널, 본사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자 개인위생 확인 및 열감지 카메라 운영/방역실시 • 외국선박 및 선원에 대한 모니터링 자료 제출→ YGPA비상대책반 제출 • (필요시) 개인별 건강상태 점검(2회/1일)	• 각 부서 소관 업·단체 연락체계 유지 및 대응요령 홍보 • 비상대책반 및 소관부서 전파사항 이행 • 재택 또는 분산근무 실시 및 지원 • 여객터미널, 본사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자 개인위생 확인 및 열감지 카메라 운영/방역실시 • 외국선박 및 선원에 대한 모니터링 자료 제출→ YGPA비상대책반 제출 • 개인별 건강상태 점검(2회/1일) • 해운항만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수립 및 시행	• (여수광양항 환자 발생시)재발방지 대책 수립
경영본부	• 각 부서 소관 업·단체 연락체계 유지 및 대응요령 홍보	• 각 부서 소관 업·단체 연락체계 유지 및 대응요령 홍보	• 재택근무 실시에 따른 공사 직원 근태관리 및 일일 보고 자료 등 준비 • (필요시) 공사직원 개인별 건강상태 점검 총괄(경영지원부)	• 재택 또는 분산근무 실시 및 지원 • 개인별 건강상태 점검(2회/1일) • 공사직원 개인별 건강상태 점검 총괄(경영지원부) • 해운항만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수립 및 시행	• 감염병 발생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홍보팀	•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 언론 모니터링 및 오보 대응	•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 언론 모니터링 및 오보 대응	•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 언론 모니터링 및 오보 대응	•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 언론 모니터링 및 오보 대응	• 단계별 수습상황 브리핑 • 보도자료 배포 • 언론 모니터링 및 오보 대응
협업기관	**질병관리청** • 감염병위기대응국(상황총괄단) : 방역 기획·총괄 및 대응관리, 해외입국자 관리 및 검역, 방역물자 관리 등 • 위기대응분석국(역학조사분석단) : 국내외 정보수집·위기분석, 역학조사 및 환자관리, 현장관리 • 감염병별 담당부서(방역지원단, 의료기관·시설관리단) : 접촉자 및 격리자 관리, 지침관리, 방역지원, 의료기관 감염관리, 격리시설 관리 등 • 감염병진단분석국(진단분석단) : 진단검사체계 총괄, 검사분석 등 •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별 담당부서(검사팀) : 진단법 확립, 진단시약 등 • 대변인(위기소통팀) : 언론소통(보도자료,브리핑, 취재지원 등),오보 및 루머 대응, 국민소통 등 • 종합상황실(상황관리팀) : 유관기관 상황전파, 1339콜센터 운영 • 행정지원단 : 조직, 인사, 예산, 물품 등 행정지원, 국제협력 등		**보건복지부** • 공공보건정책관(총괄반) : 상황 총괄 관리, 심의.자문기구 운영, 재정지원 및 손실보상 관리 등 • 보건의료정책관(자원관리반) : 의료자원 확보 및 관리, 의료인 및 의료기관 방역조치 관리 총괄 • 대변인실(홍보관리반) : 보도자료, 언론브리핑 총괄, 오보대응 등 • 비상안전기획관(대외협력반) : 대외협력 총괄, 관계부처 유관기관 협의, 파견인력 관리 • 정책기획관(행정지원반) : 행정지원 총괄, 청와대, 국무조정실, 국회 대응, 예산확보, 장차관 지시사항 관리		

Ⅳ YGPA 감염병 대응 주요 협업기능

기 능	① 재난상황 관리	⑥ 재난자원 지원	⑧ 의료 및 방역 서비스
주관 부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위기분석담당관, 위기대응총괄과 및 감염병별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질병관리청 위기대응역량개발담당관, 의료대응지원과. 비축물자관리과, 백신수급과, 감염병진단검사관리총괄과, 기획재정담당관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보건의료정책관, 질병관리청 위기대응총괄과, 예방접종관리과 및 감염병별 담당부서
(연계 부처)	(행정안전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식약처, 행정안전부 등)	(행정안전부, 식약처,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주요 업무	< 평시 > · 감염병별 대책반 운영 · 감염병 대응 계획 수립 및 범정부 대응체계 정비 ·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수립 · 관리 · 감염병 발생 동향 모니터링 및 위기징후 감시 · 국가방역인프라 (인력,시설, 장비) 구축 및 점검 · 비상연락체계 구축 < 재난 발생 시 > · 위기평가회의 운영 및 위기경보 발령, 상황 전파 · 재난상황 초기 대응 및 상황 전파·보고 · 1339 콜센터 대응가이드 점검 및 민원 상담 강화 ·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 필요시 관계부처 공무원 파견 요청 · 필요시 중앙수습지원단 파견 요청 · 필요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요청	· 격리 병상, 지정 의료기관 등의 시설 확보 · 역학조사관, 민간전문가 등 필요 인력 확보 · 진단키트, 치료제 및 백신 등 확보 · 필요 예산 확보 및 지원 · 필요시 감염환자 및 자가격리자 소재 파악 및 관리 등 행정 지원	· 국가 감염병대응 인프라 가동 · 역학조사 실시 및 현장 조치 강화 · 감염환자 및 격리대상자 조치 · 자가격리대상자 관리 · 감염병 환자 이송체계 가동 · 외래 및 입원진료체계 강화 · 실험실 진단체계 강화 · 감염환자 발견을 위한 감시체계 운영 · 국가예방접종사업 운영

기 능	⑨ 재난현장 환경정비	⑪ 사회질서 유지	⑬ 재난수습 홍보
주관 부서	질병관리청 위기대응총괄과 및 감염병별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보건의료정책관, 질병관리청 위기대응총괄과 및 감염병별 담당부서	질병관리청 대변인
(연계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국방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교육부, 국방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부, 법무부, 해양수산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업무	· 감염병 발생 환경 소독 · 제독 ·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종식을 위한 가축방역활동 · 야생동물 서식지 및 주변지역 출입 통제	· 환자격리 및 출입통제 등 지원으로 사회 질서유지 · 해상질서유지	· 언론보도 및 브리핑 기획 · 보도자료 검토·배포, 취재지원, 오보대응, 현장소통 지원 · 위기소통 콘텐츠 관리·배포, 정부·민간 기관 소통 협조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및 SNS 등 디지털 직접소통 · 언론, 온라인 여론 모니터링 · 학교·학원, 직장·사업장, 수용·보호시설, 해외여행객, 재외국민, 다중이용 교통시설 종사자, 군 인력·병역의무자 등에 대한 감염병 예방·관리 홍보 · 지역사회 감염병 소통담당관 교육·훈련 및 소통체계 구축

V 감염병 대응 관계기관 주요 임무

부 처	주 요 임 무			
	[관심] 질환별 대책반 운영 단계	[주의]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단계	[경계]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단계	[심각] 범정부적 총력 대응 단계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청	· 감염병별 대책반 운영 · 위기징후 모니터링 및 평가 · 역학조사 등 현장 방역 조치 · 24시간 종합상황실 운영 지속 · 국가방역인프라 점검 · 대응지침 보완 및 필요인력 교육·훈련 · 대국민 교육·홍보 및 위기소통	·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 질병관리청) 운영 · 위기징후 모니터링 및 평가 지속 · 역학조사 등 현장 방역 조치 지속 · 24시간종합상황실 운영 지속 · 국가방역인프라 가동 (시설, 장비, 인력) · 유관기관 상호협력, 조정 체계 운영 · 대국민 교육·홍보 및 위기소통 강화	·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 위기징후 모니터링 및 평가 강화 · 역학조사 등 현장 방역 조치 강화 · 24시간 종합상황실 운영 강화 · 국가방역인프라 가동 강화 ·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운영 · 대국민 교육·홍보 및 위기소통 강화	·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강화 · 위기징후 모니터링 및 평가 강화 · 역학조사 등 현장 방역 조치 강화 · 24시간 종합상황실 운영 강화 · 국가 모든 가용자원 파악 및 동원 ·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운영강화 지속 · 대국민 홍보강화 및 위기소통 강화
국가안보실	· 재난분야 위기 초기 상황 파악, 보고 및 전파 · 재난상황 총괄 조정 및 초기 대응반 구성	· 재난분야 위기 상황 파악, 보고 및 전파 · 재난상황 총괄 조정 및 대응반 운영	· 재난분야 위기 상황 파악, 보고 및 전파 · 재난상황 총괄 조정 및 대응반 운영	· 재난분야 위기 상황 파악, 보고 및 전파, 상황 점검 · 재난상황 총괄 조정 및 후속 대응반 운영
대통령비서실	· 재난상황 초기 상황 파악, 대응	· 재난상황 파악, 대응	· 재난상황 파악, 대응	· 재난상황 파악, 및 후속 대응·복구
국무조정실	· 동향 모니터링, 정부대처방향 검토	· 중앙행정기관 간 재난 대응 업무 협의 · 조정	· 중앙행정기관 간 재난 대응 업무 협의 · 조정	· 중앙행정기관 간 재난 대응 업무 협의 · 조정
행정안전부	· 지역별 동향파악 및 분석 · 보고 · 전파	· 지역별 동향파악 및 분석 · 보고 · 전파 · 주관기관 요청시 중앙·지자체 합동 점검 회의 개최 · 내국인 확진자·접촉자 등 인적정보 제공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준비 · 주관기관 요청시 중앙·지자체 합동 점검 회의 개최 · 내국인 확진자·접촉자 등 인적정보 제공	· (필요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 주관기관 요청시 중앙수습지원단 파견 조치(중대본부장) · 주관기관 요청시 중앙·지자체 합동 점검 회의 개최 · 지방자치단체에 현장상황관리관 파견 · 내국인 확진자접촉자 등 인적정보 제공
소방청	· 24시간 소방상황실 지속 운영, 상황 전파,보고체계 가동 · 감염병 환자 등 이송체계 구축(감염병 119 전담구급대 등), 필요시 이송	· 감염병 환자 등 이송체계 운영(감염병 119 전담구급대 등) · 감염병 환자 등 이송, 검체 수송 · 방역 지원 및 관련 정보 상황 전파	· 감염병 환자 등 이송체계 운영(감염병 119 전담구급대 등) · 감염병 환자 등 이송, 검체 수송 · 방역 지원 및 관련 정보 상황 전파	· 감염병 환자 등 이송체계 운영(감염병 119 전담구급대 등) · 감염병 환자 등 이송, 검체 수송 · 방역 지원 및 관련 정보 상황 전파
해양경찰청	· 해수면과 연육로로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에서의 감염병 증상자 이송지원 점검 · 해상을 통한 감염병 유입 예방·차단을 위한 유관기관 업무협조체계 점검	· 해수면과 연육로로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에서의 감염병 증상자 이송지원 · 해상을 통한 감염병 유입 예방·차단을 위한 치안활동 강화	· 해수면과 연육로로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에서의 감염병 증상자 이송지원 · 해상을 통한 감염병 유입 예방·차단을 위한 치안활동 강화	· 해수면과 연육로로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에서의 감염병 증상자 이송지원 · 해상을 통한 감염병 유입 예방·차단을 위한 치안활동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 국내·외 가축질병 발생 동향 감시·예찰 · 검역·검사 활동 등	· 국내·외 가축질병 발생동향 감시·예찰 강화 · 검역·검사 활동 등 · 필요시 가축방역협의회 통해 위험 수준 평가	· 가축방역활동 강화 지속 · 필요시 검역 인력 및 기술 지원	· 가축방역활동 강화 지속 · 필요시 검역 인력 및 기술 지원
환경부	· 주요 감염 야생동물 서식지 출입 통제 및 예찰활동 · 필요시 감염가능성 높은 야생동물의 이동경로·개체군 조사, 역학조사 등 실시	· 감염가능성 높은 야생동물의 이동경로와 개체군 조사 · 감염 가능성 높은 야생동물의 정밀검사 및 역학조사 · 주요 감염 야생동물 서식지 출입 통제 및 예찰활동 강화 · 환자·접촉자 폐기물 처리 관리	· 감염 가능성 높은 야생동물 서식지 및 주변지역 출입 통제 · 필요시 야생동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 · 환자·접촉자 폐기물 처리 관리	· 감염 야생동물 이동 경로·확산속도 검토를 통한 야생동물 집단 서식지 출입통제, 포획 등 대응 관리 · 필요시 야생동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 · 환자·접촉자 폐기물 처리 관리
외교부	· 해외 감염병 정보 신속 입수 및 전파 · 재외국민 대상 감염병 예방 홍보 및 교육	· 해외 감염병 정보 신속 입수 및 전파 · 재외국민 대상 감염병 예방 홍보 및 교육 · 해외 현지 조사 필요시 해당국 협조 요청	· 해외 감염병 정보 신속 입수 및 전파 · 감염병 발생국가의 재외국민 대상 감염병 예방 교육 및 영사조력 제공 · 해외 현지 조사 필요시 해당국 협조 요청	· 해외 감염병 정보 신속 입수 및 전파 · 감염병 발생국가의 재외국민 대상 감염병 예방 교육 및 영사조력 제공 · 해외 현지 조사 필요시 해당국 협조 요청
국방부	· 군 인력에 대한 예방조치시행	· 군 인력에 대한 예방조치시행 · 군 인력 및 시설지원 준비태세 점검	· 군 인력 지원 및 군병원 활용 협조 · 군 인력 감염병 예방관리	· 군 인력 지원 및 군병원 활용 협조 · 군 인력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부	· 학교 및 학원 등 감염병예방관리	· 학교 및 학원 등 감염병예방관리	· 학교 및 학원 등 감염병 예방관리 · 학교 휴교·휴업 및 학원 휴원 검토(휴교 결정시 맞벌이 부부 보육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계대책 마련)	· 학교 및 학원 등 감염병예방관리 · 학교 휴교·휴업 및 학원 휴원 검토(휴교 결정시 맞벌이 부부 보육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계대책 마련)
법무부	· 교도소 등 수용·보호시설 감염병 예방·관리	· 내·외국인 출입국기록 제공 등 지원 · 교도소 등 수용·보호시설 감염병 예방·관리	· 내·외국인 출입국기록 제공 등 지원 · 출입국관리 강화 대책 시행 · 교도소 등 수용·보호시설 감염병 예방·관리	· 내·외국인 출입국기록 제공 등 지원 · 출입국관리 강화 대책 시행 · 교도소 등 수용·보호시설 감염병 예방·관리
국토교통부	· 항공, 철도, 버스 등 종사자 및 승객에 대한 예방관리	· 항공, 철도, 버스 등 종사자 및 승객에 대한 예방관리 · 다중이용 교통시설 종사자 및 승객 방역 활동 · 다중이용 교통시설 승객 관련 접촉자 조사 협조	· 필요시 항공기 감편 내지 운항 조정 등 · 다중이용 교통시설 종사자 및 승객 방역 활동 · 다중이용 교통시설 승객 관련 접촉자 조사 협조	· 필요시 항공기 감편 내지 운항 조정·제한 · 다중이용 교통시설 종사자 및 승객 방역 활동 · 다중이용 교통시설 승객 관련 접촉자 조사 협조
해양수산부	· 항만 출입통제 · 항만시설·선박관리	· 항만 출입통제 및 항만시설·선박 관리 강화, 방역 지원 · 항만·여객터미널 근로자, 이용자 등에 대한 검역 지원	· 여객선 등 운항일정 조정 지원 · 항만·여객터미널 출입통제 및 방역 지원 · 항만·여객터미널 근로자, 이용자 등에 대한 검역 지원	· 여객선 등 운항일정 조정 지원 · 항만·여객터미널 출입통제 및 방역 지원 · 항만·여객터미널 근로자, 이용자 등에 대한 검역 지원
고용노동부	· 사업장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수립	· 사업장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수립 및 산업보건유관단체와 관련 정보 공유	· 사업장 감염병 예방관리 및 홍보	· 사업장 감염병 예방관리 및 홍보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 기업 업무연속성계획(BCP) 가이드라인 배포	· 기업 업무연속성계획(BCP) 가이드라인 배포	· 기업 업무연속성계획(BCP) 가이드라인 배포 및 가동준비 지시	· 기업 업무연속성계획(BCP) 가이드라인 배포 및 가동 지시

부 처	주 요 임 무			
	[관심] 질환별 대책반 운영 단계	[주의]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단계	[경계]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단계	[심각] 범정부적 총력 대응 단계
문화체육관광부	· 해외 여행객 감염병 예방 홍보	· 발생감염병 정보제공 및 주의사항 홍보	· 발생감염병 정보제공 및 주의사항 홍보	· 발생감염병 정보제공 및 주의사항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	· 감염병 유발 의심 (수입)식품 검사	· 감염병 치료제 등 신속 허가·검정 방안 검토 · 감염병 유발 의심 (수입)식품 검사	· 감염병 치료제 등 신속 허가·검정	· 감염병 치료제 등 지속 생산 독려 · 감염병 치료제 등 신속 허가·검정
경찰청	· 필요시 인력지원 및 정보 제공 협조	· 국가필수시설(비축물자 보관관리 시설 등) 경비 지원 · 환자격리 및 출입통제 등 지원으로 사회 질서유지 · 가용 범위 내 인력지원 · 환자, 접촉자 등 추적 관리 대상자 위치정보 제공	· 국가필수시설(비축물자 보관·관리 시설 등) 경비 · 환자격리 및 출입통제 등 사회 질서유지 · 인력지원 및 예방관리 · 환자, 접촉자 등 추적 관리 대상자 위치정보 제공	· 국가필수시설(비축물자 보관·관리 시설 등) 경비 · 환자격리 및 출입통제 등 사회 질서유지 · 인력지원 및 예방관리 · 환자, 접촉자 등 추적 관리 대상자 위치정보 제공
병무청	· 병역의무자에 감염병 예방관리 및 홍보·교육	· 병역의무자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및 홍보·교육	· 병역의무자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및 홍보·교육 · 필요시 검사, 교육, 훈련 등 일부 중지 검토	· 병역의무자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및 홍보·교육 · 필요시 검사, 교육, 훈련 등 전면 중지 검토
지자체	· 지역 감염병 대응 조직 및 인프라 정비	· 지역 방역 인프라 가동(역학조사, 현장방역, 환자 이송, 격리자 관리, 접촉자 파악 지원, 주민대상교육 등)	· 지역 방역 인프라 가동 강화 (역학조사, 현장방역, 환자 이송, 격리자 관리, 접촉자 파악 지원, 주민대상교육 등)	· 지역 모든 방역 인프라 파악 및 동원 등

Ⅵ 비상연락망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주관기관(부서)	직 위	연 락 처
공공보건정책관	국장	044-202-2500
질병정책과	과장	044-202-2510
질병정책과	사무관	044-202-2508
질병정책과	주무관	044-202-2507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대응국	국장	043-719-9000
질병관리청 위기대응총괄과	과장	043-719-9050
질병관리청 위기대응총괄과	사무관(연구관)	043-719-9081
질병관리청 위기대응총괄과	주무관	043-719-9082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043-719-7789, 7790

□ 감염병 대응 기관 비상연락망

기 관 명	관련 부서	연 락 처	
		전 화	Fax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02-770-4380～4385	02-770-4887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실	02-770-7764	02-770-4740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	044-200-2293 044-200-2294	044-200-2318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감염병재난대응과	044-205-1541 044-205-6150,6156, 6129,6151,6155	044-205-8890 044-205-8947
소방청	119구급과	044-205-7633	044-205-8711
해양경찰청	외사과	032-835-2468	032-835-2968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044-201-2522	044-868-0469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044-201-7250	044-201-7261
외교부	재외국민안전과 해외안전지킴센터	02-2100-8204 02-2100-8566	02-2100-7995 02-2100-7966
국방부	보건정책과	02-748-6656	02-748-6659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044-203-6098	044-203-6438
법무부	비상안전기획관	02-2110-3012	02-2110-0315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	044-201-3793	044-201-5579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	044-200-5855	044-200-5869
	항만운영과	044-200-5780	044-200-5789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044-202-7744	044-202-8093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	044-203-4222	044-203-4722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043-719-1723	043-719-1640
경찰청	위기관리센터	02-3150-1641	02-3150-2661
병무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운영지원과	042-481-2662 042-481-2871	042-481-2670 042-481-2860

□ 지방자치단체

시도명	담당 부서	연락처
서울특별시	질병관리과	02)2133-7692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051-888-3354
대구광역시	보건건강과	053)803-6281
인천광역시	보건정책과	032)440-2787
광주광역시	건강정책과	062)613-3361
대전광역시	위생안전과	042)270-4852
울산광역시	시민건강과	052)229-3562
경기도	감염병관리과	031)8008-5430
강원도	보건정책과	033)249-2434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043)220-3143
충청남도	보건정책과	041)635-2643
전라북도	보건의료과	063)280-4692
전라남도	건강증진과	061)286-6041
경상북도	보건정책과	054)880-3788
경상남도	보건행정과	055)211-4923
제주특별자치도	보건건강위생과	064)710-2937,2938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정책과	044)300-5723

□ 질병관리청 소속·산하기관 및 단체

기관명	연락처
국립인천공항검역소	032)740-2706
국립부산검역소	051)602-0620
국립인천검역소	032)883-7502
국립군산검역소	063)445-4239
국립목포검역소	061)244-0951
국립여수검역소	061)665-2367
국립마산검역소	055)981-5322
국립김해검역소	051)973-6525
국립통영검역소	055)645-3579
국립울산검역소	052)255-4504
국립포항검역소	054)246-8545
국립동해검역소	033)535-6022
국립제주검역소	064)728-5500
대한의사협회	02)6350-6537
대한병원협회	02)705-9200
대한간호협회	02)2260-2511
한국방역협회	02)467-7630

□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기관명	주야	부서	전화	팩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주간	선원해사안전과	051-609-6311	051-609-6319
	야간(공휴일)	당 직 실	051-609-6230	051-609-6819
제주해양수산관리단	주간	선원해사안전팀	064-720-2648	064-720-2602
	야간(공휴일)	당 직 실	064-720-2610	064-720-2613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주간	항 만 물 류 과	032-880-6482	032-884-3563
	야간(공휴일)	당 직 실	032-880-6222	032-882-4642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주간	선원해사안전과	061-650-6049	061-654-2456
	야간(공휴일)	당 직 실	061-650-6026	061-653-4434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주간	선원해사안전과	055-981-5102	055-242-1260
	야간(공휴일)	당 직 실	055-981-5050	055-246-8459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주간	항 만 물 류 과	052-228-5611	052-228-5569
	야간(공휴일)	당 직 실	052-228-5504	052-228-5712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주간	선원해사안전과	033-520-6143~4	033-520-6140
	야간(공휴일)	당 직 실	033-520-6200	033-520-6209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주간	선원해사안전과	063-441-2248	063-441-2352
	야간(공휴일)	당 직 실	063-441-2208	063-441-2358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주간	선원해사안전과	061-280-1641	061-280-1616
	야간(공휴일)	당 직 실	061-280-1701	061-280-1703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주간	항 만 물 류 과	054-245-1536	054-245-1592
	야간(공휴일)	당 직 실	054-245-1666	054-245-1623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주간	선원해사안전과	031-680-7221	031-680-7229
	야간(공휴일)	당 직 실	031-680-7290	031-680-9030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주간	선원해사안전과	041-660-7641	041-663-0347
	야간(공휴일)	당 직 실	041-660-7621	041-660-7785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주간	운 영 지 원 과	051-400-5624	051-400-5655
동 해 어 업 관 리 단	주간	운 영 지 원 과	051-410-1010	051-410-1014
서 해 어 업 관 리 단	주간	운 영 지 원 과	061-240-7912	061-240-7918
남 해 어 업 관 리 단	주간	운 영 지 원 과	064-780-2407	064-780-2420

□ 해양수산부 유관·산하기관 등

기관명		주야	전 화	팩 스
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주간	051-999-3111	051-988-8875
		야간	051-999-3114	051-988-2388
	인천항만공사	주간	032-890-8223	032-886-7991
		야간	032-890-8297	032-886-7968
	울산항만공사	주간	052-228-5437	052-228-5449
		야간	052-228-4100	052-260-5305
	여수광양항만공사	주간	061-797-4482	061-797-4494
		야간	061-797-4300	061-797-450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주간	02-2240-2323~4	02-2240-3027
		야간	02-2240-2323~4	02-2240-3027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주간	044-330-2371~5	044-330-2379
		야간	010-9914-7910	044-330-2379
한국선급		주간	070-8799-8200	070-8799-8219
		야간	010-8807-7338	070-8799-8219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주간	031-389-2131	031-389-2183
		야간	010-8504-7534	031-389-2183
해양환경공단		주간	02-3498-8600	02-3462-7707
		야간	02-3498-8600	02-3462-7707
한국해운협회		주간	02-739-1551~7	02-739-1562
		야간	010-8833-9827	02-739-1562
한국해운조합 (공제보상팀)		주간	02-6096-2112~4	02-6096-2129
		야간	02-6096-2200~1	02-6096-2129

□ 유관기관 및 업·단체 등

기관명		전 화	팩 스
국립여수검역소		061-665-2367	
광양시 보건소		061-797-4015/4010	
광양 사랑병원		061-797-7113/7119	
여수시 보건소		061-659-4247	061-659-5839
KIT 플래너실(물동량 확인)		061-798-1862	
GWCT 플래너실(물동량 확인)		061-797-0225	
전남도청 해운항만과		061-286-6810	061-286-4793
광양세관		061-797-8413	061-793-8491
한일고속 여수사업소(제주↔여수)		061-662-8002	061-662-8006
여수지역 선사 및 해운대리점	우림해운	061-691-7181	061-691-7182
	삼부해운	061-685-6991	061-685-4941
	포천마린	061-666-7611	061-666-7612
	동아해운	061-666-6900	061-666-6903
	효동항업	061-665-7968	061-666-1494
	한선해운	061-692-0611	061-692-0619
	상지해운	061-650-2713	061-650-2730
	대양해운	061-791-7737	061-791-7737
	신성해운	061-662-4452	061-662-4453
	서보해운(여)	061-686-0171	061-692-2306
	서우해운	061-660-8800	061-663-8810
	마린스트	061-662-8551	061-664-1512
	태양해운	061-666-2420	061-666-2423
	남해해상	061-643-4201	061-643-4205
	반도해운	061-651-8902	061-652-6336
	노아선박	061-665-4400	061-665-4404
	루맥스해운	061-794-8765	061-794-8768
	여수선박	061-666-0882	061-665-0881
	진양선박(여)	061-665-1094	061-664-0662
	동방선박	061-662-4106	061-662-5967
	여진해운(여)	061-662-9610	061-662-9614
	L&C 마리타임	061-655-1551	061-655-1221
	해왕해운	061-792-4477	061-792-4478
	은파해운	061-794-6776	061-794-6775
	신명해운	061-654-5343~5	061-654-5346
	태원해운	061-685-1307	061-685-1309
	선양해운	061-664-5855	061-643-8820

기관명		전 화	팩 스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주간	02-2240-2323~4	02-2240-3027
	야간	02-2240-2323~4	02-2240-3027
한국선급	주간	070-8799-8200	070-8799-8219
	야간	010-8807-7338	070-8799-8219
한국해사위험물 검사원	주간	031-389-2131	031-389-2183
	야간	010-4610-9138	031-389-2183
해양환경공단	주간	02-3498-8600	02-3462-7707
	야간	02-3498-8600	02-3462-7707
한국선주협회	주간	02-739-1551~7	02-739-1562
	야간	010-4097-0912	02-739-1562
한국해운조합 (공제보상팀)	주간	02-6096-2112~4	02-6096-2129
	야간	02-6096-2200~1	02-6096-2129

□ 부두운영사

부두명	운영(이용사)	전 화	팩 스
원료, 제품, 고철, 로로, 후판로로부두	포스코	790-6164	790-5720
하포일반부두	세방	798-7422	798-7410
컨테이너 부두	GWCT	797-0267	797-0289
	KIT	798-1791	798-1785
중흥부두	여천NCC 등 9개사	685-5250	685-5260
낙포부두	남해화학 등 4개사	685-9446	685-5257
석유화학 부두	YNCC 등 7개사	691-2961(본사) 684-5257(부두)	691-2964(본사) 684-5267(부두)
사포1부두	SYTT(주)	686-3611	686-3210
사포2부두	LG화학	680-6413	680-6504
LPG부두	(주)E1	690-9311	686-3227
석탄부두	호남화력발전처	070-5000-5163	070-5000-5419

Ⅵ. 부록

1. 사례

□ 2015, 2018 메르스 국내 유입 사례

구 분	2015년	2018년
기 간	‘15.5.20.~12.23.(217일)	‘18.9.8.~ 10.16(38일)
위기경보	주의	주의
환자 수	186명	1명
사망자 수	38명 (치명률 20.4%)	0명
격리자 수(누계)	16,693명	21명

□ 메르스(2015) 대응시 문제점 및 개선 결과

개편 前		개편 後
· 감염병 정보 수집·분석 미흡 · 감염병 국제 네트워크 미흡	1 유입 차단 및 초기 대응	· **위기분석국제협력** 전담부서 신설 · 해외 감염병 **발생동향 파악** 및 **정보공유** · **WPRO 고용휴직직위** 신설 및 **역학조사관** 파견
· 오염국가 구분없는 문자서비스 · 다수에 대한 집단검역 · 입국 검역 시 본인진술 외의 정보파악 곤란 · 인천공항검역소에 비음압격리관찰실(21개)		· 오염지역별 **맞춤형 감염병 문자서비스** 제공 · 위험국가 입국자 **1:1 전수 게이트검역** · 위험국가 방문자를 입국 후 잠복기까지 관리하는 **스마트 검역시스템** 구축 · 인천공항검역소에 **음압격리관찰실** 확충(50개) 및 **BL3 검사실** 설치
· 공중보건의 위주의 역학조사관 · 상황 발생 후 대책본부 구성 · 현장초동조치 시스템 미흡		· **정규직 역학조사관** 확보(중앙 30명, 지자체 34명) · **방역직류** 신설 · 24시간 365일 **긴급상황실** 운영 · 현장을 즉시 통제하는 **즉각대응팀** 구성

개편 前		개편 後
·진단검사 지연(NIH 1개 기관) ·감염병 접촉자 격리시설 부재 ·개별 시스템 운영으로 분절적 대응 ·음압병상 부족 ·감염병 전문치료기관 부족 ·위기 발생 후 산발적인 자원 비축	2 유행 확산 시 총력 동원	·**진단검사 신속**시행(1일 이내, 18개 기관) ·표준화된 **진단검사 통합지침** 배포 ·**진단·치료제 긴급도입** 제도화 ·시도별 **접촉자 격리시설** 지정 ·감염병별 감시·역학조사·환자관리 등 **통합 지원정보시스템** 구축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 확충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법적 근거 마련 ·**국가비축물자 관리계획** 수립 ·감염병 환자 **검체자원화**를 통한 연구기반 마련
·감염병 위기 시 중앙-지방 간 역할 불명확에 따른 혼선 ·병원명 공개 지연으로 국민 불신	3 거버넌스 개편	·질본 **차관급** 격상 및 **조직·인력 확충** ·질본이 **방역 컨트롤타워** 역할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및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 ·**지자체 감염병 대응 조직·인력** 확충(시도 16명, 보환연 67명, 보건소 283명) ·**위기소통 전담부서** 신설 ·감염병 확산 시 **정보공개** 법령 마련
·과밀한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대규모 감염 발생 ·6인실 위주 입원실 ·가족·사적간병 문화 ·병원감염관리 인프라 미흡 ·병원쇼핑, 병문안 등 문화적 특성이 감염 확산	4 병원 감염 방지 의료 환경 개선	·**응급실** 감염병 환자 **선별진료** 및 **격리병상** 확충 ·응급실 보호자·방문객 **출입통제** 및 명부관리 ·**24시간 초과** 응급실 **체류제한** ·**4인실** 위주 입원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감염관리실** 설치병원 확대 및 인력요건 강화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신설 ·**인증평가**에 감염관리영역 강화 ·감염방지 **1회용 치료재료** 별도 보상 ·**병문안 권고문** 마련 ·상급병원 지정 시 **의뢰·회송체계 및 병문안 개선체계 의무화**

2. 재난방송 관련 위기상황 전파체계

〈 기본 방향 〉

□ 위기상황 대국민 전파 지원 요청

○ 재난문자 전송시스템(CBS) 문자메시지 요청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재난상황실
※ 민방위 관련 CBS 문자메시지 송출은 민방위과로 요청

○ 재난방송 자막송출(DITS) 요청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재난상황실
- NDMS 상황전파시스템 메시지 작성화면에서 '지원 및 협조사항'에 자막방송 표준문안과 송출기준을 함께 작성하여 행정안전부로 요청

□ 재난문자 표준문안(「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별표 2)

감염병 재난	[보건복지부] 오늘 감염병 'OO'단계 발령. 손씻기, 기침예절을 지켜주시고, 'OO대응요령'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1 긴급재난문자(CBS; Cell Broadcasting Service)

□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제3항 및 제6항,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행정안전부예규)

□ **시스템 개요**

○ **(구축/운영)** '06.6~9월(2G폰), '12.9~12월(4G폰) / '06.12월

○ **(송출목적)** 휴대폰으로 전국 또는 해당지역에 있는 사용자에게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 등 신속 전파

○ **(대상단말)** CBS 기능이 탑재된 2G, '13.1.1 이후 신규출시 4G 휴대폰
※ 3G 사용자는 "안전디딤돌 앱"을 통해 수신

○ **(송출용량)** 1회 송출시 최대 60자(2G)/90자*(4G, '18.12월부터 적용)
* 국제표준에 따라, 4G는 한글·영어·공백·특수문자 모두 2Byte(총 180byte)

○ **(송출지역단위)** 시・군・구, 시・도, 전국

○ **(송출비용)** 무료(통신사와 업무협약, '04.12월)

< 발송 절차 >

※ 지진, 지진해일은 기상청에서 직접 발송(2G는 행안부 시스템 활용)

□ **주요기능**

○ 수신자 수와 관계없이 대량으로 실시간 동시에 전달

○ 이동 중에도 휴대폰만 있으면 실시간으로 재난정보 수신

□ **송출절차(중앙부처 및 재난관리책임기관)**

소관 부처 위기상황 발생 시 긴급재난문자 송출 요청	• 긴급재난문자시스템*을 활용해 행정안전부(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재난문자 송출 요청
⬇	
행정안전부(중앙재난안전상황실) 이통사에 긴급재난문자 송출 요청	• 긴급재난문자(CBS) 시스템 활용 - 이통사 기지국을 통해 2G, 4G 재난문자 송출요청 ※ 3G 및 4G('11~'12년) 휴대폰은 안전디딤돌 앱 설치·수신
⬇	
해당 기지국 수신자에 문자 전송	• 시·군·구 단위로 수신자 수에 관계없이 대량전달 - 기지국 단위로 최대 90자 문자 전송
⬇	
국민(휴대폰 가입자) 위기상황 인지 및 대응	• 실시간 동시전달, 휴대폰 재난정보 수신

* 행정안전부 긴급재난문자 시스템(외부망, 인터넷망) : https://cbis.safekorea.go.kr

□ 송출절차(시 · 도 및 시 · 군 · 구)

시 · 도 및 시 · 군 · 구	
위기상황 발생 시 긴급재난문자 송출 요청	• 재난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시 · 도(재난상황실)에 재난문자 송출 요청
⬇	
시 · 도(재난상황실)	
이통사에 긴급재난문자 송출 요청	• 재난관리시스템시스템 활용 - 이통사 기지국을 통해 2G, 4G 재난문자 송출요청 ※ 3G 및 4G('11~'12년) 휴대폰은 안전디딤돌 앱 설치·수신
⬇	
해당 기지국	
수신자에 문자 전송	• 시·군·구 단위로 수신자 수에 관계없이 대량전달 - 기지국 단위로 최대 90자 문자 전송
⬇	
국민(휴대폰 가입자)	
위기상황 인지 및 대응	• 실시간 동시전달, 휴대폰 재난정보 수신

* 재난관리시스템(업무망) : https://www.ndms.go.kr

2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EDBS; Emergency Disaster Broadcasting System)

□ 개 요

○ 재난방송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송을 말함.

※ 방송사업자 (「방송법」 제2조제3호) 현황: 164개 ('19.12월 기준)

지상파	지상파DMB	종편·보도PP	SO	위성	IPTV
44	18	6	92	1	3

* 라디오PP/데이터PP는 제외, SO/위성/IPTV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시스템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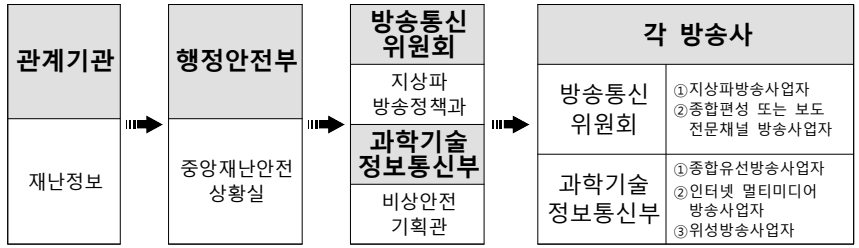

□ 주요기능

○ 재난방송 요청 시,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거쳐 방송사로 자동전파

- 전국 또는 해당지역 방송사에 선택적 재난방송 표출 요청 가능

□ 표출절차

통보 기관	회의 등을 통해 결정
• 기상 및 홍수 특보 • 위기경보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주관 기관 등 참여

⬇

행정안전부(중앙재난안전상황실)

실시 기준에 적합한지 검토 (재난방송 요청)

⬇

방통위 또는 과기정통부

방송사에 재난방송 요청

⬇

각 방송사

재난정보 및 국민행동요령 송출

⬇

국민

재난정보 인지 및 대응

- **공문, NDMS 상황전파시스템 활용**
  - 기상특보, 홍수특보, 위기경보, 결정사항 통보
- **실시 기준에 적합한지 검토**
  - 방통위 및 과기정통부에 재난방송 요청
-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EDBS) 활용**
  - 연계되어 있는 방송사에 재난방송 요청
- 통보받은 재난정보 및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재난방송(TV자막방송)

□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 실시 기준

명 칭		자율	의무	통보기관	재난방송 요청기관	비고
태 풍	주의보		○	기상청	행안부	
	경 보		○			
호 우	주의보	○				
	경 보		○			
홍 수	주의보		○	홍수통제소		
	경 보		○			
대 설	주의보	○		기상청		
	경 보		○			
폭풍해일	주의보	○				
	경 보		○			
지진해일	주의보		○		기상청	
	경 보		○			
지 진	조기경보		○			*규모 (내륙/해역) 5.0 이상
	속 보		○			*규모 (내륙) 3.5 이상 ~ 5.0 미만 (해역) 4.0 이상 ~ 5.0 미만
	정 보		○			구분(규모) / 남한 / 북한 내륙 / 3.0 이상 / 5.0 이상 해역 / 3.5 이상 / 5.0 이상
	정보(재통보)	○				
화산재	주의보	○				
	경 보	○				
한 파	주의보	○			행안부	
	경 보		○			
강 풍	주의보	○				
	경 보		○			
풍 랑	주의보	○				
	경 보		○			
건 조	주의보	○				
	경 보		○			
폭염	주의보	○				
	경 보		○			
자연우주물체 추락·충돌	관심, 주의	○		과기정통부		
	경계, 심각		○			
통신재난	관심, 주의	○				
	경계, 심각		○			
원자력안전사고	심각 (청색,적색)		○	원안위		
산 불	경계~		○	산림청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경계~		○	환경부		
대규모 수질오염	경계~		○			
대규모 해양오염	경계~		○	해수부		
댐붕괴	주의~		○	(환경부/산업부)		
지하철 대형사고	경계~		○	국토부		
고속철도 대형사고	경계~		○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심각		○	소방청		
해양선박사고	경계~		○	해수부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주의~		○	고용부		
다중밀집 건축물 붕괴	경계~		○	국토부		
해양유도선 수난사고	경계~		○	해양경찰청		
미세먼지 / 비상저감조치(관심)			○	환경부		
기타 재난			○*	해당부처		
민방위경보			○	공군		

*** 기타 재난 (또는 위기발령 이전)의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 행안부 등이 참여하는 회의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난방송 요청 가능**

3 민방위경보시스템 재난경보

□ 목 적

○ 민방공 사태 및 재난상황 발생 시 민방위 경보 발령 전달체계에 따라 국민에게 신속한 경보 전파(민방위기본법 제33조)

□ 주요기능

○ 중앙과 17개 시·도 경보통제소에서 전국 경보단말(사이렌 2,220대) 울림

○ 8개 중앙방송사 및 18개 정부주요기관 연결장비를 활용한 상황 전파

○ CBS(재난문자), DMB(지상파방송), TV자막 시스템과 연계 알림

※ 재난경보(재난경계, 재난위험)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보단말만 이용하여 경보방송 및 사이렌 취명 실시

□ 민방위경보 종류

○ 민방공경보 : 경계경보, 공습경보, 화생방경보, 경보해제

○ 재난경보 : 재난경계경보, 재난위험경보, 재난경보해제

□ 전달체계도

소관 기관
위기상황 발생 시 상황판단회의(자체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재난경보 발령 검토

•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경보 발령

※ 재난경보: 재난경계, 재난위험, 재난경보 해제

- 전국단위 재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지역단위 재난: 시·도지사(2개 시·군 이상)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중앙 및 시·도 민방위경보통제소
재난경보 발령 요청 및 경보 전파 실시 ※ 요청내용: 경보 발령사유, 경보의 종류, 울림일시, 울림지역, 경보요청자

• 행정안전부장관 →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제1민방위경보통제소

- 행정안전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이 경보통제소에 화상전화로 경보 발령 지시

※ 제1경보통제소 부재시 제2경보통제소 요청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민방위경보통제소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권한을 위임 받은 자)이 전용전화로 요청, 부득이한 경우 FAX 사용

※ 시·도민방위경보통제소 장애 시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로 요청

⬇

지자체 민방위경보 단말
음성방송 및 사이렌 울림

• 경보종류에 따라 음성방송 및 사이렌 울림

- 재난경계경보: 음성방송
- 재난위험경보: 음성방송+사이렌

4 국가재난관리(NDMS) 상황전파시스템

□ 상황전파시스템 개념

○ 중앙부처와 지자체, 유관기관 간 재난상황의 실시간 전파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사회재난 자연재난 등 모든 재난발생 상황 전파에 유용한 시스템

□ 상황전파시스템 구축현황

○ 재난상황 정보와 대응 지시 등을 메신저 기반으로 실시간 전파

※ 상황 전파 범위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산하기관

('18. 10월말 기준)

구분	합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정부산하기관
기관수	**385**	36	245	17	87
사용자수	**16,157**	1,522	11,403	2,354	878

□ 시스템 개념도

□ 메시지 작성 화면

※ 경로 : 재난관리업무포털(www.ndms.go.kr)-GIS상황관리-상황관리-상황보고전파관리-상황전파메시지 작성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업무포털[https://www.ndms.go.kr, 외부망(인터넷망)], 문의(044-205-8462)

3. 국가위기관리 영상회의 시스템

□ 개 요

○ **(목적)** 청와대,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주관기관, 중앙부처, 긴급구조기관(소방 · 해경), 지방자치단체 등과 상황 공유, 범정부적 신속 대응

○ **(연결기관)** 국가지도통신망을 통해 279개 기관과 연결

구분	연결기관(279개 기관)
중앙 (27)	·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원자력안전위원회 · 18부 · 6청(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질병관리청)
지자체 (245)	·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 * 시·군·구는 시·도를 통해 연계
재난관리 책임기관 (7)	· 한국철도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화학물질안전원

□ 영상회의 운영

※ 운영사례: 태풍 "솔릭" 대처 긴급점검회의(VIP주재, '18.8.23.) 등

○ **(대상회의)** 초기상황판단회의, 상황판단회의, 중앙재난대책본부회의, 중앙수습대책본부회의 등

○ **(참여기관)**

상황 초기단계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단계

* 재난의 규모 및 대응단계 등에 따라 영상회의 참여기관은 변동 가능

○ **(참 석 자)** 회의 참석대상 및 위기상황 등에 따라 판단

※ 예: 대통령 회의 주재 시 각 부처 장관 및 시·도지사 참석 등

○ **(회의내용)** 재난의 규모에 따른 조치방향 및 재난관리 단계별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점검하고 효율적 재난대응을 위한 총괄· 조정

- (대비태세) 중앙· 현장(지역) 지휘· 보고체계 구축, 재난 대비 실무매뉴얼 등 대응계획 점검, 재난상황 대응체계 강화 및 긴급 전파체계 유지
- (협력· 지원체계) 관계기관 재난상황 전파·공유 등 협력체제 가동, 사고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및 민간 구조세력 현황점검 및 동원체제 구축
- (대응조치) 재난수습에 필요한 구조· 지원 세력 지휘,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등 사고대응 총괄지휘 체제 구축

□ 운영 절차

소관 부처

영상회의 연계 요청

• 회의계획 수립(참여기관 선정) 및 영상회의연계 요청

⬇

행정안전부(중앙재난안전상황실)

영상회의 연계 및 운영

•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유선 연락*하여 영상회의 연계 및 운영 요청
  *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자연재난팀원(044-205-1543)

⬇

참여기관 영상회의

상황 공유 및 논의

• 재난발생현황, 대비태세, 협력지원체계, 대응조치 등 점검을 통한 총괄 · 조정

4. 위기관리 소통 매뉴얼

Ⅰ. 일반사항

1. 목적

○ 이 매뉴얼은 정부가 위기[1] 시 정확하고 적절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율적 구조 활동을 지원하며, △피해자를 배려하는 한편 △빠른 복구와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작성됨

2. 기본 원칙

○ 위기관리 소통은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아래의 7가지 대응원칙을 준수해 위기 인지 단계부터 복구, 회복에 이르기까지 상호배려와 지지, 사회적·정책적 신뢰를 형성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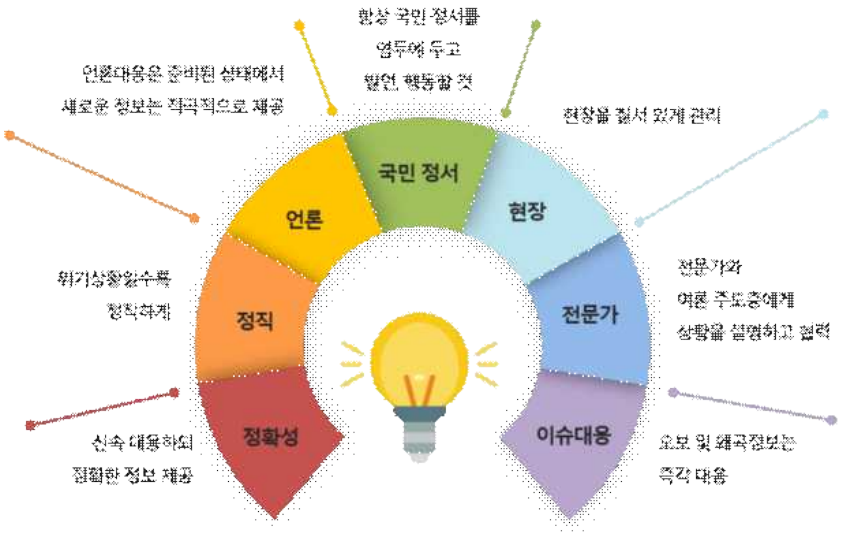

1) '위기'는 「위기관리 소통 매뉴얼」이 수록된 매뉴얼의 '재난'을 의미(예: 풍수해, 감염병 등)

3. 위기관리 소통 체계

3-1. 위기관리 소통 책임자

○ 위기관리 소통 책임자는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 정하되, 설치되는 조직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①본부장이 총리인 경우(「재난안전법」 제14조제4항) 총리가 지정하는 장관 또는 차관급 이상 공무원, ②본부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인 경우(「재난안전법」제14조제3항)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행정안전부 차관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
◎ **(중앙사고수습본부)** 수습본부장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재난안전법」 제15조의2)이 지정하는 차관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
◎ **(현장)** 각급 통제단장이 지명하는 부기관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의 공무원

※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해 1~3위를 사전에 정해두는 것이 좋음

○ 위기관리 소통 책임자는 대외적으로 해당 기관(또는 본부)의 유일한 공식 소통 창구로서, 위기와 관련된 모든 회의에 참석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파악하고 상황을 장악하며 시의 적절한 홍보를 시행해야 함

- 위기관리 소통 책임자는 공식 브리핑, 보도자료 등을 통해국민에게 위기의 상황과 정부의 대응을 발표해야 함

* (중대본·중수본) 현장 지원 및 범정부 대책 중심 브리핑
* (방대본·현장) 구조 등 수습활동에 대한 상황 중심 브리핑

○ 위기관리 소통 책임자는 위기관리 소통의 실무를 담당하는 전담 조직과 실무자를 지정할 수 있음

3-2. 위기관리 소통 전담 조직

ㅇ 상위 매뉴얼에 따라 설치되는 소통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또는 위기관리 소통 책임자가 지정하는 별도의 조직이 위기관리 소통 전담 조직이 됨

*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43조의5 제1항 제13호 '재난 수습 홍보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을 포함함

ㅇ 별도의 조직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대변인실 등 평상시 소통업무를 담당하던 조직이 위기관리 소통 전담 조직이 됨

4. 위기관리 소통 업무

ㅇ 위기관리 소통 업무는 ▲여론 분석, ▲전략 기획, ▲소통 실행으로 구성되며 다음 표로 요약할 수 있음. 구체적인 내용은 이하 Ⅱ. 업무별 세부 내용에서 후술함

여론 분석	전략 기획	소통 실행
◆ **여론 상황 분석** - 언론보도 분석 - 온라인 여론 분석 ◆ **허위·조작정보 대응** - 미확인 정보 감지 및 확인 - 허위·조작정보 대응	◆ **메시지 관리** - 핵심/상황별 메시지 ◆ **매체별 소통전략** ◆ **근거자료 확보** ◆ **협업 관계망 구축** - 관계자/전문가/이해관계자/영향력자	◆ **공식정보 제공하기** - 공식 브리핑 추진 - 보도자료 배포 - 공식 누리집/상담창구 마련 ◆ **언론 지원하기** - 내부 지원체계 구축 - 국내/해외 언론 지원 ◆ **가용매체 활용하기** ◆ **민간과 협업하기**

Ⅱ. 업무별 세부 내용

1. 여론 분석

1-1. 여론 상황 분석

□ 언론보도 분석

ㅇ **(필요성)** 위기 자체의 대응과 수습뿐 아니라, 대국민 소통계획 수립에도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해줌

ㅇ **(기본방향)** 언론 분석 전담자를 지정, 다음 사항을 주기적으로 정리하여 관련 부서에 전달

- 주요 신문(중앙일간지, 경제지 등)과 방송(지상파, 종편 등), 통신, 외신의 ▲논조, ▲제언, ▲비판을 주제별로 정리

- 정리 주기는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매일, 격일, 매주 등 정해진 시간(예: 오전 10시, 오후 5시)에 하는 것이 좋음

- 정부의 공식 브리핑은 실시간으로 면밀히 점검, 언론 반응과 함께 발표자의 태도나 표정 등 개선사항도 전달

□ 온라인 여론 분석

ㅇ **(필요성)** 여론 주도층의 의견이 주로 반영되는 언론보도와 달리, 국민의 직접적인 의견을 살펴보기 좋으며, 실시간 반응을 감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

ㅇ **(기본방향)** 온라인 분석 전담자를 지정, 다음 사항을 주기적(매일/기타)으로 정리하여 관련 부서에 전달

- 주요 포털·커뮤니티 등 주요 온라인 게시글의 내용, 전반적 분위기, 제언, 우려점 등을 유형화하여 정리. 가급적 유형별로 현재 우세한 여론을 표시하는 것이 좋음

* 정책여론 수렴시스템(big.pr.go.kr) 활용 가능

- 정리 주기는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온라인 여론은 수시로 급변하는 만큼, 주목도가 높은 시기에는 1일보다 짧은 단위(예: 일 2회, 일 3회 등)로 분석하는 것을 권장함

[참고] 상황이 장기화되거나 대책 마련에 필요한 경우, 일반 국민 또는 정책 고객, 전문가 대상 여론조사·분석도 병행

1-2. 허위·조작정보 대응

※ 허위조작정보 대응의 기본 원칙

ㅇ **(신속대응)** 오보는 또 다른 오보를 부르고, 유언비어는 교차 인용되며 급속히 확산되므로 조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함

ㅇ **(적극대응)**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면 정보 부족에서 비롯되는 오보를 예방할 수 있음. 오보 대응은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자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

* 오보 및 허위·조작정보로 인해 실질적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법적 구제 절차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사실적 주장 → 반론청구권 / 명백한 오보 → 정정보도 청구, 소송 등)

□ 미확인 정보 감지 및 확인

ㅇ 여론 상황 분석 과정에서, 진위여부가 불분명한 정보*는 별도로 분류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진위여부 파악

* 뉴스보도, 인터넷 게시글, 누리소통망(SNS) 소문 등

ㅇ 확인 결과, 단순 오보(misinformation)는 보도설명, 정정요청 수준으로 대응

□ 허위·조작정보 대응

ㅇ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는 의도적으로 오해를 야기하는 '틀린' 정보로, 쟁점의 특성*과 대응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응의 수준과 방법 결정

* 위법성이 명백한가, 내용이 복잡한가 등

** 해명의 공신력(어느 기관에서 해명하는가), 속도(언제 해명하는가) 등

ㅇ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삭제 요청, 수사 의뢰, 공식 브리핑을 통한 정정, 후속 콘텐츠 제작 등으로 대응하며, 하나의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여러 대응 수단을 병행할 수도 있음

□ 대응 시 유의사항

① 언론의 경우

ㅇ 공식 대응 전,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먼저 관련 사실을 설명하고 납득시키려는 노력 필요

ㅇ 통계 및 근거 자료를 기반으로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충분히 설명하고, 정중하되 당당하게 대응

* 면피용, 책임 회피용 해명자료는 없는 것보다 못함

ㅇ 해명자료는 다른 언론 매체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배포하여, 허위조작정보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② 온라인의 경우

ㅇ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는 확산속도가 빠르고 정정이 어려워 가능한 한 신속하게 대응 여부를 결정해야 함

ㅇ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도·설명자료를 즉시 배포하고(주로 언론에서 참고) 온라인에도 콘텐츠 게시(주로 국민들이 참고)

- 설명자료를 이해하기 쉽도록 사진, 차트, 도표, 그래픽 등 가시성이 높은 객관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고, 관계자 인터뷰 영상, 카드뉴스 등 연성 콘텐츠도 적극 활용하면 좋음

* 설명자료의 형식이나 표현은 각 온라인 매체의 특성에 맞춰 전략적으로 변형할 수 있음

2. 전략 기획

2-1. 메시지 관리

□ 핵심 메시지의 선정 [참고1]

ㅇ 국민과 언론의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 선정

ㅇ 짧고 간단한, 이해하기 쉬운 메시지를 선정하는 것이 좋으며, 이야기(스토리텔링)가 담겨 있으면 더욱 좋음

* 복문, 중문보다는 단문이 효과적이며, 중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메시지를 구성하는 것이 좋음

ㅇ 핵심 메시지의 부각을 위해 시각 정보와 청각 정보를 결합하는 것이 좋음

[참고] 메시지 개발 순서

① 핵심 단어를 먼저 선정 ➜ ② 핵심 단어 또는 동의어를 이용해 1개의 문장 또는 문구 구성 ➜ ③ 다른 사람(정책 대상자, 시민단체, 이해관계자 등)의 입장에서 홍보 메시지 생각 ➜ ④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핵심적인 메시지를 3개 이상 개발 ➜ ⑤ 개발한 메시지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 선택

□ 상황별 메시지 구성

ㅇ **(핵심 메시지)** 소통 기조와 핵심 메시지가 결정되면 모든 홍보물과 홍보 활동에 반영되도록 정부 내·외부에 널리 공유(필요 시 공문, 전화 연결음, 청사 옥외 현수막 등에도 활용)

ㅇ **(정부 대응상황 안내)** 위기 해결을 위한 정부의 조치 내역과 향후 계획은 정례 브리핑 등을 통해 적극 안내

- 다만, 사생활 보호 침해 등 논란이 야기될 수 있는 대책은 근거 법령이나 선례 등을 함께 알림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이나 비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ㅇ **(국민 행동수칙)** 위기상황이 끝나지 않아 국민의 지속적인 주의와 행동이 요구되는 경우, 국민 행동수칙을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로 제작해 전방위적으로 확산

- 행동수칙은 핵심 내용 위주로 최대한 간단·명료하게 작성

- 전 국민의 숙지와 협조가 필요한 만큼 온·오프라인상의 모든 가용 매체를 활용해 주기적으로 확산

2-2. 매체별 소통전략

ㅇ **(텔레비전·라디오·신문 등 언론)**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위기의 진행 및 수습상황, 정부 대책 및 향후 계획, 주의할 점을 알려야 하거나 과도한 불안감 해소를 위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활용

- 언론 대담이나 시사기획, 뉴스 인터뷰 등을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음

ㅇ **(누리집·누리소통망 등 온라인)**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의 신속한 제공, 오보·허위조작정보의 정정, 긴급 공지,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이벤트 등이 필요한 경우 활용

ㅇ **(현수막·인쇄물 등 홍보물)** 국민 행동수칙, 상황별 핵심 메시지, 슬로건, 치유와 공감의 표현 등의 반복적 노출이 필요한 경우 활용

※ 광고는 정부 대책이나 대응방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압축적이고 인상 깊게 전달해야 하는 경우, 사회적인 인식 또는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는 캠페인이 필요한 경우 활용하면 좋음

2-3. 근거자료 확보

ㅇ 대국민 소통에 도움이 되는 각종 통계자료, 소관 핵심자료를 취합하고 적극 활용

- ▲과거 유사 사건·사고 자료, ▲기초 통계, ▲부처의 장·단기 계획, ▲감사자료 등 조직 및 정책 전반의 자료 사전 준비

- 필요한 경우, 여론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대국민 소통 활동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음

2-4. 협업 관계망 구축

□ 관계자

○ **(기관 간 협의체)** 정부 내의 통일된 입장(One Voice)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는 협조 체계를 구성하고, 정례적인 협의회 개최

* (주의) 범정부 지휘 본부의 역할이 약해지면 각 부처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부처 간 조율되지 않은 사안'을 공개하거나 '서로 다른 목소리'를 방출해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 [현장지휘소]—[중대본]—[국조실]—[문체부(소통실)] 간 연락체계를 구축·유지하고 홍보 협력체계 구성

- **여러 부처가 관계된 사항**은 협의회나 상시 연락망을 통해 정부 입장을 미리 정리한 뒤 발표. 기관별로 보유한 홍보 매체는 공동 활용하고, 주요 위기관리 대책은 함께 홍보

* (예) 감염병 확산 시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생활 예방수칙 공동 홍보

-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엇박자는 위기의 확대를 초래할 수 있어, 상시 협력을 강화하고 지자체 소통 능력 향상 적극 지원

□ 전문가

○ **(여론 형성의 주도자)** 전문가는 위기 시 상황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설명하여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침

➜ 주요 전문가 등 여론 주도자들(opinion leader)에게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관련 정보 적극 제공

○ **(위기해결의 조언자)** 전문가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부에서 미처 고려하지 못한 다양한 사항을 알려주고 제안할 수 있음

➜ 주요 전문가 집단(pool)을 구성해 향후 대책 마련과 메시지 수립에 반영할 수 있는 조언을 구할 수 있음

* 위기 발생 전부터,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고 온라인 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장치 마련

□ 이해관계자

○ 대국민 소통과 별개로, 특히 피해가 심한 집단이나 위기 해결과 깊게 연관된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이고 충분한 소통 실시

* (예) 감염병의 경우, △(특히 피해가 심한 집단) 취약계층·자영업자·소상공인, △(해결과 연관된 이해관계자) 의사·간호사·약사 등 의료계

- 가능한 한 공식 브리핑에 앞서 피해자 협의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협의체에서 조율된 의견을 반영한 뒤 브리핑 진행

- 피해자에게는 위로와 공감의 태도로, '말하기'보다 '듣기'에 집중하며, 위기로 인한 피해와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

- 위기 해결대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있는 경우, 충분한 사전 설득 과정을 거쳐야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음

* 편견이 심하거나 반감이 있는 관계자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소통해야 함

□ 영향력자(인플루언서)

○ 유명 블로거, 유튜버 등 영향력자의 의견은 그들과 긍정적 관계를 맺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들이 정확한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들과의 소통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좋음

* 초기 온라인 여론을 주도하는 영향력자들에게 정확하고 의미있는 정보를 지속 제공한다면 위기 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3. 소통 실행

3-1. 공식정보 제공하기

□ 공식 브리핑 추진 [참고2]

○ (필요성) 위기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대국민 메시지 창구를 단일화하여 정부의 목소리를 하나로 유지하는 것임

- 위기 상황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 우선 전달하고, 필요시 현장 책임자나 실무자의 추가 브리핑이나 인터뷰 등을 진행할 수 있음

* 비공식적 경로로 상호 모순된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는 경우 정부에 대한 불신이 깊어질 수 있는 만큼, 확인되지 않은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함

○ (시점) 초기의 적극적인 정보 제공이 향후 정부에 대한 신뢰를 좌우하는 만큼, 사건 개요와 수습 상황, 대책 마련 계획을 확보하는 대로 최대한 빨리 공식 브리핑 실시

* 첫 브리핑은 확인된 사실만을 발표하고, 진행 중인 위기에 대해 사태의 추이 등을 예단하는 발언은 자제

- 온라인의 발달로 위기 발생 직후부터 관련 정보가 실시간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징후가 포착되면 즉시 브리핑 준비

○ (정례화) 위기가 종료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브리핑을 개최해 수습 진행 상황 등 진전된 내용을 원활하게 제공

-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에서 내보내는 정보에 대한 주목도가 큰 만큼, 일 1~2회, 정해진 시간에 브리핑 진행

- 위기 상황 중 희생자가 발생하면 최고책임자(대통령, 총리, 장관 등)의 명의로 위로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좋음

□ 보도자료 배포

○ (필요성) 정부의 공식 입장을 문서의 형태로 상세하게 알릴 수 있음

○ (방식) 각 기관별 누리집 개별 배포와 공식 누리집(후술) 공동 배포 모두 가능

○ (기능) ▲현황 및 정부대책의 사전 안내, ▲왜곡 보도에 대한 정정, ▲조치의 성과 등 위기과 관련된 부처의 최신 정보 전달

□ 공식 누리집 마련

○ (필요성) 공식 브리핑에서는 중요 사항을 실시간으로 전달한다면, 공식 누리집에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도록 돕고, 정보를 축적함

○ (방식) 특별 공식 누리집을 제작하거나, 기관 누리집을 공식적인 온라인 소통 창구로 일원화

○ (기능) ▲현황, ▲사실 확인, ▲정부 대책, ▲부처 입장(반론·해명 자료 포함), ▲자주 묻는 질문(FAQ) 등 신뢰할만한 정보를 꾸준하게 제공

* 중요 정보는 팝업, 배너, 별도코너 등을 활용해 찾기 쉽게 배치

-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고 있는 사이트나 포털 등에는 관련 정보를 고지하고 모든 문의는 공식 창구로 유입되도록 안내

□ 상담 접수창구 마련

○ (필요성) 위기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대처 방안을 문의할 수 있는 공식 상담 접수창구(콜센터 등) 마련

○ (방식) 기존의 유사 기능을 수행하던 접수창구를 적극 활용하면서, 인력 확충 및 운영시간 확대

3-2. 언론 지원하기

언론과의 원만하고 협조적인 관계는 위기관리 소통활동의 핵심! 언론의 취재·보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 개괄

○ 최선의 위기관리를 위해 언론보도를 지원하고, 언론과 협력하는 업무를 강화해야 함

○ 위기 보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황 및 정책 등 자료 제공, ▲재난보도준칙 준수 및 협조요청, ▲공동 현장취재 추진, ▲재난방송협의회 운영, ▲재난주관 방송사 및 국가 기간 통신사 활동 협력·지원 등의 업무 추진

□ 내부 지원체계 구축

○ 언론의 취재나 인터뷰 요청은 위기관리 소통 전담 조직에서 일괄 취합하여 정책부서에 전달

- 위기관리 소통 전담 조직은 인터뷰의 주제와 일정을 확인하여 관련 정보 및 주의사항 등을 실무부서에 전달하고, 담당자에게 기본적인 언론 대응 수칙과 요령을 사전에 숙지시킴

○ 정책부서에서는 사전에 ▲기자 이름, ▲소속, ▲면담 주제 및 쟁점, ▲주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 ▲핵심 메시지, ▲예상질문과 답변, ▲관련자료 등을 꼼꼼하게 확인

* 인터뷰 요령은 브리핑 요령과 유사함. 전화 인터뷰는 녹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하고, 방송 인터뷰는 방송되는 시간을 고려해 10초 이내로 짧게 답변하는 것이 좋음(길게 답변한 경우, 핵심 내용이 편집되어 전달되지 못할 수 있음)

□ 국내 언론 지원

○ **(사전 공지)** 기자들의 정보 수요를 충족시키고, 정보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브리핑 등 계획을 사전에 알려야 함

- 사전에 관계부처와 출입기자 명단을 구성하고 휴대폰 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 연락처 확보

○ **(현장 준비)** 취재진이 몰릴 가능성이 높으므로, 점검표를 작성하여 빠진 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

- **(시설 설치)** 다수의 기자가 출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본부, 현장 등)에 브리핑실과 취재지원센터 설치**[참고3]**

* 기자(펜기자, 방송기자 구분)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브리핑실과 장비 등 지원 시설 점검

○ **(자료 공유)** 브리핑과 관련된 자료는 기자들에게 배포·공유

* (예) 대국민 메시지, 보도자료·배경자료, 성명서·설명자료·사과문 및 질답(Q&A), 통계자료, 재난보도준칙 등

○ **(요구 대응)** 기자들의 문의 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서면 등 활용), 알맞은 정보를 제공해 정보 수요 충족

- 이해의 편의를 위해 그림·사진·영상 자료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수시로 제공

○ **(현장 관리)** 취재 경쟁이 과열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장은 언론의 출입 가능구역과 제한구역을 구분하여 혼란 예방

* 국민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장소나 위험지역 등 출입제한구역에는 취재제한선을 설치하고 적절한 안내 조치를 취해야 함

- 필요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하고 홍보담당자의 인솔하에 현장을 방문·취재할 수 있도록 지원

* 현장취재 기자들 중에는 취재기자명단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취재등록부를 마련하여 정보제공 대상에 포함

□ 해외 언론 지원

ㅇ 외신 보도는 대외적 국가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치고, 국제협력의 기반이 되기도 하며, 내·외신 보도는 상호 영향을 주므로, 필요한 경우 외신 담당관을 지정해 외신의 취재활동 적극 지원

* 기자단 구성 시 외신기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외신 취재지원 계획 마련

ㅇ 필요시 공식 브리핑을 번역하여 외국에 송출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외신대상 공식 브리핑 마련

3-3. 가용매체 활용하기

각 부처에서 보유한 홍보수단(매체) 적극 활용

ㅇ **오프라인 매체**

- 옥외 전광판, 현수막, 실내 영상패널, 기관별 홍보물 등이 있으며 소통실의 '보유매체 협업' 기능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

ㅇ **온라인 매체**

- 기관별/정책별 공식 누리집, 누리소통망, 온라인 기자단의 자체 채널 등이 있음

[참고] 온라인 소통 전략

① 메시지는 단일하게, 형식은 다양하게

- 온라인 홍보도 전체적인 홍보 계획 속에서 한 목소리(One Voice)를 유지해야 함
- 온라인 콘텐츠의 핵심은 형식의 다양화이므로, 브리핑 등 정부 공식 입장을 텍스트뿐 아니라 한컷뉴스, 동영상, 플래시, 만화, 정보그림(인포그래픽)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

② 경청하라

- 10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9는 공감에, 1은 정보전달에 할애
- 정부가 온라인 매체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진실되게 듣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면 국민과의 소통에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음

③ 맞춤형으로 하라

- 주부, 학생, 영향력자(인플루언서) 등 홍보 대상을 세분화하고, 각 대상이 주로 사용하는 매체를 통해 대상별 맞춤 정보를 차별화하여 제공

④ 맞서지 마라

- 온라인 댓글 등이 부정확한 내용이나 부정적인 반응을 내포하더라도 함부로 삭제하지 말고, 충분히 해명하는 등 추가적인 소통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좋음

⑤ 담당자의 대처가 정부의 대처로 해석된다는 점을 명심하라

- 부처의 누리집(홈페이지, 블로그 등) 및 누리소통망(트위터, 페이스북 등) 등에서 가볍게 이야기(답변)하는 내용도 의도와 관계없이 정부의 공식 메시지로 받아들여진다는 점 유의

※ 정부 가용매체가 아닌, 사적인 온라인 계정이라고 해도 담당자나 기관장 등 정부 관계자가 올린 글은 정부의 입장으로 받아들여지거나 본질과 다른 새로운 논란을 야기하기 쉬우므로 개인적 활동 또한 유의

3-4. 민간과 협업하기

ㅇ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이 쉽게 위기 관련 정보를 접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민간의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와 평소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ㅇ 보다 대대적인 정책 홍보를 위해서는 민간 유력 채널에서 유료 광고를 집행하는 것이 효과적임

참고1 위기관리 소통 메시지 작성 시 고려사항

□ 기본적인 고려사항

청자 [누구에게 하는가]	내용 [목적이 무엇인가]	매체 [어떻게 전달하는가]
ㅇ전체/일부 ㅇ인구통계적 특성 ㅇ위기와의 관련성 ㅇ피해의 정도	ㅇ진행상황/사실의 전달 ㅇ오보, 허위조작 정보 대응 ㅇ관계자/국민의 협조요청	ㅇ공식 브리핑(TV, 현장 등) ㅇTV, 라디오 등 방송 ㅇ신문 등 인쇄 ㅇ누리집, 누리소통망 등 ㅇ기타(전화 등)

□ 메시지 구성 예시

1. 어려운 상황에 대한 공감
2. 사건개요 설명
   - (6하원칙) 누가 / 언제 / 어디서 / 무엇을 / 어떻게 / 왜
3. 사건의 원인 규명 노력 천명
4. 원상회복 노력 천명

참고2 공식 브리핑 준비 참고사항

1. 발표자(briefer)의 지정

ㅇ 공식 브리핑 발표자는 원칙적으로 위기관리 소통 책임자로 지정함

- 위기관리 소통 책임자는 현재 상황, 정부 조치, 향후 계획 등 핵심 메시지를 정기적으로 발표함

- 핵심 메시지 발표자가 질의응답까지 진행하는 것이 좋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업무 담당자 또는 전문가를 배석시켜 질의응답을 담당하게 할 수 있음

ㅇ 발표자의 직함은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해 '대변인' 보다는 직무형 직함(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 중앙방역대책본부장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음

ㅇ 메시지의 중요성에 따라 발표자를 구분할 수 있음(예: 대통령, 총리 등)

2. 브리핑 준비

ㅇ 위기 상황에서 대국민 발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핵심 메시지, ▲발표 내용, ▲발표 자세, ▲예상 질답, ▲참고자료(언급을 삼가야 할 주제와 용어, 위로나 유감 표현) 등을 준비

- 브리핑은 '읽기'가 아니라 '말하기'임을 숙지하고, 사전 예행연습

- 한 문장은 12~14개 단어로 구성하고, '첫째', '둘째' 등 발표문을 구조화하며, 종결어미를 자주 사용해 문장을 간결화

ㅇ 복장은 비상근무복 착용을 원칙으로 하며, 국민이 내용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과한 화장이나 장신구 등은 피해야 함

3. 발표자의 자세

□ **(기본 자세)** 여론은 유동적이므로, 진실한 자세로 일관되게 설득하면 변할 수 있다는 점 명심

ㅇ 위기 상황에서 국민은 정부에 대해 쉽게 분노를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함

ㅇ 정부가 사태수습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강조해 문제해결 의지가 있음을 각인

* 제대로 된 정보의 전달이나 대책 없이 정부 성과만을 나열하는 자화자찬식 발표는 지양

ㅇ 언론은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그러나 당당하게 대해야 함

* 정부가 위기 상황에서 진정성을 갖고 대처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체에 솔직하고 겸손한 태도로 임해야 함

- 언론의 비판은 당연한 것으로 거부감을 가져서는 안 됨

- 언론사의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언론을 공평하게 대해야 함

□ **(감정의 통제)** 자신의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침착하고 차분한 어조로 발표

ㅇ 피해자 등 국민 정서를 항상 염두에 두고,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며 진지하고 신중한 자세 유지

* 변명이나 핑계로 해석될 만한 발언은 지양하고 현재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에 송구함 표시

ㅇ 인적 피해는 물적 피해에 앞서 언급하고 피해자의 관점에서 용어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함

* **[!]** 국민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말실수는 정부에 대한 반감을 일으키고 위기 극복 과정에서 필요한 국민 협력의 동력을 저해함

□ **(실수 최소화)** 모두가 예민한 상황인 만큼, 공식 석상에서 품행, 표정에 유의하고 자신도 모르게 웃음 등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

4. 브리핑 시 유의사항

□ **(정확성)** 확인되지 않은 자료, 확정되지 않거나 부처 간에 의견 조율이 끝나지 않은 사안은 발표해서는 안 됨

ㅇ 브리핑 등 대국민·대언론 설명 직전까지 현장에 대한 최신 통계와 관련 언론보도 내용을 숙지해야 함

* **[!]** 데이터 오류는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국민과 언론의 신뢰 상실

ㅇ 주관적 감정이나 섣부른 정무적 판단은 배제하고 객관적 지표와 사실을 중심으로 발표하며, 향후 사태 추이 등을 예단하지 않음

□ **(투명성)** 위기 관련 정보는 최대한 공개하고, 부득이하게 공개할 수 없다면 그 사유를 알려 공감을 얻어야 함

ㅇ 부정적 사안이라도 알려져야 할 사실이라면 은폐하거나 축소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발표하며 전후 맥락을 충분하게 설명

* **[!]** 문제가 있을수록 미리 알리고 대응해야 함(사후 해명은 공신력에 상처를 줄 수 있음)

□ **(적극성)** 언론에 보도되어 이슈화되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기자가 묻기 전에 적극적으로 새로운 정보 제공

ㅇ 언론 오보나 온라인상의 각종 유언비어, 비판, 거짓 정보 등에 대해 정확하게 해명하는 노력 지속

* **[!]** 기자가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면 제3자의 정보에 의존하게 돼 오보 가능성이 높아짐

□ **(일관성)** 정부의 발표나 입장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정책이나 입장이 변경되면 합리적으로 설명·설득해야 함

ㅇ **(기관 간 일관성)** 여러 부처가 관계된 사안은 반드시 조율을 통해 공동으로 대응하여 일관된 목소리를 내야 함

- 다른 조직에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은 삼가야 함

○ **(내용의 일관성)** 한 번 발표된 내용은 그대로 지켜져야 함

- 불가피한 사유로 발표된 내용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경우, 이에 대한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다.

* **[!]** 말바꾸기는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함

□ **(신중성)**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정리된 자료를 기초로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을 것

○ 위기의 원인이나 피해 상황에 대한 언급 시 신중을 기하고, 특정 집단의 반발을 야기하거나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은 삼가야 함

- 특히, 사고와 피해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나 및 자극적인 표현은 피해야 함

○ 사전에 피해자 및 가해자 등 관련자에 대한 정보를 어느 수준까지 공개할지 결정

□ **(용이성)**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쉽고 정확한 용어를 사용

○ 업계에서 통용되는 전문용어나 약어, 영어 등 외국어의 사용을 삼가고, 언론이 정부 발표를 직접 인용해 기사화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로 발표

5. 상황별 질의응답 요령

□ **잘 모르는 내용을 질문하는 경우**

○ 발표자가 대답할 수 없는 전문적·실무적인 내용은 섣불리 답변하지 말고 담당자가 답변하도록 하거나 추후 서면으로 답변

- 추측성 답변이나 주관적 견해, 예단, 정보의 부분적 유출은 추후 불필요한 논란과 부정확한 보도를 야기할 수 있음

- 통계수치의 정확성을 100% 장담할 수 없을 경우,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잠정', '몇 시 경',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등의 표현 사용

○ 현장에 없는 사람이나 조직을 인용하여 답변을 요구했다면,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취지로 이루어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등으로 답변

□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을 질문한 경우**

○ 비보도요청(Off The Record)이나 단순 답변거부(No Comment)는 지양하고, 답변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대신

* (예) "상황이 정리되면 추후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이 문제를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이해관계자에게 예기치 않은 피해를 줄 수 있어 지금 당장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 비보도요청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언제라도 무시될 수 있음

- 답변거부는 문제가 있거나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부정적 암시를 줌

○ 의도적으로 감정을 자극하는 표현이나 어투, 논리로 즉각적 답변을 요구하는 경우, 감정을 배제한 채 최대한 객관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답변하거나 추후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응답

* (예) "말씀하신 표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방대한 범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의 경우**

○ 답변은 결론부터, 간결하고 명확하게 발언

- 편집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강조할 필요가 있는 내용은 한번 더 되풀이

○ 여러 질문을 동시에 받아 명확히 이해하지 못했다면, 답변이 가장 쉽거나 간단한 질문에 먼저 답변하고 나머지는 질문을 다시 확인

□ 잘못된 가정을 전제로 질문할 경우

ㅇ 잘못된 사실이나 현재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여 질문하는 경우, 해당 전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고 관련 내용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답변

* (예) "그 전제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정에 근거한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경우

ㅇ "이번 상황이 '예'나 '아니오'(혹은 'A냐 B냐)로 답변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전제한 후 이에 대해 성실하게 충분히 설명

□ 단언이나 확언을 요구하는 경우

ㅇ 확언이 불가하거나 곤란한 상황임을 언급한 뒤 위기관리 수습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의지 강조

* (예) "현재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구체적인 사고 원인과 피해상황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확실한 입장이 결정되는 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참고3 사고현장 취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

※ 사고현장 취재지원센터를 다수 부처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재난관리 주관기관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세부사항 결정

□ 장소 선정

ㅇ 사고현장에 가깝고, 취재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면서, 현장 대책본부의 활동이 노출되지 않도록 분리된 곳

ㅇ 취재진의 규모를 고려해 충분한 공간 확보 필요

* 취재지원실은 일반적으로 50명 이상 수용, 24시간 개방이 가능한 곳으로 선정하고 취재 편의를 위한 휴식 공간을 구비하는 것이 적합하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음

□ 설치 시점 : 현장 사고대책본부 설치와 동시에 설치

□ 기능

① 수시 상황 브리핑 실시 및 보도자료 배포

② 언론 상황 파악 및 대응

③ 현장 취재단 지원

- 취재 송고시설 마련 및 행정 서비스 지원
- 사고현장 안내 및 취재제한선 준수 협조 요청

□ 역할분담

ㅇ **(언론지원)** ① 취재등록부 관리 등 언론 연락체계 유지, ② 보도자료 배포(이메일, 문자 등), ③ 언론 요구사항 파악 및 대응(공동 현장취재 수요 파악, 현장안내 등)

ㅇ **(센터관리)** ① 현장브리핑실·기자실 등 취재공간 확보 및 기사송고 시설 설치*, ② 현장 취재제한선 설치 요청, ③ 공동 현장취재 관련 편의 제공 (이동용 차량 준비 등)

* 현장에 설치가 어려운 경우 가까운 장소나 시설 활용

(물품 예시) 마이크, 배경막(기관 로고 확인), 책상·의자, 화이트보드, 발표대, 전화, 텔레비전, 컴퓨터, 인터넷 등 송고시설, 취재등록부, 프린터, 팩스, 필기구, 지도, 음료수 등

5. 외국인 사상자 관련 상황 전달체계

□ 개요

○ 감염병의 경우,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및 협력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보건규약**(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IHR)'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WHO** 및 **회원국**에 발생 보고하고 있음

○ 각국의 **IHR 연락관***은 **자국**에서 **발생**한 **공중보건 위기상황 발생** 개요** 및 이에 대응하여 시행한 **보건조치**에 대해 신고해야 함

* 우리나라는 질병관리청(국제협력담당관)에서 담당

** 환자 수와 사망자수, 검사결과, 질병 확산에 영향을 미친 조건 등

○ 또한, **외국인 확진환자(사망)** 및 **확진환자의 외국인 접촉자**에 대해서도 해당국가 **IHR 연락관**과 **해당국가가 소속된 WHO 지역사무처 및 외교부에서 제공한 비상연락망을 활용하여 해당 국가의 주한 공관**에 이메일로 보고

□ 상황 전달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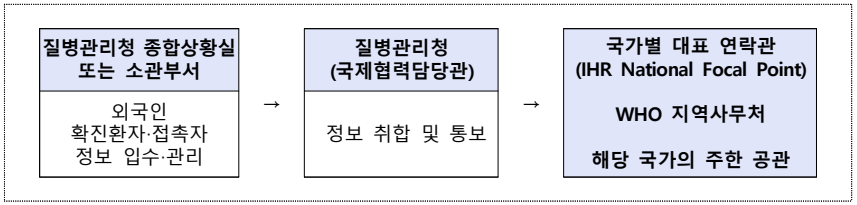

○ **(종합상황실 또는 소관부서)** 감염환자·접촉자 정보 입수·관리

○ **(질병청 국제협력담당관)** IHR 통보할 정보* 취합 및 통보

* 통보 내용 : 여권상의 이름, 성별, 연령, 여권번호, 국적, 확진일, 증상발현일, 확진검사 기관, 검사·검체 종류, 이용 항공편, 좌석번호, 조치 내용, 출국 여부 등

6. 중앙수습지원단의 표준편제와 임무

□ 목 적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대규모 재난 수습을 지원하기 위함

- 중앙대책본부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기관·단체의 재난관리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현지에 파견

□ 수습지원단 표준편제

□ 임 무

○ 지역대책본부장 등에 대하여 수습에 필요한 기술자문·권고 및 조언

○ 중앙대책본부장에 대하여 현장 상황 및 재난발생 원인 분석 보고

○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적·재정적으로 조치할 사항에 대한 보고 등

7. 국민행동요령

□ 감염병 예방을 위한 5대 국민행동수칙

□ 올바른 손씻기 예방수칙 (국문)

□ 올바른 손씻기 예방수칙 (영문)

□ 수인성 감염병 예방수칙

□ 기침 예절 (국문)

□ 기침 예절 (영문)

8. 감염병 위기 시의 주요 표준운영절차

□ 감염병 위기시 부처간 표준업무절차

부처	조치사항
행정안전부	• **주관부처 요청시 정부합동 일일점검회의 개최** ※ 필요한 경우 영상회의로 개최 가능 * (안건) 주관부처 대응 및 지자체 접촉자 관리상황 추진실적 점검, 진행상황 공유 ** (참여부처) 복지부, 질병청, 지자체, 법무부, 경찰청, 외교부, 교육부 등 (안건에 따라 참여부처 변경 가능)
	• **내국인 접촉자 주소정보 제공 협조** * 접촉자 주민등록 전산자료조회
	• **지자체 접촉자 관리 모니터링 지원**
	• 감염병 재난 국민행동요령 전파 협조
법무부	• **밀접접촉자 대상 출국금지 조치**
	• 내외국인 접촉자의 출입국 기록 확인
	• 외국인 연락처 및 체류지 정보 제공
경찰청	• **내외국인 접촉자 소재파악**
	• 환자격리 및 출입통제 등 질서유지
	• **확진자 위치정보(GPS) 제공(통신사)**
외교부	• 해외 감염병 정보 신속 입수 및 전파
	• 재외국민 영사조력 제공
	• 감염병 관련 해외안전문자 특별 발송
	• 현지 조사를 위해 주관기관 담당자 파견시 해당국 유관기관 협조 요청
환경부	• **확진자,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폐기물 처리 관리** - 유관기관 안내 및 모니터링 * '18년 발생시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종합상황실, 유역 (지방)환경청 지역상황실 운영
국방부	• 군 인력에 대한 예방조치시행
국토부	• 항공, 철도, 버스 관련 접촉자 조사 및 관리 지원
금융위원회/여신금융협회	• 카드사용내역정보제공 - 신용·직불·선불카드 사용명세 및 교통카드 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접촉자 DUR 등록 및 시스템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 해외 여행객 감염병 예방 홍보 및 주의사항 등 정보 제공
소방청	• 의심 및 확진환자 이송 지원

□ 감염병 위기소통 대응조치

① 관심단계

대응조치	프로그램
보도기획	○ 언론보도 기획 - 위기상황 전개에 따른 보도자료 기획 ○ 언론 모니터링 - 위기상황 관련 주요 기사를 요약하여 내부 공유 ○ 보도자료 검토 • 배포 - 보도자료 검토(상황, 방향성 등) - 보도자료 사전 공지 및 배포(대변인실, 기자, 홈페이지 등)
취재지원	○ 취재지원 - 출입기자 소통(전화설명회,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미디어센터 등) - 인터뷰 영상 촬영 • 배포, 담당자 연결, 참고자료 공유 등 ○ 오보대응 - 오보에 대한 대응 여부를 판단하여 정정요청, 보도해명 • 설명자료 배포
소통기획	○ 콘텐츠 관리 - 상황, 질병, 예방 등에 대한 콘텐츠 기획 • 제작 ○ 콘텐츠 배포 - 소통 네트워크를 통한 콘텐츠 배포 - 유관기관 소통 협조 리스트 확보 유관기관 협조를 통한 소통 네트워크 추가 확보 ○ 소통자문단 상황 공유 - 상황 및 대응에 대한 상시 정보 공유, 자문단 의견 수렴
온라인소통	○ 소셜 미디어 소통 - 질병관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상황에 대한 상시 소통 ○ 홈페이지 메인 콘텐츠 관리 - 홈페이지 내 위험상황에 대한 정보 관리(배너, 링크, 자료 등) ○ 온라인 모니터링 - 소셜 미디어, 커뮤니티 등 게시글, 댓글을 통해 온라인 여론을 요약하여 내부 공유

② 주의단계

대응 조치	프로그램
보도 기획	○ 언론보도 및 브리핑 기획 - 위기상황 전개에 따른 보도자료 및 브리핑 기획 ○ 언론 모니터링 - 위기상황 관련 주요 기사를 요약하여 내부 공유 ○ 보도자료 검토 • 배포 - 보도자료 검토(상황, 방향성 등) - 보도자료 사전 공지 및 배포(대변인실, 기자, 홈페이지 등)
취재 지원	○ 취재지원 - 출입기자 소통(전화설명회,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미디어센터 등) - 인터뷰 영상 촬영 • 배포, 담당자 연결, 참고자료 공유 등 ○ 오보대응 - 오보에 대한 대응 여부를 판단하여 정정요청, 보도해명 • 설명자료 배포 ○ 브리핑 - 브리핑 기획(일정, 장소, 사전 공지, 기자인솔, 배포자료 등) - 상황, 입장, 방안 등에 대한 브리핑 자료 검토 ○ 현장 소통 지원 - 현장 정보 및 상황 공유, 현장 취재지원, 지역사회(보건소 등) 협조 등
소통 기획	○ 콘텐츠 관리 - 예방법, 환자발생, 대응상황, 루머대응 등에 대한 콘텐츠 기획 • 제작 ○ 콘텐츠 배포 - 소통 네트워크 통한 콘텐츠 배포 ○ 정부 • 민간 기관 소통 협조 - 정부 • 민간 기관 협조를 통한 국민소통범위 확대(정부, 지자체, 협회, 언론, 포털 등) ○ 소통자문단 상시 자문 체계 - 소통자문단과 언제든 소통 이뤄 질 수 있도록 상시 정보 공유 및 자문 체계 유지 ○ 국민 인식조사 - 전문 리서치 회사를 통해 위험 상황에 대한 국민인식 확인
온라인 소통	○ 소셜 미디어 소통 - 질병관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상황에 대한 상시 소통 ○ 홈페이지 내 별도 페이지 구성 - 위기상황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 - 위험 상황 관련 모든 자료 취합(상황 정보, 보도자료, 소통콘텐츠 등) ○ 온라인 모니터링 - 소셜 미디어, 커뮤니티 등 게시글, 댓글을 통해 온라인 여론을 요약하여 내부 공유

③ 경계-심각단계

대응 조치	프로그램
보도 기획	○ 언론보도 및 브리핑 기획 - 위기상황 전개에 따른 보도자료 및 브리핑 기획 ○ 언론 모니터링 - 위기상황 관련 주요 기사를 요약하여 내부 공유 ○ 보도자료 검토 • 배포 - 보도자료 검토(상황, 방향성 등) - 보도자료 사전 공지 및 배포(대변인실, 기자, 홈페이지 등)
취재 지원	○ 취재지원 - 출입기자 소통(전화설명회,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미디어센터 등) - 인터뷰 영상 촬영 • 배포, 담당자 연결, 참고자료 공유 등 ○ 오보대응 - 오보에 대한 대응 여부를 판단하여 정정요청, 보도해명 • 설명자료 배포 ○ 상시 브리핑 체계 - 상시 브리핑 체계 구축 및 상주 기자 지원 - 상황, 입장, 방안 등에 대한 브리핑 자료 검토 ○ 현장 소통 지원 - 현장 정보 및 상황 공유, 현장 취재지원, 지역사회(보건소 등) 협조 등
소통 기획	○ 콘텐츠 관리 - 예방법, 환자발생, 대응상황, 루머대응 등에 대한 콘텐츠 기획 • 제작 ○ 콘텐츠 배포 - 소통 네트워크 통한 콘텐츠 배포 ○ 정부 • 민간 기관 소통 협조 - 정부 • 민간 기관 협조를 통한 국민소통 범위 확대(정부, 지자체, 협회, 언론, 포털 등) ○ 소통자문단 상시 자문 체계 - 소통자문단과 언제든 소통 이뤄 질 수 있도록 상시 정보 공유 및 자문 체계 유지 ○ 매체광고 집행 - 대국민 대상 메스미디어를 활용한 온 • 오프라인 광고 집행
온라인 소통	○ 소셜 미디어 소통 - 질병관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상황에 대한 상시 소통 ○ 전용 홈페이지 구축 - 위기상황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 - 위험 상황 관련 모든 자료 취합(상황 정보, 보도자료, 소통콘텐츠 등) ○ 온라인 모니터링 - 소셜 미디어, 커뮤니티 등 게시글, 댓글을 통해 온라인 여론을 요약하여 내부 공유

□ 코로나19 대응 주요 지침 목록

분류	명칭
총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
검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지침 • 입국자 임시생활시설(검사시설) 관리운영 지침 • 지자체지정 입국자 임시생활시설 관리운영 지림 • 인천공항검역소 임시대기시설 관리 운영지침 • 재외국민 입국자 임시생활시설 감염예방 및 관리 지침 • 입국자임시격리시설 소독안내
접촉자 관리	• 접촉자 격리시설지침(비의료기관) • 접촉자 격리시설의 감염병관리지침
의료기관	• 감염병전담병원 운영 지원 사업지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의료기관용) • 코로나19 대응 생활치료센터 운영안내 •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 운영지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예방관리(의료기관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발생 의료기관 관리
선별진료소	•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안내 • 대구지역 임시선별진료소 운영방안 • 자동차이동형(DriveThru) 선별진료소 표준운영모델 • 인천공항 선별진료소 운영방안 • 권역별 선별진료 긴급지원팀 인건비 및 진단비 지원 안내
감염취약계층/집단시설	• 코로나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 코로나19 유행대비 사회복지서비스 유지를 위한 공통대응지침 •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지침 •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증-19 고시원방역지침 •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증-19 쪽방촌방역지침 • 장애인 대상 감염병대응 매뉴얼
대국민 지원	•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안내 •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지침 •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계획 안내 • 코로나19 외국인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방법 안내 •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안내
손실보상	• 코로나19 손실보상 안내 지침
사회적 거리두기	• 코로나19 집단행사 방역관리지침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 •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 생활속 거리두기 방역관리자 업무안내 • 전자출입명부 활용안내 • 고위험시설 핵심방역수칙
그외	•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의 지원운영지침(지자체용)

□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개요

○ **(목적)** 감염병 상황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장이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감염병 대응 및 지원 계획 수립**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함

○ **(구성)** 총3장으로, ▲**(1장) 개요** ▲**(2장) 장애인 대상 고려사항**(이동서비스 지원, 감염병 예방 관리등) ▲**(3장) 서비스별 대응 지침**(제공기관등)으로 구성

I. 개요	1. 장애인 고려 필요성 2. 감염병 상황에서 장애 특수성 [참고] WHO 코로나19 장애인 고려사항
II. 장애인대상 고려사항	1. 감염병 정보 접근성 제고 2. 이동제약 지원 3. 감염 예방관리 및 필수의료 지원 4. 돌봄서비스 공백 방지 5. 장애인시설 감염예방 및 서비스 유지
III. 주요 장애인 서비스별 대응 지침	1.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대응 지침 2. 장애인 거주시설 대응 지침 3.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유지 지침
[참고] 의사소통 지원 등 배포용 자료	1. 장애인을 위한 코로나19 안내서 '코로나19 함께 이겨 냅시다' - 코로나19는? - 코로나19 관련된 말(쉬운 용어 정의) - 코로나19에 걸리면 어떻게 아픈가? - 코로나19에 걸린 것처럼 아프다면? -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으려면? -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면? - 코로나19로 격리해야 한다면? - 코로나19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 코로나19 관련 연락처 - 코로나19 대비 카드 2. 시각 지원판/의사소통 도움 그림·글자판 사용 매뉴얼 3. 자가격리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 **(조치사항)**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반영한 지자체 계획 수립·시행

- 특히, 감염병 유행 시 **선별진료소·의료기관 등 의사소통** 지원, 의료기관·격리장소 등 이용 시 **이동지원**, 고위험 확진자·자가격리자(예: 신장장애인) **의료이용 연계·지원, 필수서비스 유지 및 돌봄공백 방지 조치** 등 철저

9. 지역방역대책반 체계도

□ 시 · 도 방역대책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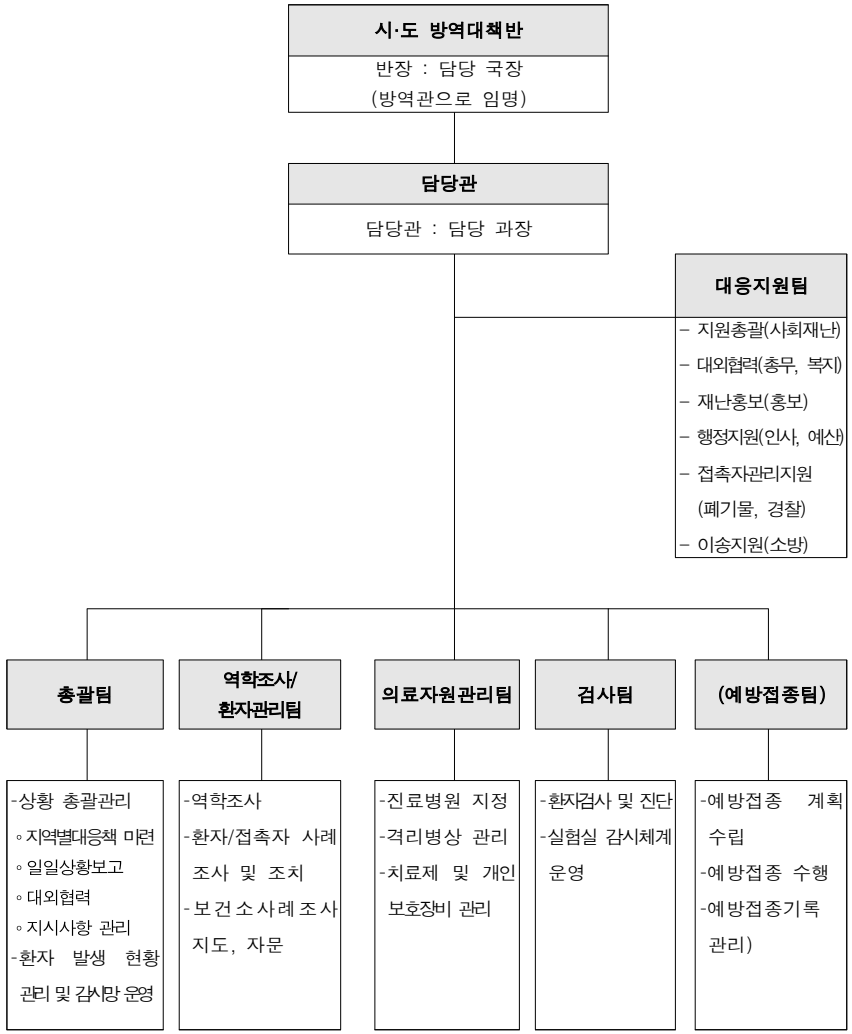

* 상황에 따라 확대 · 축소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시·군·구 방역대책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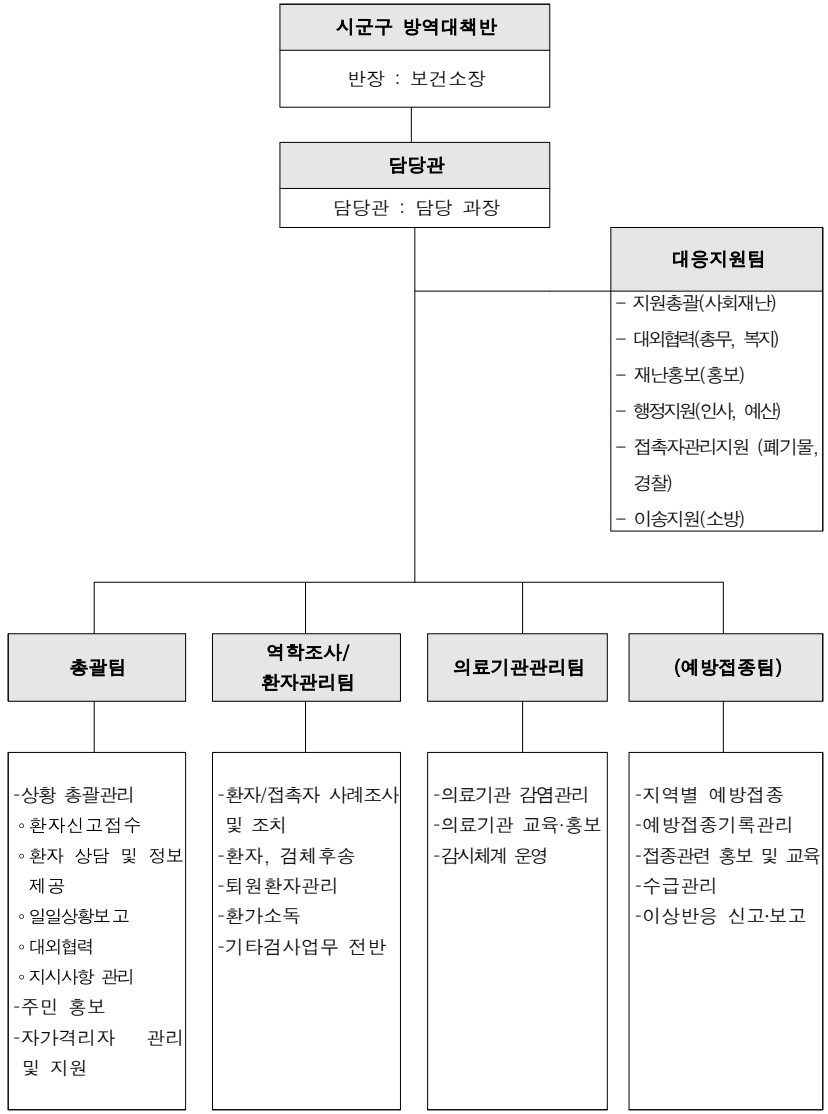

* 상황에 따라 확대 · 축소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10. 코로나-19' 감염(의심·확진) 직원 발생시 YGPA 대응 매뉴얼

□ 목적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한 집단감염을 대비하고, 항만 및 여객터미널 등 사회 필수기능 업무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함

□ 코로나19 의심 증상(본인)

○ **(사내 근무 중) 재난**안전실 방역담당자(나승주, 한재혁주임)에게 신고 후 즉시 신속항원검사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 실시

- (음성) 정상근무, (양성) 재택치료(상황에 따라 추가로 PCR 검사 실시)

○ **(출근 전·퇴근 후)** 신속항원검사 병원 등 방문하여 신속항원검사

- (음성) 정상출근, (양성) 재택치료(상황에 따라 추가로 PCR 검사 실시)

○ **(복무조치)** 병원 신속항원검사 시 병가외출(4시간 이내) 처리

⇒ 신속항원검사 및 PCR 검사결과, 최종 음성일 경우, 출근가능

※ 신속항원검사 병원 : 포털(네이버, 다음) 지도에서 신속항원검사 병원 검색

Q. 신속항원검사 양성 이후, PCR검사 결과 확인 전까지 복무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A. 경영지원부 통보(복무 담당자) 후, 결과 확인 전까지 병가 처리

□ 코로나19 확진 시(본인)

○ **(복무조치)** 확진일로부터 7일간(주말포함) 병가(재택치료)

- 유증상(기침, 두통) 지속 발현 등 건강상태에 따라 추가치료(병가) 실시

○ **(역학조사)** 양성판정일로부터 3일 전까지 사옥 동선 및 임직원 접촉현황(회의, 근무, 식사 등)을 재난안전실 방역관리자에게 제출 必

□ 코로나19 의심 증상 시(동거가족)

○ **(사내 근무 중)** 동거가족의 자가진단키트 결과 양성 후 아래와 같이 복무조치(사내 임직원 접촉 최소화)

- 즉시 신속항원검사 실시 후 (음성) 정상근무, (양성) 재택치료

○ **(출근 전·퇴근 후)** 동거가족의 자가진단키트 결과 확인 전까지 출근 금지하며, 결과 확인 후 아래와 같이 복무조치

- 즉시 신속항원검사 실시 후 (음성) 정상출근, (양성) 재택치료

○ **(복무조치)** 병원 신속항원검사 시 병가외출(4시간 이내) 처리

⇒ PCR 검사결과, 최종 음성일 경우, 출근가능

□ 코로나19 확진 시(동거가족)

○ **(사내 근무 중)** 즉시 병원 신속항원검사 실시 후 (음성) 정상근무, (양성) 재택치료

○ **(출근 전·퇴근 후)** 출근 전 신속항원검사 실시 후 (음성) 정상출근, (양성) 재택치료

○ **(복무조치)** 병원 신속항원검사 시 병가외출(4시간 이내) 처리

⇒ 확진자 동거인은 10일간 수동감시자로 분류되며, 확진일 3일이내 PCR검사 실시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실시(정부지침)

Q. 가족 또는 동거인중에 확진자가 발생해도 출근가능한가요?
A. 정부 방역지침(2022.3.15.)에 따라 재택치료 동거인은 10일간의 개인방역지침을 적극 준수(별도 식사 등)하며 출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녀 등 재택치료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복무담당자와 협의 후 개인연차 또는 가족·자녀 돌봄휴가 사용가능

Q. 확진자 접촉시에 꼭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자가진단키트는 안되나요?
A. 다중이용시설 방문 또는 출장으로 이상증상은 없으나 예방차원에서 검사시에는 자가진단키트를 사용하여 간단히 진단할 수 있으나, 확진자 접촉은 예방차원이 아닌 대응 및 조치차원이므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병원)을 받아야함
※ 2022.3.14. 일부로 병원에서 실시하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최종확진

※ 향후 정부 방역지침 변경 시 **정부 지침 우선적용** 후 주기적 개정 예정

11. 감염병 전파에 따른 YGPA 업무지속계획

□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에 따라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 우려 시 업무지속 계획(분산근무)

○ 지역사회 대규모 집단감염 발생 우려 시 사장 판단 하에 **분산근무** 실시 결정

- 분산근무와 함께 재택근무도 탄력적으로 실시 가능

[부서별 대응 업무]

○ **(경영지원부)** 분산근무에 따른 대체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물품 지원 등

- 분산근무 실시에 따른 **부서별 핵심인원 1명 및 해당업무 유경험자 1명 명단 확보(각 부서 협조 요청)**
- 대체사무실 선정 후(재난안전실 및 마케팅부와 협의) 업무환경 조성(사무기기 및 용품 등)
- 대체사무실 근무자 일별 근무현황 관리
- 부서별 1일 2회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여부 관리

○ **(재난안전실)** 분산근무 실시에 따른 **대체사무실 지정**(경영지원부 및 신성장사업실와 협의) 및 코로나-19 대응 총괄 업무

- (광양) 동측 배후단지(FTZ 1층)
- (여수) 여수지사 회의실, 국제여객터미널 및 연안여객터미널 회의실

○ **(신성장사업실)** 분산근무 실시에 따른 대체 사무실 **인터넷 망 설치(VPN) 지원 및 교육**

- 개인노트북 사용을 우선으로 하며 미 소유자에 대해서는 회사 소유 노트북 지급
- 보안서약서 등 내부자료 외부유출 방지를 위한 **행정 및 소프트웨어 준비**
- 핵심인원 VPN 및 전자결재 **이용방법 등 교육 실시**

□ 코로나-19 감염 확진자 발생 시 업무지속 계획(재택근무)

[재택근무 1단계]

① 최초 확진자 발생 시 방역실시(보건당국, 재난안전실, 경영지원부) 기간 동안 (2일) 전직원 재택근무 실시

- 지역사회 대규모 집단 감염 우려 시 사장판단하에 재택근무 실시

② 확진자 및 접촉자, 유증상자(고열자 등)를 제외한 인력 본사업무 수행(본사 복귀일정은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결정)

[재택근무 2단계]

① 지역사회 대규모 집단 감염에 따른 공사직원 확진자 발생 시 잠복기간(14일) 동안 전직원 재택근무(3교대 실시)

- 본사 복귀 일정은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3교대 시행 날짜 결정

* 부서별 핵심인력은 재택근무 가급적 배제

[부서별 대응 업무]

○ **(경영지원부)** 재택근무 실시를 위한 행정사항 추진(복무지침, 근태관리 등)

- 재택근무 실시에 따른 사장 결재
- **부서별 3교대 재택근무 명단 확보(각 부서 협조)**

* 재택근무가 곤란한 업무를 맡고 있는 임신부는 임신검진휴가 사용 권장

- 전직원 **비상연락망(전화, 문자, 밴드, 카카오톡 등) 관리** 및 대기철저
- 일별 재택근무 현황 및 일일 업무결과, 비대면 회의 관리(SKYPE 등을 활용한 영상회의)

○ **(재난안전실)** 코로나-19 관련 업무 총괄(개인별 전달사항, 유관기관 대응 및 보고 등)

- 보건당국 및 관련기관 협조체계 유지
- 보건당국 및 경영지원부와 협의하여 방역실시(1일 1회)

○ (신성장사업실) 재택근무 실시에 따른 인터넷 망 설치(VPN) 지원 및 교육

- 관련 매뉴얼 및 소프트웨어 등 관련 업무 항시 운영이 가능하도록 준비(확진자 발생시 사업장 폐쇄에 따른 즉각 업무 중단)
- 보안서약서 등 내부자료 외부유출 방지를 위한 행정 및 소프트웨어 준비
- **VPN 및 전자결재 이용방법 등 전직원 교육 자료 배포**

12. 감염병 지역사회 전파에 따른 YGPA 원격근무 시 정보보안 대책 및 전자결재 이용 계획

□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에 따라 집단감염 발생으로 분산근무 실시에 따른 대응계획

① 지역사회 전파에 따라 집단감염 발생 및 코로나-19 의심 직원 발생 시 사장 판단 하에 분산근무 실시

② 대체사무실 선정(재난안전실 및 경영지원부와 협의)

③ 분산근무 실시에 따른 대체 사무실 인터넷 망 설치(VPN) 지원 및 **교육**

- 개인노트북 사용을 우선으로 하며 미 소유자에 대해서는 회사 소유 노트북 지급
- 보안서약서, 보안상태 일일 점검표 등 내부자료 외부유출 방지를 위한 행정 및 소프트웨어 준비
- 핵심인원 VPN 및 전자결재 이용방법 등 교육 실시

□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에 따라 집단감염 발생으로 재택근무 실시에 따른 대응계획

① 지역사회 전파에 따라 집단감염 발생 및 코로나-19 확진 직원 발생 시 전직원 재택근무 실시

② (신성장사업실) 재택근무 실시에 따른 인터넷 망 설치(VPN) 지원 및 교육

- 관련 매뉴얼 및 소프트웨어 등 관련 업무 항시 운영이 가능하도록 준비(확진자 발생시 사업장 폐쇄에 따른 즉각 업무 중단)
- 보안서약서, 단말기 보안상태 일일 점검표 등 내부자료 외부유출 방지를 위한 행정 및 소프트웨어 준비
- VPN 및 전자결재 이용방법 등 전직원 교육 자료 배포

13. 원격근무 시 정보보안 대책 및 전자결재 이용 방법 안내

1 정보보안 대책

□ 근거

ㅇ 「정보보안 지침」 제59조(원격근무 보안)

□ 원격근무 보안관리

ㅇ 원격근무 시 **비밀·대외비 취급 금지**

ㅇ 원격근무자에 한해 **보안서약서**(붙임1) **징구**

ㅇ **비공개 업무자료**(중요자료 등)는 **문서처리 후** 단말기*(PC, 노트북 등)에서 **즉시 삭제**하되, 단말기에 **일시 저장**이 필요할 경우 **파일 암호*** 설정(붙임2)

* 단말기 운영체제는 윈도우10 사용 (윈도우7은 보안 기술지원이 '20.1.14.부로 종료)

* 비밀번호는 숫자・문자・특수문자 등 혼합 9자리 이상으로 설정

ㅇ 원격근무 단말기에 **보안 소프트웨어 설치 등 VPN 접속* 전 단말기 보안 상태를 일일 점검**(붙임3)**하여 '안전' 확보 및 점검 결과 제출**

* 접속 정보(URL, ID, PW)는 별도 안내하여 **해당 정보의 유·노출 절대 금지**

ㅇ **원격근무 종료 시** 단말기에 저장한 **업무 자료 삭제**

□ 메일을 이용한 업무자료 송 · 수신 보안관리

ㅇ 원격근무 중 업무자료 소통은 **공사 전자결재 메일 또는 웹메일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상용메일로 소통 금지**

- 전자결재 메일 또는 웹메일로 일반 업무자료만 소통가능하며 **비밀·대외비는 소통 불가**
- **전자결재 메일 또는 웹메일에서 중요·비공개 업무자료**를 본인 또는 동료 직원의 **상용메일주소로 발송 금지**

ㅇ **전자결재 메일 또는 웹메일**을 통한 **업무자료도 송 · 수신 후 메일함**에서 즉시 **삭제 조치**

□ 스마트폰 보안관리

ㅇ 원격근무 중 카카오톡 · 밴드 등 **메신저 · SNS** 프로그램을 통한 **업무자료 소통 금지 및 단말기에 해당 프로그램 설치 금지**

ㅇ 스마트폰에 **업무자료 저장을 금지**하고, 수리의뢰 또는 판매 시 폰 초기화

ㅇ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바이러스 검사**

2 전자결재 이용 방법

□ 접속 시

ㅇ 단말기 인터넷 접속 확인 ⇒ (일일 점검표 이용) 단말기 보안상태 확인 점검 ⇒ 인터넷 익스플로러 등 웹브라우저 실행 ⇒ VPN 사이트 접속 및 상태 유지 ⇒ (새창 또는 새탭) 전자결재 사이트 접속

□ 이용 시

ㅇ 단말기 보안 상태 수시 점검 및 정보보안 대책 이행

ㅇ 단말기 내 파일 저장 시 비밀번호 부여

ㅇ 자리 비움 시, 윈도우 로그인 화면(windows 키+L)으로 설정

ㅇ VPN 접속 정보 유·노출 절대 금지

❑ 종료 시

ㅇ 전자결재 로그아웃 ⇒ VPN 접속 종료 ⇒ 단말기 내 저장된 업무자료 삭제 ⇒ 단말기 시스템 종료 ⇒ (매일) 일일 점검표 작성 제출

[붙임 1]

재택근무 일일 근무현황보고 (00.00.)

□ 재택근무자 근무현황

소속	조	이름	'20.4.6.(월)		
			08:50 ~ 09:10	12:50 ~ 13:10	17:50 ~ 18:10
경영지원부	*1*	*홍ㅇㅇ*	*ㅇ*	*ㅇ*	*ㅇ*
경영지원부	*1*	*김ㅇㅇ*	*ㅇ*	*ㅇ*	*외출*
경영지원부	*1*	*박ㅇㅇ*	*연차*	*연차*	*연차*
경영지원부	*1*	*최ㅇㅇ*	*해제*	*해제*	*해제*

[붙임 2]

재택근무 일일 업무보고 (00.00.)

□ 재택근무자 인적사항

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재택기간	연락처
경영지원부 인사노무팀	6급	홍길동 (00.00.00)	'20.04.06	010-0000-0000

□ 업무수행 실적 (별도 참고자료 첨부 가능)

ㅇ

[붙임 3]

단말기 보안상태 일일 점검표

점검일자 :

점 검 자 :

순번	점 검 사 항	점검 결과
1	비인가자 접근방지를 위해 윈도우 로그인 비밀번호 설정	
2	로그인 비밀번호는 영문자, 숫자, 특수문자 혼용 사용	
3	10분 이상 자리를 비울 시 화면보호기 및 암호 설정	
4	백신 설치 및 최신 보안 업데이트	
5	백신의 실시간 감시기능 설정	
6	운영체제(윈도우10) 최신 업데이트	
7	응용프로그램(한글, MS Office, Adobe Reader 등) 최신 업데이트	
8	토렌트 등 P2P, 웹하드, 메신저 등 프로그램 설시 치 삭제	
9	단말기 내 파일 저장 시 비밀번호 부여	
10	종료 시, 단말기 내 업무자료 삭제	
기타		

확인자 : ○○○○부장 ○○○ (서명)

[붙임 4]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원격근무를 실시함에 있어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정보보안 지침」 및 원격근무 시 정보보안 대책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보보안 지침」 제72조(단말기 보안)에 따라, 원격근무 시 사용하는 단말기(PC, 노트북 등)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진다.
2. 본인은 원격근무 시 정보보안 대책을 성실히 준수하며, 매일 단말기 보안상태 일일 점검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3. 본인은 VPN 등 접근을 위해 안내 받은 접속 정보 및 내부 자료를 타인에게 유·노출 하지 않으며, 원격근무 종료 시 단말기에 저장한 업무 자료를 완전 삭제한다.
4. 본인이 위의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아래의 사규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 「정보보안 지침」 제78조(위규자 처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귀하

[붙임 5]

파일 암호 설정 방법

※ 암호 분실 시, 문서를 열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설정

1. 한글

○ ‘저장하기’ 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 도구 ⇒ 문서 암호

2. MS-Office

○ ‘저장’ 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 ⇒ 도구 ⇒ 일반 옵션

[붙임 6]

일일 부서별 건강상태 점검표

○년 ○월 ○일			부서명				
총원	○ 명		○○○부				
구분	직급 (직책)	성명	이상유무				조치결과
			오전(11시)		오후(16시)		
			발열 (37.5℃↑)	기침, 목아픔등	발열 (37.5℃↑)	기침, 목아픔등	
1	7급	박○○	×	×	○	×	발열(37.6℃)이 있어 16:10 귀가 조치, 내일 출근 전 발열 여부 확인 필요
2	4급	김○○	×	×	×	×	-
3							
4							
5							
6							
7							
8							
9							
10							
11							
12							
13							

작성자 : (직급) 급 (성명) 김○○ (서명)

확인자 : (직급) 부서장 (성명) 최○○ (서명)

[붙임 7] 임시 격리시설 현황

□ 코로나19 유증상자 발생 시 코로나19 검사 결과 통보 전까지 임시 격리시설
□ 위치 및 장소

ㅇ 여수광양항 낙포부두 현장 안전감독관실

* 소파 및 냉난방기 등 구비 완료

임시격리시설 외부

임시격리시설 내부

[붙임 8] 대체사무실 현황

코로나19 집단감염 등 비상대비 여수광양항 항만기능유지 대책(안)

1 추진 배경

□ **코로나19 집단감염 등 국가 비상사태 대비** 국가 중요시설인 **여수·광양항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필수인력이 근무할 수 있는 **대체 근무지를 확보·운영함으로써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고자 함.**

2 대체 근무지 운영(안)

□ (운영장소)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내 **자유무역지역 운영건물**

구 분	동측 배후단지(FTZ 1층)	
위 치	광양 도이동	
면 적	130㎡(약 39평)	
수용인원	약 28명	
기 타	냉난방 시스템 가동	

□ (이전시기) 코로나19 집단감염 등 비상사태 발생시

* 예) 보건복지부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 자연재난 등 발생 시 대체 사무실 운영

□ (운영기간) 비상상황 종료시 까지

○ 대체 사무실에 PC·전화·인터넷망 등 설치로 전자결재 가능, Port-MIS 정상 가동으로 업무불편 해소

○ **입주업체**(LS 일렉트릭, YGPM, 광양상공회의소 등)는 자율적으로 대체 사무실을 확보하도록 권고

* 필요시 중마일반부두 운영건물 B동(1층 87㎡, 약 20명 수용 가능) 사용 지원

[붙임 9] 재난현장 대피시 안전취약 계층 특성별 대피 고려사항

□ 주관부서 :비상대책반 총괄통제부, 비상대책반 지원부
□ 지원부서 : 비상대책반 운영대책부, 비상대책반 복구대책부
□ 협업기관 : 여수·광양경찰서, 여수·광양시 등 지자체

1. 안전취약계층 유형별 특징

○ 시각장애인

- 자신의 힘만으로 피해 상황을 아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시각정보에 의한 긴급사태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익숙한 지역 내에 있더라도,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도움 없이는 평소대로 행동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 대피소 등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서는 이동 등의 행동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혼자서는 신속하게 행동할 수 없다).
- 시각장애뿐만 아니라 지적장애·청각장애 등 다른 장애도 있는 중복장애인이 있다.

○ 청각장애인

- 음성정보를 전달받기 어렵거나 전달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시각정보가 아닌 위험을 파악하기 어렵고, 음성 대피유도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 긴급시에도, 말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어렵다.
- 겉보기에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기 어렵다.
- 청각장애뿐만 아니라 지적장애·지체장애 등 다른 장애도 있는 중복장애인이 있다.

○ 시청각중복장애인

- 대피소 등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서는 이동 등이 어렵다(단독 대피가 어렵다).

- 장애의 상태(전맹전농, 약시전농, 전맹난청, 약시난청)별로 정보 수집 방법이 다르며, 상황판단이 어렵다.

○ 언어장애인(실어증 등)

- 긴급시에도, 말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어렵다.
- 겉보기에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기 어렵다.

○ 지체장애인

- 자기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
- 특히, 하지장애인 등은 자력으로 대피하는 것이 어렵다.

○ 내부장애인

- 겉보기에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기 어렵다.
- 자력 보행이나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 심장·신장·호흡기 등 기능장애로 인해 인공투석 등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 항상 의약품을 소지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
- 항상 의료기기(인공호흡기, 산소봄베, 가래흡입기 등)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

○ 지적장애인

- 급격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 혼자서는 이해 또는 판단하는 것이 어렵고(긴급사태 등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환경 변화에 크게 동요하는 경우가 있다.

○ 정신장애인

-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신적 동요가 격렬해지는 경우가 있다.
- 스스로 위험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 평소에 복용하고 있는 약을 소지할 필요가 있다.

○ 고차뇌기능장애인

- 동시에 여러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 둘 이상의 지시를 받으면 혼란하는 경우나, 음성으로 받은 지시에 대하여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
- 방금 전의 기억 또는 목적지나 장소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 긴급시에도, 궁금한 것이나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로 전하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 스스로 위험을 판단하여 행동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위험한 장소에 출입하는 경우가 있다.
- 혼자서는 이해 또는 판단하는 것이 어렵고, 환경 변화에 따른 동요를 보이고, 생각하기 전에 행동하는 경우나, 매번 지시받지 않으면 행동할 수 없는 경우나, 직접 지도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 겉보기에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기 어렵다.
- 답변이 원활하므로 본인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할 수 있다”, “알았다”라고 자신있게 답변하지만 실제로는 행동할 수 없다.
- 갑자기 흥분하거나 화를 내거나 참지 못하는 경우 등이 있다.
- 자신의 피로를 알아채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 발달장애인

- 환경이 평소와 다르게 변하는 상황이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서투르므로, 불안한 상태에서 침착성을 잃거나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게 되어 패닉을 일으키는 경우 등이 있다.
- 의사소통이 서투르므로, 정보를 한꺼번에 받으면 이해하기 힘들어 하는 경우나 자신의 어려움을 전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있다.

- 상상하는 것이 서투르므로, 대피의 필요성이나 위험한 장소 또는 행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청각 · 촉각 등 감각이 지나치게 예민하여 특정 소리를 싫어하여 귀를 막고 두려워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거나,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에 있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 밖에, 편식하거나 특성 옷만 입거나 몸에 닿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감각이 둔감하여, 치료가 필요한 상처나 상태 불량을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답변이 원활하므로,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 장애가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각의 질병 특성을 고려한 대응이 필요하다.

○ 치매노인

- 시간 · 장소 · 사람을 파악하는 데 혼란하는 경우가 있다.
- 식사했다는 사실을 잊고 다시 음식을 요구하는 등 최근에 한 일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 말을 하지 못하거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주변에 있는 물건의 용도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이 어렵다.
- 옷을 잘 갈아입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환경 변화에 취약하다.
  (상기 증상은 환경 변화에 의해 크게 좌우되기 쉽다)

○ 임산부

-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할 수 있으나,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2. 안전취약계층의 특성별 배려 사항

○ 시각장애인

- 시각에 의한 긴급사태 등의 인지가 불가능하거나 한순간에 인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음성에 의한 정보전달 및 상황설명이 필요하다.
- 일상생활권 밖에서는 간병인이 없으면 대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피유도 등에 도움이 필요하다.
- 중복장애인인 경우, 장애상황에 따른 추가 지원 요청이 있을 수 있다.

○ 청각장애인

- 음성에 의한 대피명령 및 대피유도를 인식할 수 없으므로, 수화 · 요약필기 · 문자 · 그림 등을 활용한 정보전달 및 상황설명이 필요하다.

○ 시청각중복장애인

- 시각 또는 음성에 의한 긴급사태 등의 인지가 어려우므로, 점화(點話, finger braille), 촉수화(触手話, tactile signing), 지문자(指文字, fingerspelling), 손바닥에 글씨 쓰기(print-on-palm), 확대문자(large print) 등 개인별 장애상황을 고려한 의사소통 방법을 활용한 정보전달 · 상황설명이 필요하다.
- 일상생활권 밖에서는 간병인이 없으면 대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피유도 등에 도움이 필요하다.
- 혼자 있으면 모든 정보가 차단되는 것을 고려한다.

○ 언어장애인(실어증 등)

- 자신이 처한 상황 등을 말로 전달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수화 · 필담 등을 활용한 상황파악이 필요하다.

○ 지체장애인

- 자력보행이나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휠체어 등의 보조기기가 필요하다. 이 경우, 유지관리도구(공기주입, 펑크수리, 공구)도 필요하다.

○ 내부장애인

- 자력보행이나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휠체어 등 보조기기가 필요하다.
-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휴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의료기관 등에 의한 지원이 필요하다.
- 인공배설기구 장착자인 경우에는 인공배설기구용 기구가 필요하다.

○ 지적장애인

- 긴급사태 등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나 환경 변화에 의한 정신적인 동요를 보이는 경우가 있으므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짧은 단어나 문자, 그림, 사진 등을 사용하여 알기 쉽게 전달하여 사태의 이해를 도모하는 동시에, 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행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기분을 진정시키면서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정신장애인

- 재난 발생 시 정신적 동요가 격렬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분을 진정시키는 배려가 필요하다.
-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하는 사람이 많으므로, 평소부터 스스로

약의 종류를 파악하도록 지도하며, 의료기관에 의한 지원이 필요하다.

○ 고차뇌기능장애인

- 기억장애 등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사전에 본인의 증상을 파악하여 행동요령이 기재된 메모를 전달하고, 현재 상황이나 앞으로 발생할 일 등을 여러 번 반복하여 설명하는 등 본인의 증상에 맞는 유도 방법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 긴급사태 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짧은 단어나 문자, 그림, 사진 등을 사용하여 알기 쉽게 전달하여 사태의 이해를 도모하고, 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행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재난 발생 시에는 정신적 동요가 격렬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분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
- 음식 · 물자 배급을 기다리지 못하고 화내거나 소란피우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족 대신에 줄을 서주거나 별도배급 등의 대응을 통해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필요하다.

○ 발달장애인

- 앞으로 일어날 일이 머릿속에 그려지도록, 일정이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 추상적인 단어는 피하고, 구체적이고 알기 쉬운 단어를 사용하여 확실하게 전달한다. 귀로 들은 것보다 눈으로 본 것을 잘 이해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본인의 이해도를 고려하여 실물 · 사진 · 그림이나 단어 등 시각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하면 안 되는 것, 가면 안 되는 장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사고 위

험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확실하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정신적으로 불안해하거나 패닉 등을 일으킨 때에는, 기분이 진정되도록 조용한 장소를 확보하거나 개인실을 준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텐트나 파티션 · 골판지로 주위의 공간과 구별하는 등의 고안이 필요하다. 청각과민인 경우에는 헤드폰 또는 귀마개를 사용하거나 마음에 드는 것을 준비하는 등을 통해 진정된 상태로 지낼 수 있는 경우도 있다.
- 부상 또는 상태가 좋지 않다는 민원이 없어도, 몸 상태를 대강 확인하거나 식사 · 수면 중인 경우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 지체장애가 있거나 외견상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각의 병태나 증상에 따른 대피유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 인공호흡기나 인공투석 등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 만성질환자가 많고, 의약품을 확보하는 데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 치매노인

- 긴급사태 등의 인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나 환경 변화에 의한 정신적인 동요를 보이는 경우가 있으므로, 평소의 지원자를 동행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기분을 진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3. 안전취약계층의 특성별 정보전달 시의 주요 배려 사항

○ 시각장애인

- 시 · 군 · 구의 홍보, 그 밖에 생활에 관한 정보 등이 온 때에는, 반

드시 알린다.

- 알기 쉬운 어조로 전달한다.
- 음성 정보로 여러 번 반복한다.
- 점자나 확대문자 외에, 점화나 촉수화, 지문자, 손바닥에 글씨 쓰기 등 둘 이상의 방법을 조합한 의사소통을 취하여 정보제공에 노력한다.
- 시청각중복장애인통역사 · 보조인을 대피소 등에 파견한다.
- 둘 이상의 장애를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장애에 따른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 청각장애인

- 정면에서 입을 크게 움직이면서 말한다.
- 문자나 그림을 조합한 필담으로 정보를 전달한다(항상 필기구를 준비해둔다).
- 시청각중복장애인통역사 · 보조인, 수화통역자 및 요약필기자를 대피소 등에 파견한다.
- 게시판 · 팩스 및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대피소에 문자다중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TV를 설치하도록 노력한다.

○ 시청각중복장애인

- 생활환경이나 장애상황, 장애발생 시기 등에 따라 의사소통 방법도 사람마다 다르다.
- 의사소통 방법은 점자(점화), 수화(촉수화), 지문자, 필담, 손바닥에 글씨 쓰기, 음성 등이며 둘 이상의 조합으로 의사소통한다.
- 시 · 군 · 구의 홍보, 그 밖에 생활에 관한 정보 등이 온 때에는, 반드시 알린다.

- 점화나 촉수화, 지문자, 손바닥에 글씨 쓰기 등의 방법으로 상황을 전달한다.
- 시청각중복장애인통역사 · 보조인을 대피소 등에 파견한다.

○ 지적장애인

- 구체적이고 짧은 단어로 알기 쉽게 정보를 전달한다.
- 그림 · 지도 · 문자 등을 조합하여, 알기 쉬운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지는 경우를 배려한다.

○ 고차뇌기능장애인

- 행동요령, 중요한 설명 · 예정은 메모로 전달한다.
- 그림 · 지도 · 문자 등을 조합하여, 알기 쉬운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 말을 할 수 없어 곤란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상황을 추측하여 선택지를 주거나 그림 · 지도를 활용하는 등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지는 경우를 배려하여, 초조해하는 때에는 조용한 장소로 유도하여 침착해질 때까지 기다린다.
-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묻는 경우에는 잘 보이는 장소에 메모를 붙여놓거나, 반복하여 설명한다.

○ 발달장애인

- 추상적인 단어는 피하고, 구체적이고 알기 쉬운 단어로 확실하게 전달한다. 발달장애인의 이해도에 따라 실물이나 사진, 그림, 단어 등 시각적인 형태로 전달한다.
- 미리 알릴 수 있는 사항은 가능한 한 사전에 전달한다.

- 큰 목소리를 무서워하는 등의 경우가 있으므로, 온화한 목소리로 말을 건다.
- 한꺼번에 설명하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말을 걸어 이해 여부를 확인한다.
- 하면 안 되는 것, 가면 안 되는 장소, 만지면 안 되는 것 등이 있는 경우, 사전에 그것을 확실히 전달한다. 「×」 등의 표지나 마크를 사용하여,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한다.

○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 시각장애, 청각장애가 있거나 치매를 앓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상태를 파악하여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 치매노인

- 구체적이고 짧은 단어로 천천히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4. 안전취약계층의 특성별 대피유도 시 주요 고려 사항

○ 시각장애인

- 안부확인과 대피소로의 대피유도(보행지원)를 누가 할 지를 사전에 결정해둔다.
-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를 확보한다.
- 일상생활권 내에서도 재난 시에는 주변 환경의 변화로 인해 인지지도(認知地圖)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것을 배려한다.

○ 청각장애인

- 수화 또는 문자정보로 상황을 설명하고 대피소 등으로 유도한다(필기구 등을 준비한다)

○ 시청각중복장애인

- 안부확인과 대피소로의 대피유도(보행지원)를 누가 어떻게 할지 사전에 본인에게 전달하여 결정해둔다.
- 점화나 촉수화, 지문자, 손바닥에 글씨 쓰기 등의 방법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대피소 등으로 유도한다.
- 약간 떨어진 곳에 있더라도 지원자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으면, 외톨이가 되었다는 불안을 느낄 수 있으므로,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리는 등 조금이라도 안심할 수 있도록 유의한다.

○ 언어장애자(실어증 등)

- 수화 또는 문자정보로 상황을 설명하고 대피소 등으로 유도한다(필기구 등을 준비한다).

○ 지체장애인

- 자력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휠체어나 환자운반카 등의 이동용구 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동용구 등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들것 · 리어카를 사용하거나 업어서 대피시킨다.

○ 내부장애인

- 평소에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확보 및 의약품을 휴대한다.
- 자력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휠체어나 환자운반카 등의 이동용구 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동용구 등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들것 · 리어카를 사용하거나 업어서 대피시킨다.

○ 지적장애인

- 혼자 있을 때 위험이 임박한 경우에는, 긴급하게 보호한다.
- 피해 상황이나 대피소 등의 위치를 짧은 단어나 문자, 그림, 사진 등을 사용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유도한다.

- 동요하고 있는 경우에는, 평소의 지원자를 동행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기분이 진정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정신장애인

- 피해 상황이나 대피소 등의 위치를 전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무리가 없는 방식으로 유도한다.
- 동요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간을 내어 기분이 진정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 고차뇌기능장애인

- 피해상황이나 대피소 등의 위치, 행동요령이나 중요한 설명 · 예정이 기재된 메모를 전달하고, 그림 · 지도 · 문자 등을 조합하여 유도한다.
- 동요하고 있는 경우에는, 평소의 지원자를 동행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기분이 진정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묻더라도, 반복하여 설명한다.
- 길이나 건물 안에서 헤매는 경우가 있으므로, 목적지까지 동반하는 등 필요한 유도를 행한다.
- 부상을 입었으나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본인의 주된 증상뿐만 아니라, 신체상황 등 주변에서 청취하는 등 잘 확인한다.

○ 발달장애인

- 사전에 대피유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한 번 행선지, 이동 소요시간, 동행하는 사람 등에 대해 설명한다.
- 앞으로 일어날 일(할 일, 갈 곳 등)이나 행동요령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알기 쉬운 말로 확실하게 전달한다.
- 한꺼번에 설명하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대화한다.

○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 휠체어나 환자운반카 등의 이동용구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평소에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확보 및 의약품을 휴대하도록 철저히 주지시킨다.

○ 치매노인

- 동요하고 있는 경우에는, 평소의 지원자를 동행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기분이 진정되도록 유의하며 지원한다.

○ 임산부

- 행동 능력은 떨어지나,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할 수 있다.
- 대피 중의 생활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피유도가 필요하다.
- **(대피소에서의 유의점)**
  - · 의료보험 서비스의 제공이나 심리지원 대책 등이 필요하다.
  - · 충분한 영양(영양식품 등)을 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 거실의 온도를 조정(신체를 차갑게 하지 않도록)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소관 부서

여수광양항만공사 재난안전실	
전화	재난안전실 061) 797-4482 061) 797-4485
FAX	재난안전실 061) 797-4494
※ 본 매뉴얼에 대하여 수정 또는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상기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